

호주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3
주요인사 / 6
외교관계 / 9
주한주재 국기관 / 12
한국과의 주요이슈 / 13

II. 경제

경제정책 / 15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17
주요 산업 동향 / 22
정보조사 자료원 / 32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 통계 / 33
무역통계 / 33
투자통계 / 39

IV. 출장가이드

기후 /	40
시차.근무시간 /	42
도량형 /	42
출입국.비자 /	42
환율.환전 /	44
물가정보 /	45
교통.통신 /	47
호텔.식당 /	49
관공서 관행 /	53
공휴일 /	54
여행시 유의사항 /	55
유용한 연락처 /	57
관광명소 /	58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61
수입규제제도 /	61
관세제도 /	65
주요인증제도 /	65
지적재산권 /	67
소비자보호제도 /	68
교역관련 국가기관 /	69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69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77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78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78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80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80
운송 /	83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84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86

우리기업 투자동향 / 90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92

투자인센티브 / 97

타당성조사 / 98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99

입지선정 / 99

공장 설립 / 105

투자관련 정부기관 / 106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106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106

조세제도 / 108

외환관리 / 111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111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호주 (Commonwealth of Australia)
위 치	오세아니아 (동경 113° 9' - 153° 39', 남위 10° 41' - 43° 39')
면 적	768만㎢ (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
기 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수 도	캔버라
인 구	20,650천명 (2006.6월 현재 통계청 추정치)
주요도시	시드니 (4,232천명), 멜버른 (3,600천명), 브리스베인 (1,775천명), 퍼쓰 (1,458천명), 아델레이드 (1,124천명)
인구구성	유럽인(89.2%), 원주민(1.6%), 아시아인(4.1%), 아랍 인(1.0%)
언 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종 교	영국성공회(23.9%), 천주교(26.0%), 장로교, 침례교 등
건국(독립)일	1901년 1월 26일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양원제)
국가원수	Queen Elizabeth II 영국여왕 - 영국여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정부는 연방 총독(Governor-general), 주 정부는 주총독(Governor)이 영국여왕을 대리해 연방 및 각주를 대표함. - 2003년 5월 25일 연방총독이던 Dr. Peter Hollingworth 가 성추문 사건에 연루되어 사임하고, 전직 장성 출신인 Mr. Michael Jeffery 가 후임 총독에 임명됨. - 연방총독은 헌법상 의회의 소집, 정회 및 해산, 법률안 동의 및 거부, 각료 및 법관 임면, 사면 등의 권한과 국군통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내각의 권고에 따라 행동함.
입 법 부	- 상원 76석, 6개 주 12명씩(6년), 2개 특별지구 2명씩(3년) - 하원 150석, 인구비례에 의해 선출, 임기 3년 (최고 3년마다 강제 선거(compulsory ballot)에 의해 상원의석의 절반, 하원의석 전체가 교체됨. 퀸스랜드(단원제)를 제외한 모든 주(state)가 양원제 채택) - NSW 주 50명, 빅토리아주 37명, 퀸스랜드주 27명, 서부호주주 15명, 남부호주주 12명, 타스마니아주 5명, ACT 행정수도 2명, 노던 테리토리 2명
정 당	자유당, 노동당, 국민당, 민주당, 녹색당, 단일국가당 집권당: 자유-국민당 연합 (2004.9월 총선에서 4차 집권에 성공)

자료원: 호주 통계청 등

나. 경제지표

GDP 성장률	2.5(2005)
GDP	US\$7,080억(2005)
1인당 GDP	US\$34,714(2005)
실업률	4.9% (2006. 6 월 말 기준)
인플레이션	4.0% (2006. 6월 말 기준)
기준금리	6.0% (2006. 8월 말 기준)
화폐단위	Australian Dollar(A\$)
환율	- A\$1 = US\$0.7627 (2006.6.21 현재) - 0.74~0.78 선에서 강세를 유지해왔던 호주달러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예상과 FRB 의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이후 점진적 둔화세를 보였으나 연이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음
교역규모	- 2005 년 호주의 수출은 미화 1,057 억불 수입 1,187 억불로 전체 교역 규모는 2,244 억불임 - 한국은 호주의 3 위 수출 대상국, 9 위 수입 대상국이며 전체 교역 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4 위를 기록
주요 교역품	- 수출: 철광석, 석탄, 원유 등 광물자원과 밀, 쇠고기 등 농축산물이 주종을 이룸 - 수입: 기계류, 소비재, 운송장비 및 연료

자료원: 호주통계청, 중앙은행, IMF 등

다. 한-호주 관계

정치 외교관계	- 호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물론 한국전 참전 등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계속 지지해 옴. - 1961 년 10 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외교 및 통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오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 및 현안문제 협의를 위해 68 년이래 정례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있음.
통상외교일지	'48. 8. 15: 대한민국 정부 승인 '53. 3.: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개설 '61. 10.: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62. 6.: 주한 호주대사관 개설 '67. 4.: Holt 총리 공식 방한 '67. 7.: 시드니 무역관 개설 '68. 9.: 박정희 대통령 공식 방호 '68. 12.: 제 1 차 통상장관회담 개최(이후 매년 교환개최) '73. 8. 15: 멜버른 무역관 개설 '99. 5.: 한.호 산업장관회담 '99. 9. 15: 김대중 대통령 공식 방호 '00. 5.: 하워드 총리 공식 방한 '02. 4.: 한.호주 경제통상장관회담 개최 '04. 2.: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04. 3.: 한.호주 항공회담개최(양국간 항공편 확대에 합의) '04. 8.: 한국 외교통상부장관 호주 방문 '05. 5.: 한호 경제통상공동위 고위실무회담(서울) '05. 6.: 한호 통상장관회담 개최(제주)
주요 협정 체결현황	'65. 9. 21: 무역협정 '75. 6. 17 : 무역 및 경제발전 협정 (무역협정 대체) '79. 5. 2 : 원자력 협정 '82. 7. 12 : 이중과세 방지협정 ('84.1.1 발효) '83. 11. 23: 시장개방에 관한 각서 교환 ('83.11.24 발효) '83. 11. 23: 어업협정 ('83.11.24 발효) '88. 8. 9 : 세관지원 양해각서 '88. 11.: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교환 '92. 2. 26 : 항공협정 ('92.9.7 발효) '92. 8. 25 : 형사사법공조 조약 ('92.12.19 발효) '92. 8. 31: 상용복수사증발급각서 교환('92.9.30 발효) '93.12. 17 : 경제공동위 설립 약정 '95. 3.: 표준 및 인증 기술협력 약정 체결 '96. 2. 15: 한.호 환경협력각서 교환 '96. 11. 14: 산업 및 기술협력 약정 '99. 9. 17: 민사사법공조조약, 과학기술협력협정, 자원협력 양해각서 체결 '04. 8.: 한.호주 자원협력협정 체결
교역규모	우리나라의 대호 수출: US\$38 억불(2005 년) 우리나라의 대호 수입: US\$99 억불(2005 년)
주요 교역품목	(우리나라의 대호 수출) - 승용차, 무선전화기, 가정용 전기 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선박, 합성수지, 타이어 및 튜브, 유선통신기기, 폴리에스텔 직물, 칼라 TV, VTR 등 (우리나라의 대호 수입) - 유연탄, 원유, 금속 및 철광, 알루미늄괴, 원당, 육류 등 1차 상품
투자교류	- 호주의 대한 투자: 1962-2005 간 245 건, 6 억 5 천 4 백만 불 - 한국의 대호 투자: 1962-2005 간 341 건 28 억 5 천만 불
교민	교민 약 5만 명, 어학연수 등 단기 체류자 1만 명 (총 6만 명 추정)

자료원: 외교통상부, 한국 관세청, 한국 수출입 은행 등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국가 조직

1) 행정부

호주 연방정부 수상(Prime Minister)은 헌법상 기관은 아니나, 관계적으로 하원 다수당에서 선출(주 수상은 Premier)하고, 총독이 임명한다. 내각은 Cabinet Minister (통칭 Senior Minister)와 Outer Minister(통칭 Junior Minister)의 각료로 구성되며, Outer Minister 는 소관업무(Portfolio)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각료회의(Cabinet)에 참석한다.

2) 입법부

□ 상원(Senate)

상원(Senate)은 6 개 주에서 각 12 명, 연방직할 2 개 Territory 에서 각 2 명씩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76 명 의원(Senator)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 개 주 출신의 경우 6 년(매 3 년마다 반수를 새로 선출)이며, 2 개 특별구역 출신의 경우 3 년이다.

이들은 각종 법률안을 검토하며, 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Senate)은 The Hon. Paul Calvert 로서 자유당 소속이다.

상원의원 절반을 새로 뽑는 총선은 2004 년 10 월 9 일에 하원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 되었는데, 집권 자유당이 31 석, 제 1 야당노동당이 28 석을 차지했으며, 민주당 7 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인구비례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150 명의 의원(Member)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 년이다. 하원의장(Speaker)은 The Honourable David Hawker 이다.

3) 사법부

연방최고법원(The High Court of Australia), 연방법원, 주 최고법원(Supreme Court) 및 주 지방법원으로 구성된다. 선거소송법원(Court of Disputed Returns)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최고법원은 대법원장(Chief Justice) 및 6 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내각의 권고에 따라 총독이 임명, 정년 70 세)되며, 일반 상고사건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간의 권한 확정 분쟁을 관할한다.

한편, 지방자치제도가 뿌리깊게 정착한 호주에서는 주 별 주수상(Premier 우리나라 도지사)이 별도로 자치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 별 수상은 모두 야당(노동당)소속 의원들로서 연방정부를 자유민주 연립정부가 운영하는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 참고(호주연방정부 안내사이트): <http://www.australia.gov.au/>

각 주 별 의원 명

New South Wales	The Hon. M Iemma, MP (ALP)
Victoria	The Hon. SP Bracks, MP (ALP)
Queensland	The Hon. P Beattie, MP (ALP)
Western Australia	The Hon. GI Gallop, MP (ALP)
South Australia	The Hon. M Rann, MP (ALP)
Tasmania	The Hon. JA Bacon, MP (ALP)

자료원: Year Book Australia 2005 등

나. 정치제도

1) 입헌군주제로서 미국식 연방제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헌법상 영국 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 국가이다.

지방 분권제가 발달하여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또는 Commonwealth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6 개 주 및 2 개 특별구역)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약 700 개 /우리나라 구청에 해당)간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헌법상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이, 6 개 주정부는 총독(Governor)이 대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상(Prime Minister)과 주 수상(Premier)이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간 업무 분장

- 연방: 국방, 외교, 무역, 금융, 체신, 통신, TV, 라디오, 고용, 소득 및 법인세, 이민 및 세관, 여권, 연금, 항공 등
- 주: 학교, 법원, 도로, 철도, 자동차등록, 산림, 경찰, 소방 및 앰브런스, 야생동물 보호 등
- 지방: 도시계획, 도로교통, 도서관, 쓰레기수거, 하수도, 운동시설, 지역관광 등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며, 하원에서 다수당을 이룬 정당 또는 연립 정당이 연방 정부 수장과 장관을 내도록 되어 있다.

2) 상원(the Senate)

- 의원수: 76 명
 - 6 개 주에서 각각 12 명씩
 - 2 개의 Territory(ACT, NT)에서 각각 2 명씩
- 임기: 주 상원의원 6 년, Territory 의원 3 년
 - 주 상원의원 선거는 매 3 년마다 실시되며, 절반을 교체한다.
- 선출: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
- 최근 선거
 - 1998.10.3 연방선거 (총 40 명 선출, 임기 2005.6.30 일까지)
 - 2001.11 월: 연방선거 (총 36 명 선출, 임기 2008.6.30 일까지)
 - 2004.10.9 일: 주 상원의원 절반과 Territory 소속 상원의원 4 명을 교체하는 선거 실시.
- 현 의장: Senator The Hon. Paul Calvert (지역구: 타스마니아)
- 정당 별 의석(2006 년 4 월 현재)
 - 호주노동당(ALP): 28 석, 자유당 (LP): 31 석, 국민당 (NP): 3 석, 민주당 (AD): 7 석, 기타: 7 석

- 역할
 - 선거구를 대표하지 않고 출신 주(state)를 대표함
 - 하원이 승인한 법안에 대한 심의(거부권 행사 가능)

3)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

- 의원수: 150 명
- 선거구: 호주전역 150 개 선거구
- 임기: 최고 3 년 (평균 임기 2 년 6 개월)
 - 2004 년 10.9 일 하원의원 전원을 교체하는 선거가 실시되었음.
- 역할
 - 각 지역구 대표 (seperate electal division)
 - 하원에서의 다수정당이 연방정부(수상 및 장관)를 구성
 - 입법, 위원회 활동 및 선거구 대표
- 현 정당 별 의석수(2006.8 현재)
 - 호주노동당(ALP): 60 석, 자유당 (LP): 74 석, 국민당 (NP): 12 석, 기타: 4 석
- 현 집권당: LP + NP (연립정부) => LNP (Liberal National Party)

4) 총선

연방정부 구성 후 3 년 이내에 치러짐(집권당은 선거일 35 일 이전에만 다음 선거일정을 공고하면 됨)

투표권 시행은 만 18 세 이상이며, 선거 불참 시는 A\$20 벌금 징수, 원주민은 1967 년 이후 부터 투표에 참여.

최근 총선은 2004 년 10 월 9 일 시행되었음.

5) 기타

각주 별 헌법에 의해 연방의회와는 별도의 의회가 구성됨.

3. 주요인사

가. 총리 (Prime Minister)

- 성명: Hon. John Howard
- 생년월일: 1939. 7. 26 (호주 NSW 주 Earlwood 출생)
- 취미: 독서, 스포츠(럭비, 크리켓, 축구, 테니스, 골프)
- 존경하는 사람: Winston Churchill, Mahatma Ghandi
- 학력: 시드니 대학(법학 전공) 졸업

- 주요경력
 - 변호사
 - 하원의원 당선 (지역구 시드니 Bennelong, 11 선 의원)
 - 기업 및 소비자문제 장관
 - 통상협상 장관
 - 재무장관 (Treasurer)
 - 회계장관 (Minister for Finance)
 - 자유당 부당수
 - 자유당 당수
 - 자유당 당수 재취임
 - 총리 취임

나. 재무 장관(Treasurer)

- 성명: The Hon. Peter Costello
- 생년월일: 1957. 8. 14 일생
- 학력: 모나쉬 대학(법학 전공) 졸업
- 현 직위: 재무장관, 하원의원
- 주요경력
 - 변호사
 - 법정 변호사
 - 하원의원 당선 (지역구 멜버른 Higgins, 5 선 의원)
 - 자유당 부당수
 - 재무장관

다. 산업과학자원 장관

- 성명: The Hon. Nick Minchin
- 생년월일: 1953. 4. 15 일생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 현 직위: 산업과학자원부 장관, 상원의원(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 학력: 호주국립대학 (Australian National Univ.) 경제학. 법학
- 주요경력
 - 77-83 자유당 연방 사무국 근무
 - 83-85 자유당 연방 부국장
 - 85-93 자유당 주 위원장, 캠페인 위원장
 - 93 상원의원 당선 96-97 수상실 차관
 - 97 수상실 장관
 - 98.12.21 산업과학자원부 장관

라. 무역부 장관 (Minister for Trade)

- 성명: The Hon. Mark Vaile, MP
- 생년월일: 1956. 4. 18 (뉴사우스웨일즈 Taree 생)
- 현 직위: 무역부장관, 하원의원(Deputy Leader of National Party)

- 주요경력
 - 1997 교통, 지역발전부 장관
 - 1998 농림수산부 장관
 - 1999 무역부장관
 - 2005 부수상직 겸임(2005년 6월부터)

마. 외무부 장관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 성명: The Hon. Alexander Downer, MP
- 생년월일: 1951.9.9 일생
- 현 직위: 외무부장관, 하원의원

바. Austrade 사장 (호주 국영 무역진흥기관)

- 성명: Peter O'Byrne
- 생년월일: 1944. 8. 14
- 현 직위: Austrade 사장
- 학력: 미국 Stanford 대학 경영학 학사 및 대학원 수료
- 주요경력
 - 98-2002.4 : Australian Hearing Managing Director
 - 2002 ~ : Austrade 사장
- 한편, 2004. 12 월초 호주의 제 1 야당인 노동당이 선거실패 책임을 물어 Kim Beazley 를 새 당수로 선출했으며, 이에 따라 웨도우 내각도 대폭 개편되었다.

사. 야당 당수

- 성명: Kim Beazley, MP
- 생년월일: 1948 년생 (서부호주 Perth 출생)
- 학력: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및 옥스퍼드 대학 졸업(철학전공)
- 가족관계: 부인과 3녀
- 주요경력
 - 1983: 국방부 차관
 - 1984: 국방부 장관(최연소)
 - 1996: 노동당 당수
 - 2001: 노동당수 사임 (노동당 웨도우 내각 국방장관)
 - 2005.1.28: 노동당 당수로 복귀

4. 외교관계

가. 외교관계 목표 및 기초

- 호주 외교정책의 기본가치는 국익 증진,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및 개인의 존엄성 추구이며 외교의 기본 틀로는 양자관계를 보다 중시한다. 외교 통상전략과 호주 경제강화라는 국내경제정책을 연계하는 총체적 접근방식(a whole-of-nation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 기존의 대미동맹 및 아시아 중시 정책을 견지하면서, 유럽 등 여타 국가와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 증진 노력하고 있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아시아 우선정책(Asia first) 기초를 유지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9.11 사태 이후 현 집권당은 대미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야당의 공격을 받아 왔음.
 - 2004년에는 미국 및 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연방정부가 FTA 시행법에 동의함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발효되고 있음.
 - 뉴질랜드와는 1983년에 체결한 CER 협정의 폭을 넓혀, 양국을 단일시장으로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중임.
 - ASEAN 국가와의 포괄적 외교(comprehensive diplomacy) 추진 중 임. 2004. 11월에는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3+호주+뉴질랜드정상회의에서 ASEAN+호주+뉴질랜드 12개국간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005년부터 본격 협상을 진행
 -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과는 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공동연구에 착수하여 2005년 3월 중순에 완료하였으며, 2006년 8월 현재 5차 협상이 완료된 상태임
 - 일본과는 조만간 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공동연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의 동맹관계 심화를 통한 안보 강화 및 아. 태 국가와의 안보협력 확대 (양자관계 및 ARF 다자관계 활용) 서구 선진국과 아태지역 국가와의 연계 역할
 - 유럽. 북미 기업이 호주를 아태지역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 분쟁방지 및 해결, 호주의 교역 이익 보호를 위한 양자관계 강화
 - 주요 국가의 각료급 접촉 확대 통한 해외시장 개방노력 강화
 -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아. 태 국가의 시장개방 적극추구 - WTO, APEC 등 다자기구를 통한 시장자유화 노력 병행, 국내 경제개혁을 통한 호주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호주의 국제적 지위가 호주의 사회. 경제적 능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호주기업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경제개혁 추진

나. 주요 외교시책

1) 국가 안보 확보

- 중국의 안보이익과 역내 안보이익과의 조화를 통한 반 중국 블록 형성 억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 군대주둔 지지, 남태평양 도서국가의 정치·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국가안보를 도모하고 있다.
- 세계적 대량파괴무기(핵, 화학, 생물학무기)의 확산 저지에 적극 동참, CTBT, NPT,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onference on Disarmament 에 적극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3 년 미·이라크 전쟁에서도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과시했다.
- 미국의 9/11 사태와 이라크 침공 이 후 미군 기지의 호주 내 설치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야당의 적극 반대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 지역 안보에 있어 미국의 개입, 미군의 역내 주둔, 특히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 유지는 안보 협력 및 경쟁세력 형성 방지에 긴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지역 내 전략적 경쟁관계 출현의 저지 및 동아시아 지역 내 대립적 세력체가 형성되지 않도록 역내 여타 국가와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지역안보 협의기구로서 ASEAN Regional Forum(ARF)을 중시하고 있으며, 2005 년에는 ASEAN 과 중국, 한국, 일본은 물론 인도,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East Asian Summit 에 참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East Asian Summit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ASEAN 이 호주의 외국 테러지원시설 선제공격 방침을 포기하기 전에는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 경제성장, 고용 및 국민생활 향상

- 아시아 지역 내 차별적이며 보호주의 성향을 완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의 호주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역으로는 호주 기업의 해외투자 환경을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다.
- 양자관계: 시장개방 확대 및 호주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 다자관계: 무역관련 분쟁에 대한 다자차원의 해결 추구
- WTO 및 농산물수출국 그룹인 Cairns Group 등 활용
- UR 이후 특히 Cairns Group 을 주도하면서 농산물 분야 추가 자유화 추진

3) 싱가포르, 태국,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 싱가포르와는 2002 년에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2003 년 하반기부터 무세 통관 등 효력이 발효된 상태이다
- 호주로서는 2001 년 말레이시아에 의해 좌절되었던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가입시도 이후 태국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미국 및 태국과의 FTA 협정도 2005 년 1 월부터 발효됨.
- 또한, 중국, 일본 및 이집트 등과의 FTA 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4) 교토 기후협약에 대한 서명거부

- 호주는 선진국으로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찬성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교토 의정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있음(미국 입장 동조)

5)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 호주는 우리나라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실리적 인식 확대에 기초하여 한·호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양국관계 다원화를 추진(호·한 재단 설립 및 호주주간행사 등 문화행사 개최) 하고 있으며, 97.9 월 발표된 외교 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4 개국(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한국을 중요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 주요 시책 방향으로 양국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료급 접촉 확대와 한국의 안보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강화 및 안보문제관련 양국간 정치·군사협의 실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KEDO 지원을 통한 지역안보 기여 및 축산,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접근 촉진, 서비스 분야(특히 교육 및 법률)에서의 개방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6) 대한반도 정책

- 한반도가 4 대 강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으로서 한반도의 안보는 아·태 지역 안전과 평화 및 호주의 번영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평화유지를 희망하며,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적극지지 하고 있다.
- 북한을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파악하고 있으나, 고립정책은 한반도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02 년 5 월에는 북한과의 수교관계를 재개 하였으며, 북한 대사관이 캔버라에 설치되었다.
- 북한에 2003 년 중 대사관을 개설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NPT 에서 탈퇴 하면서 대사관 개설을 잠정 보류하고 있는데,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주둔을 통한 역내 안정 확보 추구
 - 한반도의 정전체제 유지 및 4 자 또는 6 자 회담 지지
 - KEDO 활동 지원: 95.5 월 일반 회원국으로 가입이래 820 만불 지원
 - 대북 식량 지원: '96 - 2004 년 1 월까지 총 4,650 만 호주불 지원

7) 북한과의 관계

- 74. 7.30. 호주(Whitlam 노동당정부),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 74.12.30. 북한 주 호주대사관 개설 (캔버라)
- 75. 4. 호주, 주 북한 대사관 설치(주 중국대사가 겸임)
- 75.10.30. 북한, 유엔총회에서의 남북한 관련 결의안(제 30 차 유엔총회 한국 문제 토의 시 서방쪽 안 찬성, 공산 측 안에 반대)을 둘러싼 호주 측 비 협조에 대한 불만 표시로 주 호주 북한 대사관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동시에 주 북한 호주 대사관에 대해서도 48 시간 내 철수를 요청

- 75.11. 6. 호주, 주 북한 호주 공관원 추방 이후 외교관계 중단
- 00.2. 평양에서 호-북한 고위관료 회담
- 00.5. 호주, 북한과 외교관계 재개 발표
- 00.8. 호주 북한시장조사단 북한 방문
- 00.11. 호주 외무장관(Alexander Downer) 북한방문
- 00.12. 호주 에너지 사절단 북한 방문
- 01.2. 북한 외무성 김동명 부장(차관급) 일행 호주방문
- 02.5. 북한 대사관 캔버라에 공식 개설
- 02.7.25. 북한 신임대사 호주총리로부터 신임장 제정
- 03.4. 북한선박 봉수호 마약밀수혐의로 호주인접 해상에서 나포
- 04.6. 봉수호 선원 30 명중 26 명에 대해 무죄선고 및 강제추방 결정
- 04.6. 호주외무장관(Alexander Downer)의 북한방문(6자 회담 관련 미국측 입장 전달 목적)

8) 최근 국제관계

- 호주는 역사적으로 영국, 미국 및 서유럽과의 관계 긴밀화를 추구하는 한편, 아시아 및 남태평양지역 국가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 국제적으로 군축, 난민, 인권 및 국제 무역의 자유화 등 건설적 진보적인 정책을 개발, 추구하고 있으며 유엔 및 전문기관의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5. 주한주재국기관

□ 주한 호주대사관: 대사 Mr. Colin Heseltine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빌딩 11층 (우)110-714
- 대표전화
 - (02)2003-0100 (이민 비자과와 호주 무역대표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
 - (02)2003-0111 (이민 비자과, 전화문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능합니다)
 - (02)398-2800 (호주 무역대표부)
- 팩스
 - 대표 팩스: (02)722-9264
 - 정치과: (02)737-9264, (02)735-6601
 - 경제과: (02)737-9264, (02)735-6601
 - 문화 공보실: (02)723-7732
 - 영사 행정과: (02)722-9264
 - 이민 비자과: (02)720-9932
 - 국방부: (02)735-6601
 - 호주 농림 수산부: (02)722-6491
 - 호주 정부 국제 교육부: 국제 교육부: (02)738-8412
 - 호주 정부 교육원: (02)723-3065
 - 호주 무역 대표부: (02)734-5085

- 홈페이지: <http://www.australia.or.kr/>
- 이메일
 - 웹 마스터: webmaster@australia.or.kr
 - 영사업무: consular@australia.or.kr
 - 비사업무: visa@australia.or.kr
 - 영사/비자 업무 이외의 문의사항: inform@australia.or.kr
 - 검역 업무: quarantine@australia.or.kr
- 업무시간
 - 이민과 카운터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45분 - 12시
 - 영사과 카운터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 - 12시, 오후 2 - 4시 30분
 - 호주 정부 교육원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호주 무역 대표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대사관 휴일 (2005년): 10월의 2005년도 호주 공휴일 및 한국 공휴일

□ Austrade 서울사무소

- 기관명: Australian Trade Commission(Austrade)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빌딩 11층
- 전화: (82-2) 398-2800
- 팩스: (82-2) 734-5085
- 홈페이지: <http://www.austrade.or.kr>

6. 한국과의 주요이슈

□ 제 21 차 한호자원협위원회 개최 및 자원협정 발효

- 2005.7.11 ~ 12 일간 캔버라에서 양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 및 민간기업인 등 총 70 여명 참여(한국 33명, 호주 37명)
- 양국간 에너지·광물자원분야 수급현황 및 전망, 교역 확대
 - 호주는 LNG 구매 확대를 요청하고, 우리측은 '10년부터 도입될 3백만 톤의 장기 LNG 계약 추진 계획 설명
-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의 협력 확대
 - 광진공을 주축으로 아축이 지분 95%를 가지고 있는 와이웅 탄광개발에 호주 측이 철도, 수출 항만 확충 등 적극 협조
 - 석유·가스의 경우, 한국은 호주를 핵심 진출지역으로 선정하여 2005 -2006 년도 석유 가스 광구 입찰에 적극 참여
 - 호주 Woodside사와 한국 석유 공사 간에 한국 대륙붕 동해심해 지역에 대한 공동 평가를 적극 추진
-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
 - 최근 급변하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시장에서의 공조 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05.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에너지 장관회의 및 광업 장관회의에 적극 참여

□ 아·태 6 개국 기후변화 파트너십 출범

- 호주, 한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은 함께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역내 협정 추진에 합의 (7.27)
- 미국 주도로 2005 년 상반기(약 5 개월간)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간에 협의된 아·태 청정 개발 및 기후관련 파트너십 (Asia-Pacific Partnership for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에 호주도 참여
- 동 구상은 역내의 경제개발 및 성장의 저해 없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에 중점
- 호주는 중국 및 한국에 대한 석탄 및 가스의 주요 공급 국으로서 이해관계가 크며 대중국 우라늄 수출 관련 협상을 진행중인 점을 감안, 동 협정의 당사국에 참여
- 호주는 실질적으로 교토 의정서상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 국가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교토 의정서상 의무를 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교토 의정서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토 의정서 가입을 거부하고 있음
- 2006.1.11-12 개최된 국별 각료 회의를 통해 “아·태 6 개국 기후변화 파트너십” 이 공식 출범
- 동 회의기관 중 호주측과 개별로 반덤핑 및 FTA 등 양국간 통상현안과 아·태 파트너십내 Task Force 운영방안과 LNG, 유연탄 등 자원협력확대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됨

□ 대호 무역적자 사상 최대 기록

- 2004 년 한-호 교역액이 최초로 100 억불을 돌파 한데 이어 2005 년 한국의 대호 무역적자는 61 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자원 및 에너지 품목이 수입증가세를 견인함
-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 철강제품, 석유제품이 호조를 보인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감소세를 보임

□ 대한 무역규제 지속

- 2006 년 8 월 현재 한국제품 9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 미국 및 태국과의 FTA 발효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제조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내 여론 무마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제품의 수입급증이 이슈화 되면서 한국산에 대한 규제 기조는 다소 완화되는 추세임

II. 경제

7. 경제정책

가. 경제정책기조

호주 정부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관세율 인하 및 수입규제 완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과 항공, 우주, 통신, 생명, 환경 등 첨단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 등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첨단기술 부문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이 취약한 호주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업계 지원정책과 TCF 산업(섬유, 의류, 신발)보호를 위해 여전히 고 관세 정책을 펴고 있다. 이 고율의 관세는 자국산업 구조조정계획에 맞춰 200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인하(약 5% 포인트씩)하였으며, 2010년에는 또 한차례의 관세인하를 단행하여 평균관세율을 5% 미만으로 낮출 예정이다 (호주의 품목별 관세율 인하계획 확인: www.apectariff.org)

최근 광업, 제조업 부문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 파워를 약화시키는 노사개혁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노조 및 야당과 종교단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을 끌고있다.

나. 대외경제정책

자유-국민 연립정부는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종전 노동당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수용 하되 다자협상 일변도의 대외통상 정책에서 탈피하여 양자협상도 적절히 구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농축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무역자유화 확대 및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를 주창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통상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APEC 의 기능강화 및 APEC 을 모체로 한 지역경제 공동체 창설을 제창하고 있으나, APEC 이 EU 나 NAFTA 같은 배타적인 경제 블록화에는 반대,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워드수상은 ASEM 참여를 위한 말레이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종전 키팅 정부의 EAEC 창설 반대 정책을 철회했다.

뉴질랜드와는 1983.1 월 공동시장화 협정(CER/ANZCERTA)을 체결, 1990.7 월부터 양국간 상품 교역의 완전자유화를 실현하였으며, 궁극적인 단일시장화를 위해 양국간 기업관련 법규, 통관 및 항공운송, 투자 등의 각 분야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국간 단일시장 조성 움직임은 2004 년 3 월부터 다시 거론되고 있으며, 2004 년 하반기부터는 ASEAN+ 호주+ 뉴질랜드 12 개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02 년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2003 년 8 월부터 발효)하였으며, 미국 태국과도 FTA 체결에 성공, 2005 년 1 월부터 발효시켰다.

2006 년 현재, 중국, 일본, ASEAN(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우선 협상), GCC(UAE 와 우선 협상)등 FTA 체결에 적극 임하고 있다.

다. 조세 및 투자정책

상품 및 서비스세(GST)도입 ('00.7.1 발효): '98.10.3 실시된 총선결과 GST 도입을 단일 최대공약으로 제시한 하워드총리의 자유·국민 연립정권이 재선되고, '99.6.28 일부터 기초 생필품을 GST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건부의 GST 시행법안이 상원을 통과 함에 따라 2000. 7.1 일부 터 동 제도가 시행케 되었다. (세부내용: 조세제도 참조)

2003 년 7 월 1 일부터 개인소득세를 소폭 인하한 바 있으며, 2004 년 5 월에는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새로운 개인소득세 인하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2004 년 7 월 1 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며, 2005 년 7 월부터 또 한차례의 개인소득세 인하를 단행하였다. 2006 년 7 월 다시 예정대로 개인 소득세가 인하되었다.

라.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99.8.4 발표)

1999.10 월부터 하워드 정부는 외국인 투자심사 위원회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심사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키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규 및 기존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 투자금액이 A\$50 백만 (US\$32.5 백만) 이하는 심사를 면제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투자금액 A\$50 백만을 넘더라도 지분이 15%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를 면제 받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혹은 미디어에 대한 투자시에는 위의 정책변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2005 년 1 월부터 발효된 미국과의 FTA 로 인해 미국의 대호주 투자에는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통신, 운송, 국방 분야 이외의 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허가대상 규모를 현재 A\$5 천만에서 A\$8 억 규모로 대폭 완화시킨 것을 들 수 있다.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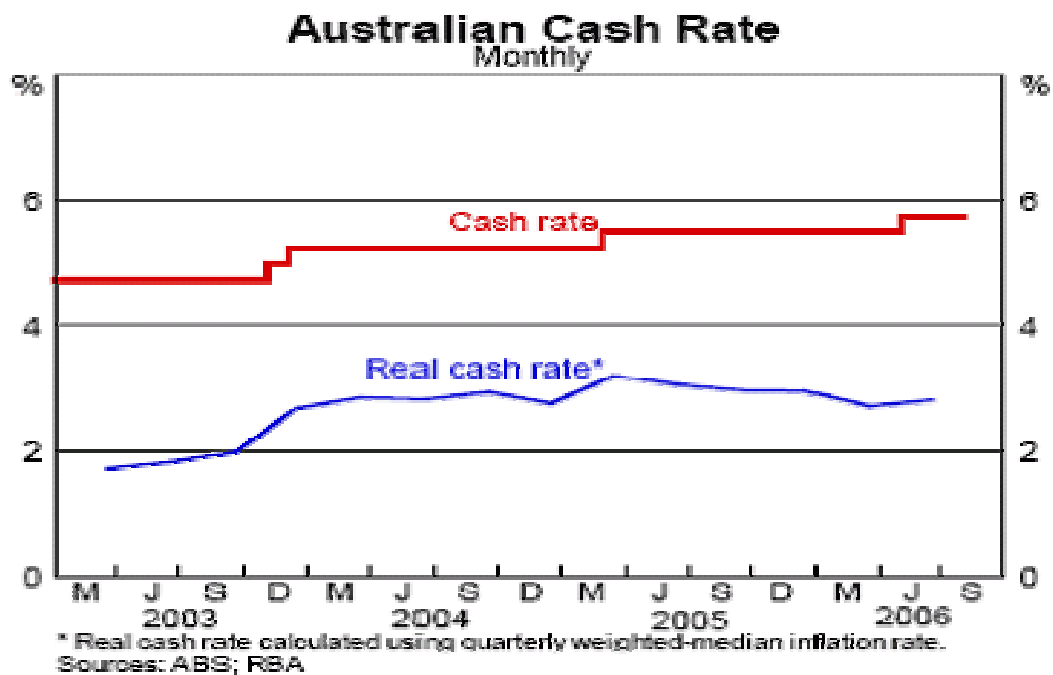
	2004년	2005년
GDP성장률(%)	3.2	2.5
GDP(US\$십억)	618.0	708.0
1인당 GDP(US\$)	30,682	34,714
경상수지(US\$십억)	-39.8	-42.2
재정수지(A\$십억)	13.4	7.4
인플레이션(%)	2.3	2.8
실업률(%)	5.5	5.1
수출(US\$십억)	86.4	105.7
수입(US\$십억)	103.7	118.7
환율(A\$/US\$)	1.36	1.31

자료원: 호주통계청, IMF, EIU

□ 금리 재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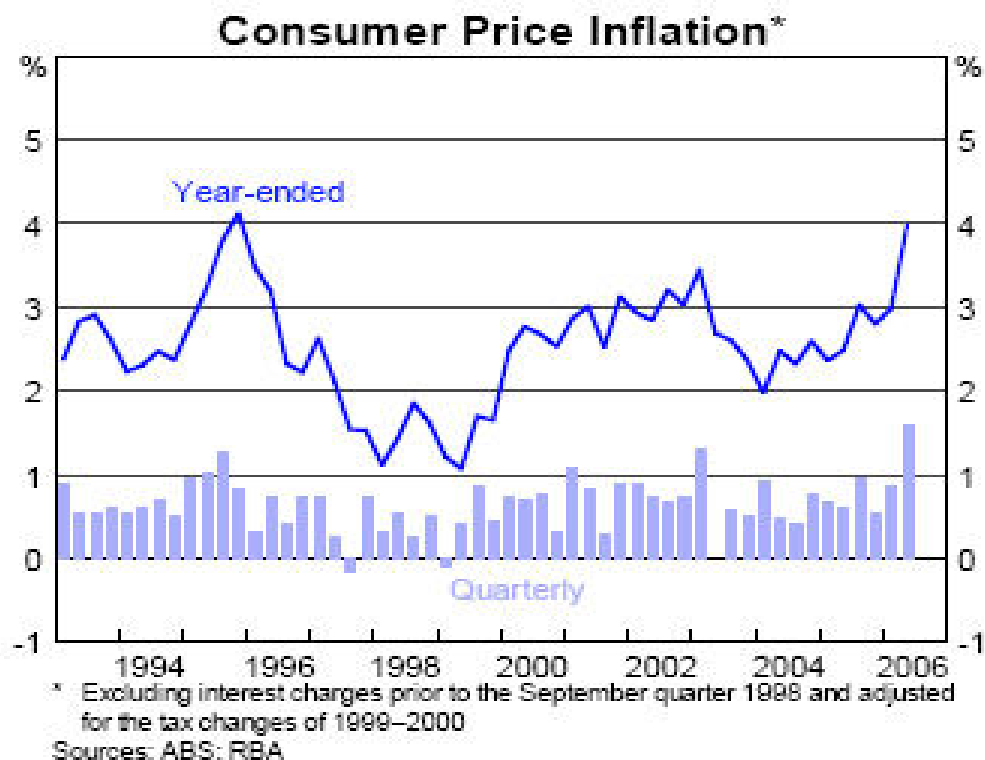
- 호주 중앙은행은 8 월 1 일 개최된 이사회 결정에 따라 8 월 2 일 금리 0.25%p 인상을 결정, 기준금리는 6.0%가 됨
- 중앙은행은 올 해 5 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에 이어 3 개월 만에 추가 인상을 결정한 것임.

호주의 금리동향



- 호주 경제는 세계경제 여건 호조의 영향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세계 경제는 4 년 연속 평균치를 상회하는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금년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추가적 상승은 이 같은 경제 호조세를 반영한 것임
 - 지역적인 차이는 있으나 상당수 지표들이 호주의 수요 및 생산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긍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이윤율 상승, 시설 가동률 상승은 비즈니스 부문 투자를 활발하게 만들었으며, 가계 소비의 완만한 성장을 상쇄하고 국내수요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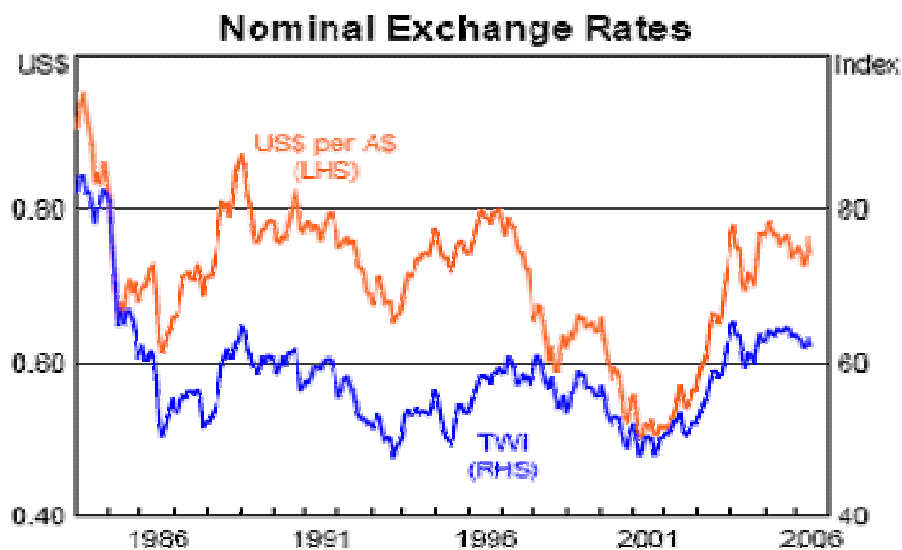
호주의 인플레이션 동향



- 지난 수개월간의 대출수요 확대는 가계와 기업이 현 이자율 하에서의 대출을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반증
 -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금융권의 대출 마진 축소는 자금 수요자의 대출비용을 낮춰 왔음.
 - 이에 따라 현 기준금리가 1993 년 이후의 저 인플레 시대 평균에 비해 다소 높기는 하지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오히려 완화됐음을 의미함.
 - 경제의 생산능력이 제한된 가운데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가중되고 있음.
 - 임금 상승과 더불어 모든 단계의 생산물 가격이 빠른 상승을 보이고 있음
- 2/4 분기 기저 인플레이션(underlyng inflation, 일반적으로 관측된 인플레이션에서 급격한 상승 내지 하락을 보인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측정)은 3%에 달해 1/4 분기부터 가시화된 물가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확인케 했음.
 - 유가 상승과 폭풍 Larry 에 의한 바나나 가격 상승으로 대표 인플레이션 (headline inflation, 중앙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치)은 4%에 달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결정은 기저인플레이션의 지속 상승, 강력한 세계 및 국내경제 여건을 반영한 것이며, 기저 인플레이션이 금년 중 지난 연말의 예상치를 넘어설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시장은 이번 인상 조치를 어느 정도 예견한 분위기였으며 장기 대출자들은 금리 인상 폭이 0.25 퍼센트 포인트에 그친 것에 위안을 찾고 있음.
- 그러나 금년 중 세번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지속된 금리인상으로 인해 호주화는 지난 연말-연초에 계속된 절하 세에서 벗어나 작년 수준의 강세를 보이고 있음.

호주화의 미 달러대비 환율 동향 (2006.8.3 현재 0.7672)



- 이는 수입 구매력이 확대됨을 의미해 우리 제품 수출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2006/2007 예산안 발표(단위: A\$)

- 재정균형
 - 재정수지 108 억 달러 흑자 전망
 - 현행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 A\$ 80 억을 인프라 구축에 투입 가능
- 경제성장 전망
 - 3.25% 성장 전망
 - 비즈니스 투자 및 수출의 지속적 확대 기대
- 개인소득세 감세
 - 30% 세율 적용한도를 현행 연 소득 \$21,601 에서 \$25,001 로 높임
 - 42% 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적용한도를 \$63,001→\$75,001 로 높임
 - 47% 세율을 45%로 인하하고 적용한도를 \$95,000→\$150,001 로 높임

- 연금제도(superannuation)의 간소화 및 능률화
- 비즈니스 기회와 인센티브 확대
 - 신규 취득 자산(2006년 10월 이후)의 감가상각 지원을 위해 4년간 37억 달러 투입
 -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 4억 4000만 달러 규모의 감세조치
- 복지지원 확대
 - Family Tax Benefit Part A 수혜기준 완화(현행 \$33,361→\$40,000)
 - 대가족 지원(The Large Family Supplement)금 \$248/연 수혜 기준을 자녀 4인에서 3인 가족으로 완화
- 건강의료 리서치 활동 확대
 - 의료 리서치활동을 위한 7억 4000만 달러 조성
 - 의료분야의 1억 7000만 달러 규모 장학금 조성
- 인프라 확충
 - 주요 고속도로 개선을 위한 5억 6000만 달러 투입
 - 지방도로개선프로그램을 위한 3억 1천만 달러 투입
 - 남북 철도망 개선을 위한 2억 7000만 달러 투입
 - Murray-Darling 분지지역 개발을 위한 5억 달러 투입

□ 경제성장에 대해 정부는 낙관적 전망

- 호주 재무부는 2006/2007년에도 호주 경제는 13년 연속 호조를 이어가며 3.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2005/2006년 2.5%)
 - 이 같은 정부의 낙관적 전망은 자원 붐의 지속과 기업이윤 및 투자증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 소비 부문의 더딘 성장(3%)은 민간투자 증가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 교역조건(terms of trade)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지난 수년간 계속된 소비자 구매력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
- 또한 정부는 실업률을 세계 경제의 성장 호조(2006년 5%, 2007년 4.75%)에 힘입어 5.25%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전체 고용은 1%, 전체 임금은 4%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 성장 호조 전망
 - 호주의 성장은 세계경제 성장의 영향에 매우 민감한데 재무부는 주요 국가들이 고유가와 자연재해, 고이자율로 인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주택부문 침체는 고용 증가로 인해 상쇄될 전망
 - 일본도 지난 12개월간 니케이 지수가 45% 상승하는 등 뚜렷한 호조의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음
 - 2005년 9.9% 성장을 기록한 중국은 2006년과 2007년에도 10%에 육박하는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 호주 경제의 미래에 있어 가장 긍정적인 지표 중 하나는 경제활동 참가율(workforce participation rate, 15 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의 비중을 의미함-주) 이 뚜렷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임
 - 최근 경제활동 참가율은 64.5%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청년층과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반영
 - 고령 노동자의 확대는 2000 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됐는데 1980~90 년대에 지속적으로 진행된 기업부문 구조조정의 결과 최근에 와서 노동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과 맞물려 있음
- 호주경제를 좌우하는 1 차상품의 국제가격과 관련, 재무부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지속이 국제가격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호주의 움직임이 이들의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고용 및 인플레이션

- 실업률은 4.9% 선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이어가고 있음
 - 2006.3 월 현재 실업률은 5.0%로 작년 8 월에 이어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 이어짐에 임금 상승 압력은 가중, 금리인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됨
- 연평균 3.0% 인플레이션 전망
 - 4/4 분기 일시적으로 완화세를 보였던 인플레이션은 2006.2/4 분기에 유가인상과 태풍에 따른 바나나 가격으로 일시적으로 4.0%를 기록하였음
 - 유가 재 반등, 공급자들의 원가 상승분 흡수한계 도달 등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결과적으로 금리 재인상을 앞당김

□ 이자율 및 환율

- 금리 인상
 - 8 월 초 중앙은행은 금리로 6%로 인상
- 호주화 재 강세
 -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금리차이 축소,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세가 예고됨에 따라 2006 년 중 호주화의 미 달러대비 환율은 0.72~0.73 수준으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금리 인상을 전후하여 호주화는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음(현재 A\$/US\$=0.76)

□ 교역

- 2005 년 호주의 수출은 미화 1,057 억불 수입 1,187 억불로 전체 교역은 전년대비 18.1% 증가한 2,243 억불을 기록
 - 한국은 호주의 3 위 수출 대상국, 9 위 수입 대상국이며 전체 교역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4 위를 기록
 - 석탄, 철광석을 비롯한 원자재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한편 석유, 자동차, 의약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9.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 산업 동향

□ 경제 구조 및 특징

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으로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수단이다. 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만큼, 자본의 외국 의존도가 높으며, 외국 자본이 경제 개발 및 자원 개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3차 산업이 매우 발달했으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1차 산업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제조업은 GDP 기여율이 12%에 불과 해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대변해 주고 있다.

호주 수출의 대부분은 농림 수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동남 아시아 및 중동 시장을 타겟으로 생산 수출되고 있다.

나. 각 주별 산업 현황

호주는 연방국가로 6개의 주(States)와 두 개의 자치 테리토리(Territor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드니가 위치해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주는, 1911년에 캔버라를 호주의 캐피탈 테리토리(ACT), 즉 연방 정부의 수도로 정하였다.

호주 전체의 인구는 2천만 명 이며 면적은 7,682,300km² 이다.

□ 뉴사우스 웨일즈주

- 수도: 시드니
- 인구: 5,962,000명
- 면적: 309,443 평방 미터
- 주요산업: 철강산업과 기계산업, 전기, 섬유, 화학산업 등 호주 전체 생산량의 3분의 2가량의 석탄 생산
- 주요농산물: 양모, 쇠고기, 곡물, 설탕, 낙농식품, 각종 과일
- 특이사항
 - 풍부한 은과 아연의 보고지. 풍부한 지하자원 및 농산물 해외 다량 수출.
 - 시드니와 수도인 캔버라가 위치함.

□ 빅토리아주

- 수도: 멜번
- 인구: 4,452,000명
- 면적: 87,884 평방 미터
- 주요산업: 자동차, 의약품, 섬유 및 식품가공 산업
- 주요농산물: 곡물, 낙농식품

- 특이사항
 -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주로 내륙에 위치
 - 높은 인구밀도
 - 수도인 멜번은 국내 및 해외 기업들의 지사 소재지

□ 퀸즐랜드주

- 수도: 브리스베인
- 인구: 3,022,000명
- 면적: 667,000 평방 미터
- 주요산업: 관광산업, 농산물 수출 산업
- 주요 농산물: 설탕과 곡물, 면 등
- 특이사항
 - 열대 우림에서 온난한 기후대의 다양한 기후
 - 아연, 동, 니켈, 석탄 및 천연가스 대량 매장지역
 - 관광산업은 1960년대 이래 발전하여 온 이 지역의 주요 산업

□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 수도: 퍼스
- 인구: 1,658,000명
- 면적: 975,290 평방 미터
- 주요 산업: 기계, 철강 및 운송기기 산업
- 주요 농산물: 양모, 고기.
- 특이사항
 - 서유럽과 비슷한 면적
 - 수도 퍼스에 지역 인구 70%거주
 - 농업에 부적합한 토양
 - 풍부한 양의 금과 각종 미네랄, 철, 니켈 등의 자원 매장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 수도: 아들레이드
- 인구: 1,458,000명
- 면적은 380,070 평방 미터
- 주요산업: 전기제품, 자동차 산업
- 주요농산물: 와인 그라이프, 고기
- 특이사항: 농업에 부적합한 토양.

□ 노던 테리토리

- 수도: 다윈
- 인구: 169,000명

- 면적: 520,280 평방 미터
- 주요 산업: 광산업
- 특이사항: 우라늄과 구리, 보크사이트, 망간 다량 매장

□ 타스마니아

- 수도: 호바트
- 인구: 470,000명
- 면적: 26,383 평방 미터
- 주요산업: 목재, 철강, 섬유 산업
- 주요농산물: 양고기, 각종과실.
- 특이사항: Bass 해협으로 대륙과 분리되어 있으며, 그 사이의 작은 섬들이 하나의 작은 주를 이루고 있음.

다. 자동차 산업

2005년 말 기준, 호주 인구는 2,000만 명을 약간 초과 하였는 데,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1,200만대 정도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호주인 두 사람당 자동차 한대(2: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미국과 캐나다 다음으로 높은 자동차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호주의 자동차산업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네랄 모터스 홀덴(General Motors Holden)의 경우 남부호주 지역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생산량의 3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아시아 자동차 회사들의 적극적인 호주시장 개척으로 인하여 호주 자동차 산업은 가격, 기술개발 및 투자 측면에서 서서히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호주정부는 Ford Australia가 호주 내 자동차 신모델 개발 및 글로벌 디자인 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호주화 18억불을 투자기로 한 데 대한 답례로 2006년 5월 초에 호주화 1억불 이상을 Ford Australia에 지원키로 발표하는 등 자동차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Ford 자동차가 디자인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인 GM, Toyota, Ford가 공히 호주 빅토리아주에 국제 디자인센터를 가지게 됨에 따라 빅토리아주가 자동차 디자인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매년 약 40만대의 자동차가 호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데, 총 생산량의 약 35%에 해당하는 14만대 정도가 중동 등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부품은 '05년 말 기준, 약 A\$ 17억2천만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수출되었다.

연간 신규차량 등록대수는 2004년에 95만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0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소비자 선호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호주에서 가족용 차로 변함없는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 로는 GM Holden사의 Commodore, Toyota의 Camry이며, 그 다음이 포드사의 펄콘(Falcon), 미쯔비시의 마그나 및 버라다(Magna & Verada)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호주는 30여 개 국가로부터 50여 개 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는 데, 2006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5만7천대)는 일본(21만6천대), 태국(6만1천대)에 이어 對호주 3위 수출국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2006년 7월 기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호주 내수시장 판매량은 각각 2만8천대 및 1만 3천 대로서 판매량 순위에서 각각 8위와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들어 호주 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기업들의 對호주 자동차 OEM부품 공급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호주 내 자동차 메이커의 부품 공급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 원활한 의사소통, QS9000 또는 ISO/TS16949의 품질인증 획득과 Just-in-time의 공급체계 확보는 물론 KOTRA가 주최하는 자동차 부품 구매 상담회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2006년 6월에 멜버른 무역관이 호주 내 자동차부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업체의 81.3%가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품질경쟁력에 대하여 경쟁적이거나 매우 경쟁적이라고 평가 하고 있는 반면 미흡하다고 평가한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우리 수출업체들이 가격 면에서만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자동차부품의 對호주 수출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다.

라. 환경 산업

1) 현 황

호주 대륙의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환경은 다른 대륙과의 단절 속에 진화 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병균과 해충으로부터 면역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호주의 공기 및 수질 오염도는 낮은 편이며 호주에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 대하여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 실천방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태양열 버스(Green Bus)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매년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특별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5-96년 동일기간 환경보호를 위한 민간 기업과 국영기업의 총 투자액은 79억 5천만 달러로 기록되고 W있다. 이는 92-93년의 수치보다 약 20억 달러 가량 늘어난 것으로 호주 정부와 국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호주는 20%(412.4m)의 정부예산과 4%(245.2m)의 비 정부예산을 환경에 대한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쓰고 있다

호주 연방 정부에서는 Waste Wise Construction Program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산업 및 건설 쓰레기를 최소화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하여 최근 도입 된 것 이다.

□ Waste Wise Construction Program

90년도 초에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산업 및 건설용 쓰레기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된바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Civil & Civic과 Multiplex, Fletcher Construction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98%, 60%, 43%의 건설 및 산업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다.

지난 98년에 발생한 시드니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는 식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킨 바 있으며, 근래 Gore Bay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효과적인 수질정화 기기와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시킨 바 있다.

뉴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는 수질오염 정화문제 이외에 교통부처와 공동으로 Clean Air 2000이라는 맑은 공기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태양열로 이동하는 무공해 Green Bus를 시험 운영 중에 있다.

호주는 자연환경을 수호하고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기후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바 있으며, 호주의 사람, 동물 및 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농수산물 수입과 해외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각종 병균과 해충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으로 대처하고 있다.

호주는 스웨덴의 뒤를 이어 Eco-Labeling 제도를 도입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라벨 제도는 특정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재활용품의 이용이 있었는지, 재질이 세균분해가 가능하며, 무공해 생산과정을 거쳤는지 등의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 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 및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어 시민 단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Eco-Labeling: 9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 표기법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제조 과정의 재활용여부를 알리는 표기법이다.
- Energy Labeling: 1986년부터 실행 중인 제도이며, 이는 전기 및 전자제품을 별 하나에서 6개로 등급을 나눠 에너지 효율성을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함이다.

최근에 실시된 호주 국민들의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공기오염(전체 32.4%)과 수질 오염(24.1%)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아래 매년 Clean Up Australia Day라는 대 국민 캠페인 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Clean up Australia Day에는 매년 3월에 실시하며, 70 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 국민 캠페인으로 매년 150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2) 특 성

호주 환경산업의 특성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카운슬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주도적인 역할은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와 비 정부기관에서 맡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호주는 관광업을 주요 산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고, 국토 전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으며,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유명한 관광지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호주가 관광산업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96년 통계로 보면 총 160억불로 석탄이나 제조업 수출액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정부와 각 지역 카운슬에서는 호주의 환경을 각종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해안가의 각종 오염으로 산호초의 멸종위기가 심각히 대두된바 있으며, 해안가의 오염된 수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방법이 거론 중에 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시민 단체들의 호응을 얻어 Beach Watch 라는 해안 감시 기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해안으로의 폐수방출과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호주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 및 보호 활동보다는 환경보호 단체들 즉, Environmental Activist와 같은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카운슬에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Environ-Australia와 Green Peace등의 비 정부 기관들은 정부와 지역 카운슬의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안수질 보호를 위해서 각 지역 카운슬에서는 Stormwater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질정화 업체와 업무실적(Performance based contract)에 따른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매년 Public Environmental Reporting을 실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기업, 시민 단체들 이 공동으로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문제점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호주의 내륙지방에서는 산불(Bush Fire)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방화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자연유산신탁(Natural Heritage Trust)의 일부 자금은 수목감소 중단, 토양재생 및 온실효과를 야기하는 가스 억제에 사용되고 있다.

3) 전 망

호주는 총면적 4천 2백 4십만 헥타에 달하는 11개의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와 울르르를 포함하는 13개의 자연환경은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같은 세계적인 환경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립 공원과 세계유산지역은 관광객과 방문객이 체류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대략 일년에 6백만 명 이상의 해외 방문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광업은 앞으로도 계속 호주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호주의 대 자연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한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호주는 국토 전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산호초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 정화시설 및 기기들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으로 있으며, 재활용을 중요시 하는 산업 전반상의 구조 때문에 산업 쓰레기를 이용 재활용품을 만들어 내는 재활용품 산업 또한 유망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주요 도시의 공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대형 빌딩내의 공기정화 시설, 먼지 흡입기, 각종 정화필터의 자동청소 제품 등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추세로 판단 되어진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00년 ~ 2004년 5년간 총 404백만 불을 환경관련 분야에 투자한 바 있으며,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현재 호주 전체 차량의 5%만이 경유(디젤)를 주유하고 있으며, 버스에는 오염 배출도가 낮은 압력 천연가스의 사용을 늘릴 전망이다. 주정부 도로 교통국은 향후 10년 계획으로 버스와 기차의 새로운 네트워크 라인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유(디젤)연료 테스트 프로그램과 새로운 대체 연료를 개발 중에 있다.

4) 진출확대 방안

호주는 대표적인 환경 보호국으로 호주 자연환경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호주의 환경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은 시민단체나 비정부 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각 지역 카운슬별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의 경우 직접적인 참여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 카운슬이나 시드니 수도국 등에서 예를 들어 수질정화의 하청을 줄 경우 performance based contract 즉, 하청업체의 업무실적이나 능력에 따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산업 및 공업용 폐수중 식수로까지 깨끗이 정화될 수 없는 물을 다시 한번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 실험 단계로 23억 5천만 리터의 물이 시드니 수도국에 의하여 재활용 되고 있다.

오존층의 파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 환경보호국)와 RTA (Road and Traffic Authority - 도로국)은 공동으로 태양열 버스(Green Bus)를 실험 운행 중에 있으며, International Centre for Application of Solar Energy 에서 는 호주의 실정에 맞는 태양열 에너지의 개발 및 연구에 힘쓰고 있다.

그 밖에 도심지에 있는 대형 빌딩내의 공기 정화 필터 및 기기, 오염 토양 테스트기, 폐휴지 재활용 기기, 산업용 및 공업용 쓰레기의 재활용 산업, 먼지 압축기, 고체 쓰레기의 재활용 방향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마. 대체 에너지 산업

1) 에너지 소비 및 공급 현황

호주의 에너지 소비는 90년대에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0년까지는 연평균 2.2% 수준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2001/2002년 호주의 전체 에너지 소비는 5,055PJ (PetaJoules)이며 2003 /2004년은 약 5,271PJ 임. 에너지의 최대 수요처는 발전, 수송, 제조 및 건설 부문임.

주요 에너지원 별로 에너지 공급 현황을 보면 원유 및 석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원에 있어 자급 및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체 수급현황을 분석하면 호주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 하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 부문 흑자는 주로 석탄의 생산에 기인한 것임.

2) 대체 에너지 개발 현황

□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대체에너지 개발 및 장기 에너지 전략과 관련한 호주 정부의 정책기조를 '에너지 혁신 (Energy Innovation)'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러한 혁신전략은 국가전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인 BAA (Backing Australia's Ability, 2001) 및 BAA2 (Backing Australia's Ability - Building our future through science and innovation, 2004)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에너지 부문 주요 혁신 프로그램

Renewable Energy Commercialisation Program (RECP)	- 총 6라운드에 걸쳐 대체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당 A\$10만 ~100만 규모의 펀드 지원 - 라운드 당 약 5개의 프로젝트 지원
Renewable Energy Equity Fund (REEF)	-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벤처캐피탈의 형태로서 유망 기업에 대해 최고 A\$3백만까지 지분 투자 - 현재 수혜 기업은 Battery Energy, Wind Corporation Australia, Superior Energy Systems 등 7개사임
Photovoltaic Rebate Programme (RVRP)	-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가구, 건물주에 대해 현금 보조 -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가구의 경우 최대 A\$4,000까지, 건물주에 대해서는 최대 A\$8,000까지 지원
Remote Renewable Power Generation Programme (RRPGP)	-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대체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 - 주로 주정부 별 개발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하는 형식으로 지원되며 총 규모는 약 A\$2억으로 전망됨
Mandatory Renewable Energy Target (MRET)	- 정부는 Renewable Energy(Electricity) Act 2000과 Renewable Energy(Electricity) Regulations 2001을 통해 2010년까지 대체 에너지에 의한 9,500GWh 규모의 추가적 전력생산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4백만 명이 소비하는 주거용 전기를 충당할 수 있는 전력량임
Alternative Fuels Conversion Programme (AFCP)	- 상용차(버스, 3.5톤 이상 트럭 등)의 신규구매 또는 엔진 시스템 교체에 대해 50%까지 지원 - 신규 구매 시 동급의 석유연료 차량과의 차액을 소요 비용으로 봄

자료원: Australian Greenhouse Office, 호주 산업 자원관광부(DITR)

호주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5%를 대체에너지원에 의해 충당함(2001/2002: 4.8% → 2003/2004: 5.4%(추정)). 전체 대체 에너지 생산의 약 95%는 나무, 버개스(주로 사탕수수 부산물), 수력전기가 차지하고 있음. Biofuel(매립가스, 폐기물가스 등)과 태양력의 비중이 약 5%이며 태양력 에너지 생산분 중 59%는 주거용 난방에 소요되었음

3) 대체 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 현황

2001/2002년 기준 대체 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은 17,217GWh로서 호주 전체 발전량 216,316 GWh의 약 8%를 차지하며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 중 수력의 비중이 가장 높고 Biomass, Biogas가 뒤를 잇고 있음

대체 에너지원 별 발전량(2001/2002)

	발전량(GWh)	비중(%)
총 발전량	216,316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량	17,217	8.0
· 수력	15,871	7.3
· 풍력	286	0.1
· Biomass	732	0.3
· Biogas	329	0.2

자료원: 호주 통계청(ABS), 호주 산업 자원관광부(DITR)

정부는 2009/2010년까지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을 9,500GWh까지 추가할 계획임(Mandatory Renewable Energy Target, MRET)

2005.2월 기준 운영중인 대체 에너지 발전소의 경우 수력 발전소의 비중이 압도적이나 장기적으로 풍력 발전소의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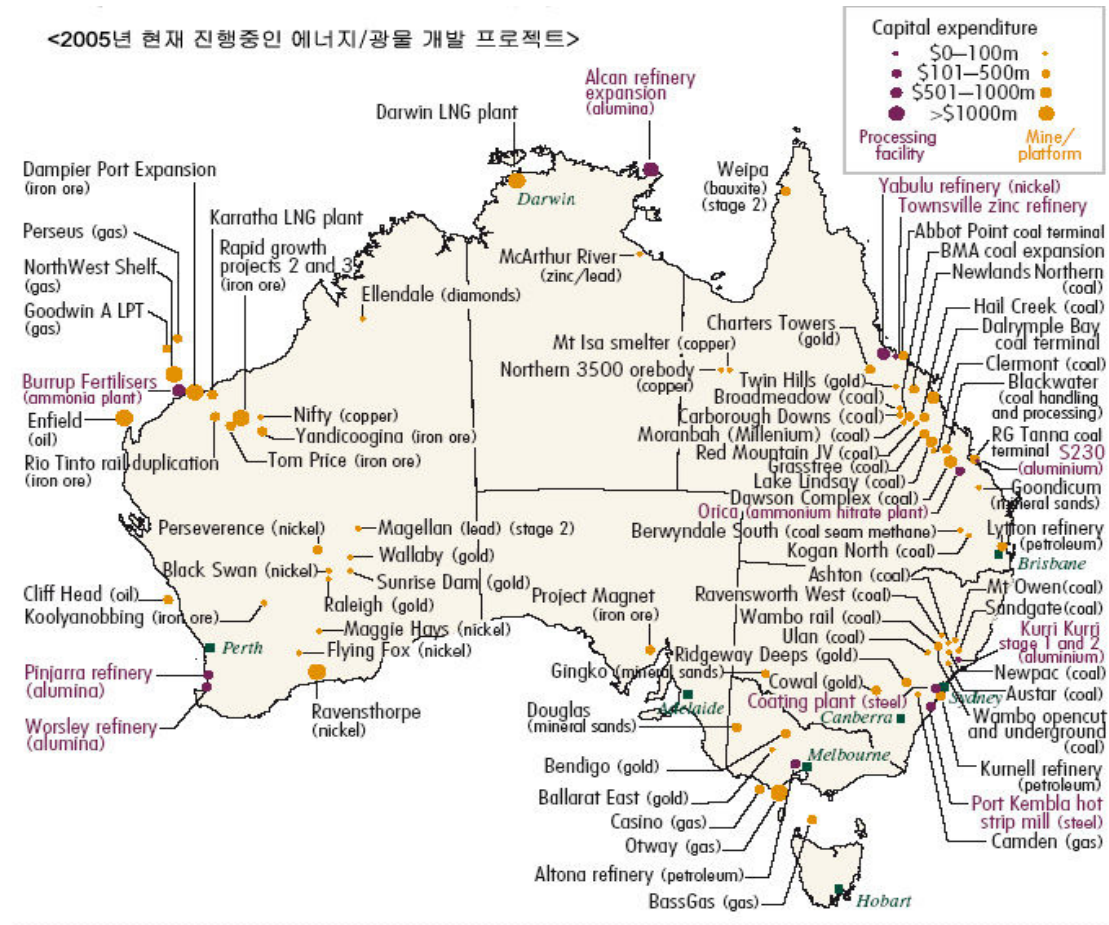
현재 운영중인 대체 에너지 발전소 392개의 총 시설용량은 8,778Mh이며 건설 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는 230개 발전소의 총 시설용량은 8,851Mh에 이를 전망이다

4) 광물·에너지 자원 개발 현황

A\$294억 규모의 광물자원 및 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호주는 자원강국의 위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1차산업 분야에 특화된 호주정부 산하 연구기구인 ABARE(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는 'Minerals and Energy: Major Development Projects'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241개의 광물자원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 중 84개 프로젝트를 ABARE는 'advanced' projects'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착수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착수된 프로젝트의 수(84)나 금액(A\$294억)모두 사상 최대치로 프로젝트 수는 올해 4월 조사에 비해 10개가 증가하였다. 금액기준으로 석유 및 석탄 프로젝트가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철광석 및 알루미늄이 각각 19%와 9%를 차지하였다.

2006년 4월 기준 계획단계에 있거나 타당성 분석중인 프로젝트는 166개이며 실행단계에 있는 90개 프로젝트를 포함한 총 256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abareonline.com/PdfFiles/PC13136.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 주요 산업의 2006년 기상도

1) 광업 부문

IBIS 가 분류한 17 대 산업군 중에서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9%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는 수출호조, 자원에너지 가격 상승, 호주달러 하락에 기인한 것임

2) 통신 산업

2000 년 중반까지 호주에서 가장 성장세가 빠른 산업이었으며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와 제 3 세대 통신기술의 보급, 모바일 콘텐츠 수요 확대 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 2006 년 성장률이 5%에 이를 전망이다

3) 금융 및 보험 산업

연금 기금(superannuation fund)의 축적과 금융 컨설팅 서비스의 활황으로 4.8%의 성장이 예고됨

4) 농, 축산업

순조로운 기후 상황으로 겨울작물 작황 호조, 그리고 이에 따른 축산물 생산 호조가 예고됨에 따라 전망이 밝음

5) 기타 문화 및 레저,接客업

커먼웰스 게임의 영향으로,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는 아웃소싱 트렌드의 확대로, 의료 건강 산업은 정부예산 지출 확대와 개인지출 양면의 확대로 평균 수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6) 제조업

서비스 부문에 비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부진하고 중국을 비롯한 수입제품으로부터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1.2%의 부진한 성장 전망

7) 소매업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대출부담 증가와 휘발유 가격상승의 영향이 커다란 영향을 미쳐 성장세는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2006년에는 1.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10. 정보조사 자료원

- 호주 통계청: www.abs.gov.au
- 호주 중앙은행: www.rba.gov.au
-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1차 상품 전문 연구기관): www.abare.gov.au
- 호주 관세청: www.customs.gov.au
- 호주 투자청: www.firb.gov.au
- Invest Australia (해외투자 유치기관): www.investaustralia.com.au
- Australian Financial Review(경제일간): www.afr.com.au
- Sydney Morning Herald(일간): www.smh.com.au
- BRW(경제주간): www.brwcom.au
- CHOICE(소비자 전문지): www.choice.com.au

- Melbourne Institute(경제전문 연구기관): www.melbourneinstitute.com
- Australian Industry Group(호주 경제인 연합회): www.aig.com.au
- IBIS World(상품산업 정보): <http://www.ibisworld.com.au>
- IDC(IT 리서치): <http://www.idc.com.au>
- IDG(IT 시장정보): <http://www.idg.com.au>
- FERRET(산업별 뉴스): www.ferret.com.au
- Scale Plus(호주 법률정보): <http://scaleplus.law.gov.au>
- FTA 정보: www.fta.gov.au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2004년	2005년
GDP성장률(%)	3.2	2.5
GDP(US\$십억)	618.0	708.0
1인당 GDP(US\$)	30,682	34,714
경상수지(US\$십억)	-39.8	-42.2
재정수지(A\$십억)	13.4	7.4
인플레이션(%)	2.3	2.8
실업률(%)	5.5	5.1
수출(US\$십억)	86.4	105.7
수입(US\$십억)	103.7	118.7
환율(A\$/US\$)	1.36	1.31
이자율	2006.8 기준 6.0%	

자료원: 호주통계청, IMF, EIU, 호주중앙은행

12. 무역통계

가. 호주의 전체 교역 동향

- 2005년 호주의 수출은 미화 1,057 억불 수입 1,187 억불로 전체 교역은 전년대비 18.1% 증가한 2,244 억불을 기록

- 한국은 호주의 3 위 수출 대상국, 9 위 수입 대상국이며 전체 교역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4위를 기록

최근 3년간 교역 실적 및 주요 교역 대상국

(단위: US 십억 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전체	155.2	190.0	224.4
1	일본	23.4	28.5	34.6
2	중국	15.3	21.2	28.4
3	미국	19.5	22.0	23.3
4	한국	8.3	10.3	12.2
5	뉴질랜드	8.6	10.2	10.9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및 주요 수출국

(단위: US 십억 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70.4	86.4	22.8	105.7	22.3
1	일본	12.8	16.3	27.2	21.6	32.7
2	중국	6.0	8.1	35.4	12.2	51.3
3	한국	5.3	6.7	27.7	8.3	23.3
4	미국	6.2	7.0	13.3	7.1	0.8
5	뉴질랜드	5.3	6.4	20.7	6.9	6.5

최근 3년간 수입실적 및 주요 수입국

(단위: US 십억 불, %)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84.8	103.7	22.2	118.7	14.5
1	미국	13.4	15.1	12.5	16.3	8.4
2	중국	9.3	13.2	40.8	16.2	23.5
3	일본	10.6	12.2	15.4	13.0	6.7
4	독일	5.3	6.0	14.7	6.6	10.2
9	한국	3.1	3.6	16.4	4.0	9.5

- 2005 년 중 호주는 석탄, 철광석을 비롯한 원자재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한편 석유, 자동차, 의약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십억 불, %)

순위	HS 코드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2701	석탄	9.8	39.2	16.6	69.5
2	2601	철광석	4.5	35.8	8.4	85.3
3	2709	원유	3.6	11.6	4.8	31.3
4	7108	금	4.2	10.1	4.4	6.3
5	2818	인조커런덤, 산화알루미늄	3.0	26.4	3.5	17.0
6	2711	석유가스	2.4	15.9	3.5	46.5
7	7601	알루미늄	2.7	19.4	3.0	14.6
8	8703	자동차	2.1	13.8	2.4	16.3
9	1001	밀과 메슬린	3.1	95.3	2.3	-26.2
10	3004	의약품	1.6	31.4	2.2	31.4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십억 불, %)

순위	HS 코드	품목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8703	자동차	8.1	15.9	9.3	13.8
2	2709	원유	6.1	38.0	8.0	31.6
3	2710	석유(비원유)	3.0	63.6	4.7	56.7
4	8471	컴퓨터	4.0	27.6	4.5	11.9
5	3004	의약품	3.8	39.3	4.4	14.9
6	8704	수송차량	2.6	38.3	3.0	19.1
7	8525	무선통신기기	2.3	35.1	2.3	2.7
8	7108	금액	1.8	-4.0	2.1	18.0
9	8802	항공기	2.1	-8.0	2.1	-1.1
10	8708	자동차부품	1.5	7.0	1.6	9.9

(이상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2006 상반기 교역동향

2006. 상반기 수출 실적 및 주요 수출국

순위	국명	금액(US\$백만)	점유율	증가율
0	전체	57,364	100.0	15.1
1	일본	11,524	20.1	15.0
2	중국	6,599	11.5	19.9
3	한국	4,223	7.4	10.3
4	미국	3,732	6.5	7.1
5	영국	3,490	6.1	140.0
6	뉴질랜드	2,959	5.2	- 10.2
7	인도	2,798	4.9	6.4
8	대만	2,253	3.9	8.4
9	태국	1,684	2.9	0.1
10	인도네시아	1,533	2.7	17.7

2006. 상반기 수입 실적 및 주요 수입국

순위	국가	금액(US\$백만)	점유율	증가율
0	전체	63,238	100.0	11.8
1	미국	8,814	13.9	8.8
2	중국	8,332	13.2	15.1
3	일본	6,347	10.0	-1.4
4	싱가포르	4,263	6.7	45.5
5	독일	3,177	5.0	-4.3
6	한국	2,781	4.4	48.5
7	말레이시아	2,656	4.2	18.5
8	태국	2,071	3.3	21.3
9	영국	2,011	3.2	-10.8
10	뉴질랜드	1,978	3.1	-0.9

(이상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나. 한-호 교역 동향

- 2005년 우리나라의 대호교역은 수출 38억불(12.8% 증) 수입 99억불(32.6%증)로 교역량이 전년대비 26.4% 증가한 137억불을 기록하였으며, 무역적자는 61억불로 확대됨

대 호 수출입 총괄

(단위: US 백만 불, %)

	수출입합계		대 호 수출		대 호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3	9,188	10.5	3,272	39.9	5,916	-1.0	-2,644
2004	10,816	17.7	3,378	3.3	7,438	25.7	-4,059
2005	13,671	26.4	3,812	12.8	9,859	32.6	-6,047

- 주요 수출품목 중 승용차, 석유제품 등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냉장고 등은 감소함

대호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불,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8703	승용차	512	42.4	739	44.4
2	8525	무선통신기기(휴대폰)	501	46.7	445	-11.2
3	8528	텔레비전	271	31.0	328	20.9
4	2710	석유·역청유(원유제외) 및 그 조제품	93	177.0	245	161.8
5	8708	자동차용 부분품/부속품	97	74.6	102	5.6
6	8471	컴퓨터	133	-4.0	95	-28.2
7	4810	도포한지와 판지	83	25.4	88	5.6
8	8418	냉장고 및 냉동고	89	19.6	79	-11.6
9	4011	타이어	74	3.9	75	1.6
10	7210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35	64.4	68	94.4

- 한편 수입품목 중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 급증으로 전체 수입이 크게 늘어났음

대호 주요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불,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2701	석탄 및 연탄	1,572	59.1	2,326	48.0
2	2709	석유, 역청유(원유)	1,194	56.6	1,715	43.7
3	2601	철광과 그 정광	688	14.9	946	37.5
4	7601	알루미늄의 괴	365	8.3	412	12.9
5	202	쇠고기(냉동한 것)	241	69.6	357	48.0
6	2711	석유가스	135	93.0	357	164.4
7	7502	니켈의 괴	280	50.2	309	10.2
8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176	62.4	265	51.0
9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118	23.8	260	120
10	1701	사탕수수당	197	18.9	245	24.6

(이상 자료원: 한국관세청)

□ 2006 1~7 월 교역 동향

- 대 호 수입 증가세가 2005년 평균에 비해 둔화된 반면 수출 증가세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석유 및 역청유(원유제외) 제품 수출 및 선박(해상시설류)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무선 통신기기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된 것 등에 기인함

2006.1~7 월 대 호수출입 총괄

(단위 : US 백만 불, %)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739	33.2	6,260	15.8	-3,521

2006.1~7 월 대 호 주요 수출품목

순위	HS	품목	금액(US\$백만)	증가율
		총계	2,739	33.2
1	8703	승용차	514	24
2	2710	석유 .역청유 (원유 제외), 이들의 조제품	446	422.9
3	8525	휴대폰	240	7.1
4	8528	TV	168	-6.4
5	8901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 선박	118	-
6	8905	기타 특수선박	94	-
7	8708	자동차 부품	58	-7.0
8	4011	타이어	50	13.3
9	4810	도포한지와 판지(롤/쉬트 상)	47	-2.9
10	8418	냉장고/냉동고	43	-10.9

2006.1~7 월 대 호 주요 수입품목

순위	HS	품목	금액(US\$백만)	증가율
		총계	9,859	15.8
1	2701	석탄, 연탄, 마적탄, 유사한 고형연료	1,387	8.7
2	2709	석유, 역청유 (원유)	1,063	17.6
3	2601	철광과 그 정광	704	42.9
4	7601	알루미늄의 괴	366	58.2
5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274	74.8
6	0202	쇠고기 (냉동한 것)	208	12.8
7	1701	사탕수수당, 사탕무우당	207	66.9
8	2603	동광과 그 정광	153	90.2
9	2711	석유가스,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150	50.8
10	7502	니켈의 괴	125	-35.5

(이상 자료원 : 한국관세청/무역협회)

13. 투자통계

가. 투자

1) 해외직접투자 유치

최근 3년간 해외직접투자 유치

(단위: 미화 백만 불)

	2002	2003	2004
Flow(당해 연도)	15,632	6,955	42,594
Stock(누계)	73,641	111,141	253,620

(자료원: UNCTAD)

- 2005년 직접투자 유치액(순 투자)은 -A\$44,654 백만 불 임(호주통계청)

2) 해외직접투자 진출

최근 3년간 해외직접투자진출

(단위: 미화 백만 불)

	2002	2003	2004
Flow(당해 연도)	7,876	15,277	16,288
Stock(누계)	30,506	85,387	167,541

(자료원: UNCTAD)

- 2005년 직접투자 진출액(순 투자)은 +A\$45,697 백만 불 임(호주통계청)

나. 한-호 투자 동향

1) 호주의 대한 투자

- 주요 투자분야
 - 부동산, 자동차, 금융업, 기타 서비스 등
- 최근 관심분야
 - 엔터테인먼트: 첨단영상편집, 테마파크, 요트클럽 등
 - 금융: SOC/Private Fund, REITs 투자 확대
 - SOC 프로젝트: Toll Road, 교량, 항만, 풍력발전 등
 - BIO, 자동차 부품: 원천기술 보유기업 투자 및 기술협력
- 호주의 신고기준 대한 투자
 - 2006 1-6 월: 11 건 44 백만 불
 - 2005: 23 건 51 백만 불
 - 2004: 25 건 54 백만 불
 - 1962-2005 누계: 245 건, 654 백만 불

(자료원: Invest Korea)

2) 한국의 대호 투자

- 2005 년 대호 투자는 신고기준 44 건 1 억 3 천만 불로 2000 년 이후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임
- 신고 기준 투자금액(누계)의 약 75%를 광업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나 2001 년 이후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현대자동차, 고려아연 등)

대호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불)

	신고		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26	123	23	58
2001	18	12	18	11
2002	17	55	14	63
2003	18	187	17	51
2004	23	80	23	54
2005	44	132	42	104
2006.1~6	19	99	2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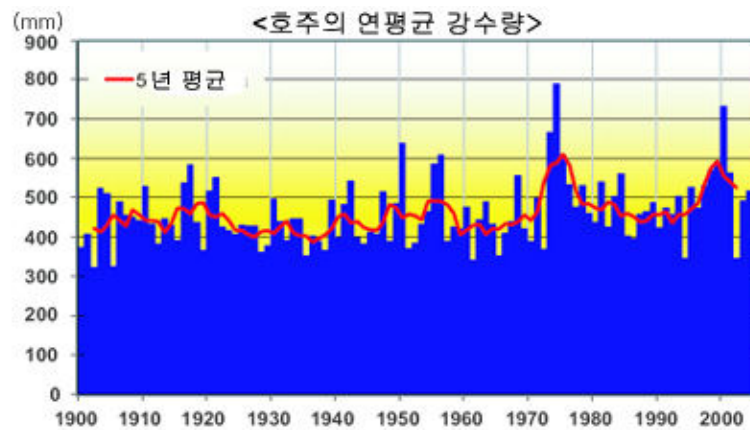
(자료원: 한국 수출입 은행)

IV. 출장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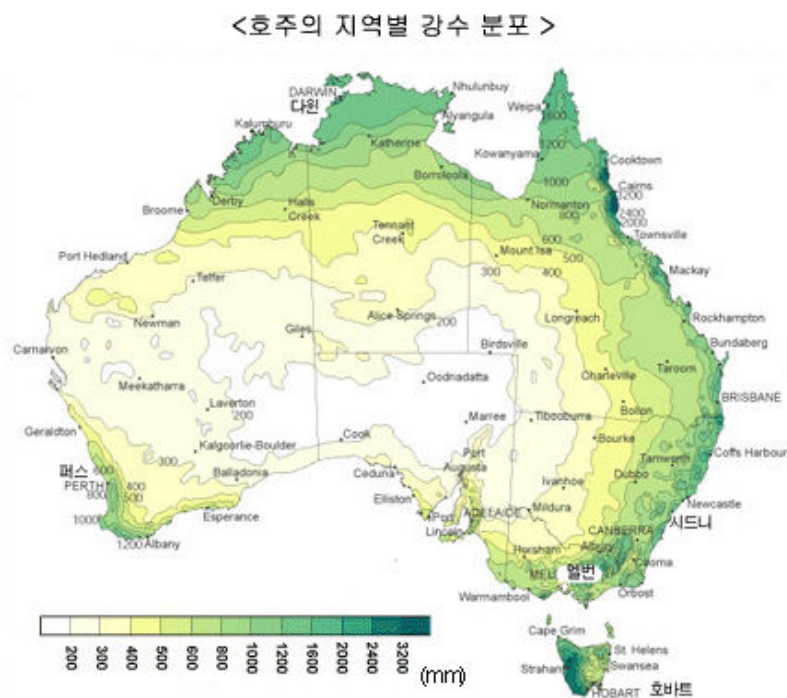
14. 출장가이드

1. 기후

- 호주는 한반도의 35 배에 이르는 방대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토의 39%는 열대, 61%는 온대 기후대에 속한다. 서부의 40%와 북부의 80%는 열대성, 남부는 온대성, 중앙부는 대륙성 사막 기후이며 역대 최고 기온은 Queensland 주의 53.1 도, 최저 기온은 New South Wales 주가 영하 22.2 도이다. (동절기: 7-9 월, 하절기: 12-2 월)
- 연교차는 크지 않은 반면 일교차는 커서 시드니 지역의 경우 가을용 코트정도면 무난하며 여름에도 긴 팔 셔츠가 필요한 날이 많다.
- 연평균 강우량은 465mm 로 세계 6 대주 중 가장 건조하며, 남반구에 위치한 관계로 북반구와는 정반대의 계절 순환을 나타내고 있다.



- 2002 년의 경우, 수 십 년 기록을 경신하는 가뭄이 계속되어 호주 농가의 수확량은 30% 내외의 감소를 보였다. 이후 2003~2004년에는 농업생산이 양호했으나, 2005년에는 또 다시 가뭄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생산도 평년작보다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최대 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은 하절기 낮 기온이 평균 30 도, 동절기 최저 기온은 평균 5 도 내외로 기후 조건이 매우 뛰어나며, 브리스베인, 아들레이드, 퍼스 등 주요 도시의 기후 조건도 양호하나, 해풍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심한 편이다.
- 남극대륙 상공의 오존층 파괴의 영향으로 피부암 발생율이 세계 1 위일 정도로 태양 광선이 매우 강력, 하절기에는 선블럭 크림 사용과 선글라스 착용이 보편화 되어 있다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 우리나라와 시차는 캔버라, 시드니, 멜버른 및 브리즈베인 등 대부분 도시가 한국시간 보다 1시간이 빠르다. 즉, 한국이 오전 10:00 시일 때, 호주는 11:00 시 이다.
- 그러나, 퍼스와 같은 서부도시 및 서부지역은 시차가 한국보다 1시간이 느리다. 이는 호주 대륙이 워낙 넓은 관계로 세 개의 시간대에 걸쳐있는 때문이다. (한국과 주요 도시 별 시차 비교표 참조)
- 호주의 여름기간(10 월 마지막 일요일~3 월 마지막 일요일)은 Summer Time 제가 실시 (퀸스랜드주와 서부호주 지역은 제외, 타스마니아주는 10 월 첫째 일요일부터 실시) 되기 때문에 시드니와 멜버른 등 주요 동부도시 들과의 시차는 2 시간으로 1 시간이 늘어난다. 즉, 한국이 낮 12:00 일 때 호주는 오후 14:00 이다.

한국과 주요 도시별 시간 비교

한국	ACT	NSW	VIC	QLD	TAS	S.A	N.T	W.A
24:00	01:00	01:00	01:00	01:00	00:30	00:30	23:00	23:00

주 : 호주가 섬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을 때를 기준한 것임.

퀸스랜드 주는 여름철에도 섬머타임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나. 근무시간

- 일반회사의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09:00 ~ 17:00 이며 토. 일요일은 휴무이다.
- 매주 목요일은 쇼핑 Day 라 하여 대부분의 소매상점들이 저녁 근무시간을 21:00 까지 늘리고 있다.
-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당 40 시간 미만의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3 년 4 월부터 Westpac 은행이 고객편의 확대를 위해 토요일 근무를 발표 시행중인 것이 특색이다.

3. 도량형

호주는 미터법이 일반화 되어 있어 한국과 특별히 상이한 점이 없음

4. 출입국/비자

가. 비자

1) 비자관련 일반사항

호주 입국 시는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 적으로 제 3 국으로의 Transit 을 위해 공항 내에서만 체류할 경우에는 8 시간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도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 취득 후 12 개월 이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무효화된다. 관광비자로 입국 시 체류기간은 3 개월이며, 12 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 도입된 ETA(전산방문비자)는 3 개월 미만 호주를 방문할 경우 취득이 가능하다.

2) 비자 발급

관광, 상용비자는 호주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거나, ETA(전산방문비자)를 인터넷 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ETA 전산비자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없다. ETA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인터넷 서비스비로 지불해야 한다.

ETA 비자 취득은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신청한 경우 1 분이면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 경우를 예상하여 출국 최소 3 일 이내 비자를 신청해야 함.

ETA 비자 취득 조건: 유효한 여권 소지, 방문목적이 여행, 친지 방문 또는 회의나 컨퍼런스 참석일 경우, 호주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3 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ETA 시스템 회원사인 항공사로 여행할 경우 가능하다.

3 개월 이상 체류 시 단기방문/상용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주한 호주 대사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관련정보 www.australia.or.kr 를 참조.

나. 출입국절차

1) 호주 입국절차

□ 입국심사

여권, 항공권, Incoming Passenger Card 및 Customs, Quarantine and Wildlife Statement (기내 배부 또는 입국 심사장에 비치)를 호주공항 입국심사 창구에 제출

2) 출국 절차

항공편 체크인 이민성 출국심사(여권, 항공권, 탑승권, Outgoing Passenger Card 제출)

3) 여권분실 해결절차(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는 정식 여권 발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귀국 또는 제 3 국 여행을 하거나, 해외여행 중 여권의 만료 또는 분실자가 귀국하는 경우에 발급받음.

□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 부, 여권용 칼라사진 3 매, 항공권 원본 및 사본, 수수료(A\$13), 한국에서 발행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여권분실 경위서 1 부,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함.
(소요기간: 1 주일)

□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접수하되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함. 우편접수 시 분실 우려에 대비하여 접수 및 반송용 등기우편봉투는 추적 가능한 우편을 이용하고, 반송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함.

4) 통관절차

Customs, Quarantine and Wildlife Statement 에 명시된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검사대를 통과(통과 시 동 Statement 제출)

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일반적으로 US\$ 150 상당)을 내게 됨.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호주가 환경 보호 의지가 강하여 미신고 식품이 적발되면 입국절차도 복잡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벌금을 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고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만을 위한 세관 검사대에서 휴대품을 검사 받는다. 신고된 식품 등이 친지선물용 정도로 판단될 경우, 세관검사는 간략한 검사로 통과된다.

김, 고추장 등 식품의 경우, 밀폐 포장되고 내용 성분표기가 명확한 제품만 휴대반입이 허용되며, 집에서 담근 고추장, 김치 등 식품은 모두 압류조치 된다.

□ 무세 반입 허용 범위

- 1인당 술 1리터, 담배 250개피 또는 250그램(18세 이상)
- 개인용 의류(모피류 제외), 신발류, 위생 및 장식용품(향수 및 보석 제외)

□ 출국 시 재 반출할 물품

- 모피의류, 향수, 보석을 포함한 기타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 가격이 총 A\$400(18세 미만은 A\$200) 미만인 경우에만 면세

5. 환율/환전

가. 통화

화폐단위는 Australian Dollar(A\$)이며, A\$ 1 = 100 Cents 이다. 원래는 파운드화를 사용했으나, 1966년부터 달러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폐의 종류는 A\$ 100, A\$ 50, A\$ 10, A\$ 5 (2종) 등 6종이며, 동전의 경우에는 A\$ 2, A\$ 1, 50 Cents, 20 Cents, 10 Cents, 5 Cents 등 6종이 있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호주의 화폐는 고액권으로 갈수록 크기도 커지는데, 동전의 경우 2달러짜리가 1달러짜리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호주달러화의 환율은 2006년 8월 현재 A\$ 1= US\$ 0.76 정도로 최근 강세를 보이는 추세이다.

나. 환전

공항, 시중은행 및 사설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환전소에 비해 환율이 유리하나, 입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소액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전금액이 클 경우 HKSB(홍콩 상하이 은행)와 같은 시중의 중국계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이 경우 모든 환전창구에서 신분증(여권 등)을 요구한다.

한편, 면세점이나 관광객 상대 기념품 점 등을 제외한 일반 상점에서는 거의 미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시내나 주요관광지 곳곳에 공식 환전소가 있어 환전에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원화는 환전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미리 미화나 호주화를 환전하도록 한다. 한국의 신용카드(비자, 마스터)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일반 ATM 기에서도 가능하다.

6. 물가정보

□ 도시: 시드니(오스트레일리아)			- 환율 : US\$1 = AU\$1.31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462.08	7.1	구두(1켤레, 소가죽)	342.22
1.2	넥타이(1개, 실크100%)	130.12	7.2	치약(150g, 1개)	4.9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67.68	7.3	칫솔(1개)	4.99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12.93	7.4	면도기(1세트)	5.32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411.4	7.5	건전지(1세트, 1.5V AA)	4.99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8.37	7.6	화장지(1통, 300매)	4.8
1.7	청바지(Levi's)	83.65	7.7	비누(1개)	2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13.69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28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7.6	8.2	볼펜(12개)	4.02
2.3	닭고기(1KG, 생닭)	3.8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3.12
2.4	쌀(1KG, Short Grain)	2.1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7.3
2.5	밀가루(1KG)	1.22	8.5	휴대폰(범용형)	196.97
2.6	설탕(1KG, 백설탕)	0.91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52.47
2.7	계란(10개)	3.8	8.7	인터넷가설비 (1회최초, 1회설치)	105.71
2.8	감자(1KG, 현지산)	2.98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45.63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2.49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16,730.9
3.1	고추장(1Kg)	4.94	9.2	엔진오일(1L)	11.41
3.2	된장(1Kg)	3.8	9.3	휘발유(1L)	0.99
3.3	라면(1개)	0.61	9.4	자동차등록비(2,000cc)	501.93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등)	9.13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608.4

3.5	불고기(1인분, 200g)	9.89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9.89	10.1	지하철(1구간)	2.28
3.7	김치찌개(1인분)	9.13	10.2	시내버스(1구간)	1.22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2.13
4.1	햄버거(1개)	2.62	10.4	택시(추가요금/Km)	1.23
4.2	피자(1판)	12.13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1.00	11.1	전화 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44.87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2.88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22.81
4.5	담배(수입산, 1갑)	6.77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15
4.6	위스키(1병, 750ml)	50.19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3
4.7	커피(1병, 175g)	11.22	11.5	국제전화 (현지-서울, 3분, 평상)	1.83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38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1,977.29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0.9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2,433.59	11.8	특급우편(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28.02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없음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6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76.05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76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01
6.1	TV(29인치, 칼라, 범용)	493.56			
6.2	VTR(6헤드, 범용)	128.52		※9.4 자동차 구입 가격의 3%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90.5			
6.4	전자레인지	102.67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520.23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531.59			

□ 도시: 시드니(오스트레일리아)			- 환율 : US\$1 = AU\$1.31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1,550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500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9%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8,0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1,6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90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2,800	18.6	연간국경일	10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45	18.8	노동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14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63,0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13.3	골프공(1타)	17.2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460	19.1	법정최저자금	-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33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42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12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3,802.48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7.5%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26.25			
14.4	치과(스켈링, 1회)	121.3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1.3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19.77			
15.2	한국신문(1개월)	41.83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40.27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4.18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384.81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82.52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28.15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02.67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2.81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6.69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2,60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2,100			

* 동 자료는 2005년 말 기준임

7. 교통/통신

가. 교통

1) 시내 교통

- 한국에서 호주를 방문한 출장자가 시드니나 멜버른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교통신호 체계가 우측 핸들인데 따른 문제 외에도, 도심 내 에 일방통행로가 많아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또한 심각한 주차 문제로 인해 주차료가 택시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 시내버스, 전철, 모노레일 등 대중 교통편도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자에게는 권장할 만 하지는 못하다. 목적지에서 정확히 내리지 못할 경우 약속시간을 놓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정차 지역마다 안내방송을 하지만, 독특한 호주 식 영어발음은 초행자의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

- 이에 따라, 시드니 지리에 밝지 못한 출장자들에게는 장거리가 아닌 경우, 택시이용이 권장된다. 택시요금이 다소 비싸지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장거리인 경우 전철을 이용하여 목적지 근처에 내려서 다시 택시를 이용하도록 권장된다.
- 통상 전철역에는 빈 택시들이 다수 대기 중에 있어, 택시 잡는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용무를 마치고 전철역으로 돌아갈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으나, 이럴 경우에는 갈 때 이용한 택시기사에게 1 시간쯤 후에 또는 몇 시간쯤 후에 다시 와달라고 부탁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 한국과의 교통

□ 항공편

- 인천-시드니 간에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각각 주 7 회 운항 중이며, 비행시간은 약 10 시간이 소요된다.
- 인천-멜버른 간 직항편은 없으며, 시드니를 경유하여 호주 국내선을 이용해야 한다.
- 멜버른을 행선지로 하는 출장자는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마치고 국제선 공항청사를 일단 빠져 나와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국제선 청사에서 2Km 거리에 위치한 국내선 청사로 이동해야 하는데, 국제선 청사와 국내선 청사간 이동은 전철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인천-시드니-멜버른 항로로 이동하는 경우,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이동하는 시간, 등을 감안 할 때, 시드니 도착시간과 멜버른 행 비행기 탑승시간은 적어도 2 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는 국내선 청사도 2 개로 구성되어 있어 자칫 착오로 엉뚱한 국내선 청사에 내릴 경우 무거운 가방을 들고 수 백 미터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곤란을 겪게 되는 때문인데, 택시 이용 시에 본인이 이용할 다음 국내선 항공편 번호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 그러나, 인천에서 동남아(싱가폴, 홍콩)를 경유하여 멜버른으로 가는(시드니를 경유하지 않고) 비행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 시드니-멜버른 간 비행편

- 매시간 이용가능
- 소요시간: 약 1 시간 30 분
- 요금: 약 A\$300 (편도) *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티켓 구입 가능
- 항공사: Qantas, Virgin Blue 등
- 2004 년 3 월 양국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여객 항공편을 현행 주당 5,000 석에서 금년 중에 주당 6,400 석으로, 내년 4 월부터는 주당 7,500 석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조만간 1 일 운항 비행기 편이 하루 2 회에서 3 회 수준으로 늘어날 것임.

□ 선편

- 현대상선을 비롯한 8 개의 Conference 선사가 평균 월 3 회 Line Service 를 제공하고 있다. 운항일수는 Direct Line 이 평균 15 일, 싱가포르 환적 Line 은 평균 30 일이 소요된다.
- 멜버른-부산 간 직항선이 Anscon, Maersk, Cosco 사 등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나. 통신

1) 휴대폰 렌트

- 시드니공항 도착 후 공항 청사 내에서 여행 필수품인 휴대폰을 임차할 수 있다. 호주의 이동 통신업 체인 Vodafone 사가 호주의 6 대도시 국제공항 청사에서 휴대폰 임대 사업을 개시했다.
- 시드니 공항의 경우, 입국심사를 마치고 공항 대합실로 빠져 나오자마자 2 군데에서 (출입구 A/B 쪽 1 개, C/D 쪽 1 개) 매장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국제공항에서도 휴대폰 렌트 매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어있다.
- 임차료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하루에 A\$5.99~9.99 수준이며, 통화료는 별도로 계산된다.
- 임차한 휴대폰을 통해 한국으로 전화를 할 경우, 분당 통화료는 A\$2.49 가 부과된다.
- 공항에서 임차한 휴대폰은 출국 시 반납하면 된다.

2) 시내 공중전화

- 호주의 시내 공중전화료는 무척 비싸다. A\$0.40(40 센트)를 투입해야 통화음이 떨어 (다이얼링이 가능해)진다.
- 공중전화-일반전화 통화료는 초기 투입금액 40 센트로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전화-휴대전화의 경우, 매 분 마다 20 센트씩을 추가 투입해야 통화연결이 유지된다.

8. 호텔/식당

가. 호텔

1) Shangri-La Hotel, Sydney (☆☆☆☆☆)

- 위치 : 176 Cumberland St. The Rocks
- 시드니공항에서 차로 25 분, 시내 Wynyard(윈야드) 전철역에서 도보 8 분 거리

- 객실 요금 (Standard Room 기준/싱글, 트윈 요금 동일)
 - A\$450(약 US\$350/성수기), A\$280(약 US\$215/비수기)
 - 호주의 호텔은 방의 전망에 따라 가격차이가 20%이상 나기도 함.
 - 시즌 별, 객실 종류 별 숙박요금은 www.wotif.com 에서 검색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 모든 객실에서 고속인터넷 이용 가능(사용료: 하루 무제한 A\$20.0)
 - 각종 회의실에서는 무선 LAN 과 2Mega 급 고속인터넷 사용도 가능(사용료와 설치비가 따로 청구됨)
- 각종 부대시설
 - 특급관광지에 소재한 특급호텔로서, Gym, Spa 등 모든 시설을 구비함
 - 회의실로 사용 가능한 룸은 총 18 개이며, 최대규모 Ballroom 은 670sm 이나, 2 개를 연결(벽을 터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 칵테일 파티의 경우 1,800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음.
- 연락처
 - 전화 : 61-2-9250-6000
 - 팩스 : 61-2-9250-6250
 - 이메일 : patrick.burke@shangri-la.com
 - 웹사이트 : www.shangri-la.com

2) Sydney Harbour Marriot (☆☆☆☆☆)

- 위치 : 30 Pitt St. Circular Quay
 - 시드니 공항에서 차로 25 분, 시내 원야드 전철역에서 도보 5 분 거리
- 객실 요금 (Standard Room 기준/싱글, 트윈 요금 동일)
 - A\$450(약 US\$350/성수기), A\$259(약 US\$200/비수기)
 - 호주의 호텔은 방의 전망에 따라 20%이상 가격차이가 나기도 함
 - 시즌 별, 객실 종류별 숙박요금은 www.wotif.com 에서 검색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 모든 객실에서 고속인터넷 이용 가능(사용료: 하루 무제한 A\$24.95)
 - 각종 회의실에서 고속인터넷 사용 가능
- 각종 부대시설
 - 특급관광지에 소재한 특급호텔로서, Gym, Spa 등 모든 시설을 구비함.
 - 각기 다른 크기의 평선룸 20 개 보유
 - 최대룸인 The Gallery 는 252sm 이며 옆방과 터서 사용할 경우 3 배로 확장이 가능
- 연락처
 - 전화 : 61-2-9259-7000
 - 팩스 : 61-2-9251-1122
 - 이메일 : sydney.sales@marriothotels.com
 - 웹사이트 : www.marriot.com/mc

○ 특기사항

- 호텔에 렌트카 서비스업체(AVIS)가 상주해, 렌트카에 가장 편리함
- 시드니에 동명호텔(Sydney Marriot)이 있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3) Novotel Sydney on Darling Harbour (☆☆☆☆)

○ 위치 : 100 Murray St, Darling Harbour

○ 객실 요금 (Standard Room 기준/싱글, 트윈 요금 동일)

- A\$450(약 US\$350/성수기), A\$200(약 US\$155/비수기)
- 호주의 호텔은 방의 전망에 따라 가격차이가 20%이상 나기도 함
- 호텔 별 객실요금, 객실 크기 별 요금은 www.wotif.com 에서 검색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 모든 객실에서 고속인터넷 이용 가능(사용료: 분당 A\$0.5)
- 각종 회의실에서는 고속인터넷 사용이 가능

○ 각종 부대시설

- 시드니 전시 컨벤션센터에 인접한 중상급 호텔로서, 회의시설은 많이 보유하지 않으나, 그 외 대부분의 시설을 완비함.
- 12 개의 회의실 갖고 있으나, 모두 소규모의 방으로 구성됨.

○ 연락처

- 전화 : 61-2-9934-0000
- 팩스 : 61-2-9934-0099
- 이메일 : h1181-sb01@accor.com
- 웹사이트 : www.novoteldarlingharbour.com

○ 기타 특이사항 : 전시회 참가 시 투숙이 권장되는 호텔임.

4) Stamford Plaza Sydney Airport (☆☆☆☆)

○ 위치 : 30 Pitt St. Circular Quay

- 시드니 공항에 인접, 시내와는 차로 25~30 분 거리

○ 객실 요금 (Standard Room 기준/싱글, 트윈 요금 동일)

- A\$390(약 US\$300/성수기), A\$115(약 US\$89/비수기)
- 이 호텔은 전망에 따른 가격차이가 거의 없음
- 시즌 별, 객실 종류별 숙박요금은 www.wotif.com 에서 검색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 모든 객실에서 고속인터넷 이용 가능(사용료: 분당 A\$0.55 또는 하루 무제한 A\$29.00)
- 각종 회의실에서 고속인터넷 사용 가능

○ 각종 부대시설

- 공항에 인접한 호텔로서, Gym, Spa 등 모든 시설을 구비함
- 11 개의 각기 다른 크기의 평선룸 보유

- 연락처
 - 전화 : 61-2-9317-2200
 - 팩스 : 61-2-9317-3855
 - 웹사이트 : www.stamford.com
- 특기사항 : 시드니 다른 지역에도 Stamford 호텔이 있는 바, Airport 를 강조해야 함.

5) Carlton Crest Hotel (☆☆☆☆)

- 위치 : 169 Thomas St, Sydney
- 객실 요금 (Standard Room 기준/싱글, 트윈 요금 동일)
 - A\$300(약 US\$230/성수기), A\$135(약 US\$105/비수기)
 - 이 호텔은 전망에 따른 가격차이가 거의 없음
 - 호텔 별 객실요금, 객실 크기 별 요금은 www.wotif.com 에서 검색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모든 객실에서 전화모뎀 인터넷이용가능(사용료: 분당 A\$0.5)
- 각종 부대시설
 - 시드니 도심 차이나타운 인근에 위치한 중급 호텔로서, 비즈니스 호텔이라기 보다는 절약하려는 여행자에게 적합한 호텔임. 따라서, 식당, 로비, 아주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함.
 - 11 개의 중소규모 회의실 갖고 있음.
- 연락처
 - 전화 : 61-2-9281-6888
 - 팩스 : 61-2-9281-2213
 - 이메일 : res@carltoncrest-sydney.com.au
 - 사이트 : www.carltoncresthotels.com.au/sydney

나. 식당

1) 식당 개요

- 호주에는 한국 이민자가 6만 명에 육박하여, 시드니 멜버른 등 대도시에서는 한국 음식점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 시드니의 경우, 특히 한국교민이 밀집해 거주하는 캄시, 이스트우드, 스트라스필드 등의 지역에서는 한국에서와 똑같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 시드니를 처음 방문한 분으로서 현지에 안내자가 없을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데, 시내 소재 식당들은 다음과 같다. (도심 호텔에서는 택시요금 A\$ 10 내외)
- 일반 식당의 음식가격은 일인당 US\$10~20 수준이나, 고급식당에서는 US\$30~70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 음식값 계산시 별도의 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 주요 식당

한식당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비고
북창동순두부	117 Kippax St.	(02)9280-1577	Surry Hill 지역
두레	129 Clarence St.	(02)9290-1004	시내중심부 소재
한국관	238/242 Pitt St.	(02)9267-6500	시내중심부 소재
석란	1st. Fl. Gateway Plaza 1 Macquarie Place	(02)9241-3317	시내중심부 소재
초가	Shop106, Prince Center	(02)9211-5220	8 Quay St. 소재

중식당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비고
Golden Century	393 Sussex St.	(02) 9212-3901	중국식 해물요리
Emperor's Choice	261 George St.	(02) 9247-7740	다양한 중국요리
Emperor's Choice(분점)	147A King St.	(02) 9232-1881	
Imperial Habourside	15 Circular Quay	(02) 9247-7073	오페라하우스 부근

일식당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비고
Matsukaze	level 1, 2 Chifly Square	(02) 9229-0191	별실 갖춘
Masuya	1214 O'Connell St.	(02) 9235-2717	Basement Level
Torin(동림)	122 Rowe St, Eastwood	(02) 9874-9660	한국형 일식당

이탈리 식당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비고
LaBora Pizzeria	9a Barrack St.	(02) 9233-5296	스파게티, 피자
ALFREDO'S	16 Bulletin Pl.	(02) 9251-2829	
Caminetto	13 Playfair St.	(02) 9247-5787	피자, 파스타 전문

해산물 및 부페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비고
Sydney Tower	100 Market St	(02) 0233-3722	전망 좋은 부페식당

9. 관공서 관행

호주에서는 사회 관행이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정의가 확립되어 있고 모든 일에 원리원칙이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뇌물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세관의 수입물품 통과절차도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심사 위주로 진행되나, 샘플링 검사에서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신뢰를 쌓기까지 이후 5-6회 동안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호주 관공서의 일 처리 태도는 매우 친절하나 결코 서두르지 않아 성격이 급한 편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은행에서도 학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서두르는 법이 없다. 호주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하고 이를 당연시하며, 차를 기다리지 않는 행동을 싫어한다. 그러나, 차량 운전 시 주변의 차량에 양보하는 미덕을 갖추고 있다.

관공서는 물론 은행, 전철역, 버스정류장, 식당, 쇼핑센터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줄을 서고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일 처리가 느린 반면 처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고 철저하다. 빨리빨리 대강 대강이란 게 없다.

관공서에서 특정 업무 담당자가 휴가(통상 1개월)를 떠나거나 장기 출장을 떠났을 경우, 그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달리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 업무가 마비되나, 호주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비단 관공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2월 중반부터 약 한달 간은 현지 휴가기간으로 대부분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10. 공휴일

공휴일명	일자	시행 주 또는 도시 (공란: 전 지역)
New Year's Day	1월 2일	
Australia Day	1월 26일	
Labour Day	3월 6일	WA
Eight Hours Day	3월 13일	TAS
Labour Day	3월 13일	VIC
Adelaide Cup Day	3월 13일	SA
Canberra Day	3월 20일	ACT
Good Friday	4월 14일	
Easter Monday	4월 17일	
Easter Tuesday	4월 18일	TAS 일부
Anzac Day	4월 25일	
May Day	5월 1일	NT
Labour Day	5월 1일	QLD
Foundation Day	6월 5일	WA
Queen's Birthday	6월 12일	WA제외
Picnic Day	8월 7일	NT
Royal Queensland Show Day	8월 16일	브리즈번
Queen's Birthday	10월 2일	WA
Labour Day	10월 2일	NSW/ACT/SA
Melbourne Cup Day	11월 7일	멜버른
Christmas Day	12월 25일	
Boxing Day	12월 26일	SA 제외
Proclamation Day	12월 26일	SA

- 12월-1월 중순은 하계 휴가기간으로 비즈니스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주 별, 도시 별로 시행하는 공휴일에 차이가 있으므로 출장 등 호주 방문 시 사전 확인필요
- 징검다리 휴일(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에는 비 휴일에도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의복 준비

- 호주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이나 시드니의 겨울은 그리 춥지 않아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호주의 겨울은 한국에 비하여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여 밤과 새벽에는 오싹할 정도로 쌀쌀하므로 감기에 주의해야 한다.
- 여름에는 한국처럼 무덥고 습하지는 않는 고온 건조한 날씨이다. 여름 옷가지는 한국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무난하며, 겨울 옷가지는 한국의 늦가을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된다.
- 다만, 태양 광선이 강력하여 장시간 야외 외출을 할 경우에는 피부보호 크림을 바르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나. 전기 규격

- 240V, 50Hz의 전기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콘센트 구멍은 3개(Y타입)로 되어있어 한국 전기제품은 직접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주에 도착하면 슈퍼마켓 등지에서 별도의 어댑터를 구입해야 한다. 가격은 약 A\$10 불 정도이다. 대부분의 호텔의 경우 110볼트(11자형)콘센트도 설치되어 있다.
- 노트북을 휴대한 비즈니스 출장자는 필히 입국공항에서 콘센트를 구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 치안

-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흉기나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비교적 치안 상태가 좋은 편이나, 킹스크로스과 같은 유흥가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야간에는 시내에서도 그룹으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 호주가 마약에 관대한 나라는 아니지만, 약한 환각성 물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수단의 하나로, 킹스크로스 지역에 마약 주사실을 정부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약 중독자들이 지하로 몰리는 것이 방지하여 범죄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 시내 주요 거리나 대중 교통수단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철 역에는 곳곳에 Help Point라는 긴급 구호요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위급상황 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택시

-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다. 최근 택시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모든 택시에는 운전사의 좌석을 중심으로 안전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 밤에는 가급적 혼자서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요구된다.

마. 응급

- 응급 상황 시에는 전화 “000” 번을 누르면 안내원이 필요한 서비스로 바로 연결하여 준다. 000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나, 응급실 이용 등의 개인관련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현지의 의료비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일반 진찰 시 A\$30(US\$25) 정도를 지불하면 된다.
- 영어를 할 수 없다면, Korean Translator Please! 하여 한국어 상담원과 통화해야 한다.

바. 팁 관행

- 호주에서는 청구된 요금 이외에 별도의 팁을 줄 필요가 없다. 음식점에서는 주말 및 평일 밤 12 시 이후에는(24 시간 레스토랑일 경우) 서비스료로 10%를 음식값에 포함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식값의 10% 정도를 팁으로 줄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사. 식수

- 시드니의 수도물은 식수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병에 담겨 판매되는 생수도 구입할 수 있다.

아. 이발소

-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발소의 경우 요금은 A\$20 불 정도이며, 호주인이 운영하는 이발소는 A\$10-15 불로 오히려 저렴하다.

자. 구두닦이

- 시내거리에는 구두닦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시내의 주요 쇼핑센터 등 주로 공공 장소 내에 있다. 가격은 A\$5 불 가량이다. 호주의 도시들은 공기가 맑아 구두를 한 달에 한번 정도 닦고 있다.

차. 쇼핑

□ 물가

- 시드니의 물가는 최근 환율변동으로 인해 서울보다 70-100%정도 높은 편이다. 유류비는 서울의 60%선이지만,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료는 한국의 약 2 배 수준이다. 기타 공산품 가격 및 서비스료 수준은 한국의 2 배 수준으로 보면 무난하다.

□ 쇼핑센터

-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타운홀과 센터 포인트 타워를 중심으로 쇼핑타운이 있으며, 고가 상품과 유명 브랜드의 쇼핑은 시내 중심지인 Pitts Street 와 Rocks, 더블 베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페라 하우스와 록스 및 차이나 타운에서는 주말마다 마켓(주말 장)이 열리고 있어 관광지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특산품

- 호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는 양모 이불과 꿀, 로얄 젤리가 있으며, 와인, 캥거루 가죽 제품 등이 있다. 그밖에 원주민들이 상비약으로 즐겨 썼다는 이뮤(Emu; 호주 국조)오일, 원주민들이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점묘화 그림, 이뮤의 알 및 “디듀리듀”라는 대형 피리가 있으며, 오팔(Opal) 보석도 유명 특산품 중 하나이다.

카. 시내관광 및 인근지 여행

- 시드니와 멜버른 및 브리스베인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관광 여행사가 있다. 현지에 도착하면, 택시를 이용하여 한국식당으로 안내를 부탁하고, 한국식당에서는 현지 여행사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한국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또는 중소형 버스를 이용한 반나절 관광, 하루 관광 등 다양한 코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시드니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 소재한 호텔에는 해당지역 일일 관광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만 할 줄 알아도 외국인 여행사가 운영하는 시내관광 정도는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도 비교적 실비로 운영되고 있다.

타. 까다로운 호주영어 발음

- 호주 영어는 미국영어나 영국영어와 사뭇 다르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수가 세미나차 호주를 방문해서 호주 교수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되더라는 소문이 돌 정도이다.
- 출장 중에는 성명이나 호텔명 등을 스펠링으로 하나씩 받아 적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주인들은 A를 “아”로, R도 “아~”로 불러준다. A로 판단될 경우 “아 인 애플? (A in Apple)”, R로 판단될 경우 “알 인 로미오? (R in Romeo)처럼 다시 물어서 정확히 받아 적어야 실수가 없다.

12. 유용한 연락처

정부 및 공공기관

기관명(소재지)	대표자(직위)	전화번호	웹사이트
주호주한국대사관(캔버라)	대사 조창범	(61-2)6270 4100	www.mofat.go.kr/australia
시드니총영사관(시드니)	총영사 김창수	(61-2)9210 0200	www.korconsyd.org.au
시드니무역관(시드니)	관장 이 기	(61-2)9264 5199	www.kotra.or.kr/sydney
멜버른무역관(멜버른)	관장 박봉석	(61-3)9699 3833	www.kotra.or.kr/ktc/mel
한국관광공사(시드니)	지사장 최성우	(61-2)9252 4147	www.visitkorea.or.kr
대한광업진흥공사(시드니)	사무소장 박경규	(61-2)9959-5444	www.kores.or.kr
국제화재단(시드니)	사무소장 기준현	(61-2)9956-8777	www.klafirsydney.org

호주 시드니에 진출한 한국기업 연락처

업체명	대표자	업종	전화	팩스
금호타이어호주법인	이동재	타이어	(02) 9144 6011	(02) 9144 6099
기아자동차	천영기	자동차	(02) 9764 5311	(02) 9764 5255
대우일렉트로닉스	노인구	전자제품	(02) 8756 5502	(02) 8756 5508
대우인터내셔널	박창인	무역	(02) 9906 7355	(02) 9906 7588
대한광업진흥공사	박경규	광산	(02) 9959 5444	(02) 9957 4594
(주)대한항공시드니지점	정지영	여객, 화물	(02) 9262 2041	(02) 9262 4809
삼성물산호주법인	박준영	무역	(02) 9959 9715	(02) 9929 6208
삼성전자 호주법인	박제승	전자제품	(02) 9763 9748	(02) 9763 9814
(주)쌍용 호주법인	진 영	무역	(02) 9954 0911	(02) 9954 0919
아시아나 항공	손두상	여객, 화물	(02) 9767 4346	(02) 9767 4344
SK네트웍스 호주법인	이일환	무역	(02) 9265 1804	(02) 9265 1888
SK(주) 호주법인	장동원	무역	(02) 9261 0862	(02) 9261 1331
LG전자 호주법인	황운철	전자제품	(02) 9684 8000	(02) 9684 8095
(주)LG상사	조장희	무역	(02) 9957 4941	(02) 9957 3274
제일모직 호주법인	정수덕	섬유	(02) 9955 0479	(02) 9955 3652
포항제철 호주법인	우선문	철광	(02) 9241 2345	(02) 9241 2001
한국타이어 호주법인	엄철규	타이어	(02) 9929 0928	(02) 9929 7670
현대모비스	김연근	자동차부품	(02) 9763 3738	(02) 9763 3507
현대상선 시드니사무소	이현주	해운	(02) 9211 1795	(02) 9281 2116
현대자동차 호주법인	이봉구	자동차	(02) 9763 3333	(02) 9763 3688
현대종합상사	오수권	종합무역	(02) 9413 2314	(02) 9413 1985
한국외환은행 현지법인	오희천	금융	(02) 9251 3355	(02) 9251 3853

□ 교민단체

- 시드니한인회: 회장 백낙윤/ 전화 (61-2)9798 8800/ 홈페이지 www.ksociety.org

13. 관광명소

가. 호주 관광 개요

□ 시드니 개요

- 시드니 연혁: 1770.4.20 James Cook 선장 호주대륙 발견, 동년 4.29 Botany Bay (시드니항 남쪽 19 km, 현 시드니공항 부근) 상륙.

- 1779 년 Cook 선장과 동행했던 Banks 경이 영국 정부에 독립(1776) 된 미국 대신 호주 Botany Bay 에 죄수유형식민지 (Penalty Colony) 건설을 제안했고, 당시 내무장관인 Viscount Sydney 가 Botany Bay 에 죄수유배지(Convict Settlement)를 설치할 것을 재무성에 건의
- Arthur Phillip 선장이 Botany Bay 상륙 목표로 죄수운송함대를 인솔하여 왔으나, Botany Bay 가 늪지대로 개간에 부적합하고, 민물수자원이 빈약하여 죄수유배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 북쪽으로 항진, 1788.1.26 영국인 죄수 736 명(남 548, 여 188)이 Port Jackson(Sydney Harbour 의 핵심 부분) 상륙
- Phillip 경이 동 상륙지점(Bay)을 상기 Viscount Sydney 내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Sydney Cove 로 명명. 1790 년 Sydney Cove 를 Sydney 로 명명

나. 시드니 및 근교 주요 명소

- 시드니를 중심으로 한나절 또는 당일관광이 가능한 곳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

- 1950년대 초 한 시민 모임에서 시드니에 무대예술센터를 짓도록 주정부에 종용, 당시 조셉 카힐 주 수상은 그들의 의견에 동감, 공사를 위한 기금모금을 시민에 호소
- 당초 예상건축비는 7백만 달러였으나, 건축과정에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됨. 이에 경비 조달을 위하여 오페라 하우스복권 발행, 1975년 7월에 공사비를 전액 상환
- 1957.1 발표된 설계공모에서 덴마크의 건축가 John Utzon이 당선되어 1959.3~1973. 9월 완공됨. 오페라 하우스는 매년 약 3,000여 회의 행사와 200만 명 가량의 관객 유치하고 있음.
- 구조는 2,194개의 조립식 콘크리트 조각과 350km의 강철선 및 4,253개의 조립식 톨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105만 개의 타일을 붙였음. 지붕의 무게는 27,230톤이고, 전체 무게는 161,000톤에 이룸. 이 건물은 바다 밑 25m까지 잠겨 있는 580개의 콘크리트 받침대가 지탱하고 있음.
- 대지면적은 2.2헥타이고 건물 연면적은 1.8헥타임. 콘서트 홀(2,690석), 오페라 극장(1,547석), 드라마 극장(544석), 연극관(398석), 리셉션 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하버 브리지(Harbour Bridge)

- 1932. 3.19 개통되었고, 시드니 거주자들은 이를 “큰 옷걸이” 라고 부름.
- 8차선 차도, 2차선 철도, 자전거 도로 및 도보용 도로로 구성되어 있고, 길이 1,149m, 높이는 해발 134m, 하루 평균 20만대의 차량이 통과함. 양안 교각간 길이 503m, Arch 최고 높이 수면에서 134m이고, 수면 ↔교량 사이 평균 높이는 60m임. 통행료 연간 A\$5천만, Arch 부문 수리에산 연간 A\$5백만임.

□ 시드니 항구

- 위치는 시드니 시 남북간을 동서로 관통, 남위 33° 5, 동경 151° 12임
- 항구는 Middle Harbour (입구에서 서북쪽), Port Jackson (입구에서 하버 브리지 구간), Parramatta River (하버 브리지 서편 내륙 방향), Lane Cove River (하버 브리지 서북쪽), Iron Cove (하버 브리지 서남쪽)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Port Jackson 이 중심수역(main harbour)임.
- 호주이민 및 식민역사가 1778 년 동 항만을 중심으로 시작됨. 맑은 수질과 굴곡으로 경관 수려, 외해와 완벽히 차단, 연중 폭풍우, 해일 피해가 전무하며, 조수간만의 차도 미미 (107 cm), 지형상 수심이 깊고, 해저가 사암(sand stone)으로 되어 있어, 항상 일정한 수심과 맑은 수질 보존이 가능(준설 불필요)함.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는 오수 여과시설을 거쳐 시드니 항에서 1.5Km 거리에 떨어진 외해로 방출되고 있음.

□ 노쓰헤드/싸우스헤드 (North Head/South Head)

- 남태평양에서 배를 타고 시드니 항구로 진입하는 항구 입구 중 북쪽을 North Head 라고 칭하고, 남단부를 South Head 라 부른다.
- North Head 와 South Head 에서는 시드니 도시전경을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절벽으로 구성된 해안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 일출 전에 North Head 를 방문하면, 저물어가는 달이 시드니 도심의 스카이라인 위에 걸쳐있는 광경을 볼 수 있고, 조금 뒤에는 태평양에서 솟아오르는 일출장면을 볼 수 있다.

□ 왕립 식물원(Royal Botanic Garden)

- 시내 중심부에 위치, 평온하고 녹색 분위기가 가득한 곳으로서 Harbour Bridge, Opera House 와 시내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음. 1816 년에 설립되었는데, 면적은 약 54 헥타이고, 시민, 관광객의 산책공원으로 애용되고 있음.

□ 블루 마운틴 (Blue Moutain)

- 시드니 서쪽 약 100 km 거리에 소재(차량 1 시간 40 분 거리)하는 호주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대협곡으로서, 하루일정의 시간을 낼 수 있을 경우 권장되는 관광지 임.
- 급변하는 일기에 따른 풍경이 장관으로 세계 유명 화가들에게 좋은 소재로 제공되고 있는데, 주요 관광 포인트는 세자매봉(Three Sister), 에코 포인트(Echo Point), 오솔길과 대협곡 및 폭포, 수많은 야생조류 및 갖가지 식물군, 케이블과 광열차 등이 있음.
- 이곳에서 차로 40 분 정도를 더 들어가면, 제놀란 동굴을 방문할 수 있는데 동굴 탐사를 좋아하는 방문객들에게는 환영받는 장소임.

□ 시드니 수족관 (Sydney Aquarium)

- 시드니에 소재한 세계적인 수족관으로서 호주 해양생태계 총 집결지 임. 총 5,000 여 마리의 해양동물과 2 개의 대형수족관 및 50 개의 중소형 수족탱크를 보유하고 있음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교역과 관련된 법규는 그 종류와 분량이 매우 방대하나 실제 비즈니스에 있어 필요한 정보는 현재 호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au)에 모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 수출입 비즈니스에 필요한 전반적 정보

- http://www.customs.gov.au/webdata/resources/files/guideimport_export1.pdf

- 원산지 규정관련 정보

- <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4752#4>

- 관세율 및 GST관련 정보

- <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4752#5>

- 반덤핑 규제 관련 정보

- <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4227>

16.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허가

동식물, 의약품 등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의 수입은 사전수입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산품의 경우에도 자동차는 사전 수입허가를 득해야 한다.

동식물 등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호주에 수입되기 전(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에 반드시 호주 세관에서 제시하는 수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수입상은 수입대상 물품의 카타로그 등 세부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관은 관련 부처와의 상의를 거친 후 수입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검역관련 관련부처(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에서는 수입허가 신청 품목에 대한 Risk Analysis Management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특정 품목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다.

나. 원산지 규정

수입된 모든 품목들에는 원산지 규정(R00)이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은 관세, 수입할당, 반덤핑, 상계관세, 라벨링 문제 등의 이유로 필요하게 되는데, 호주는 1995년에 체결된 WTO의 원산지 규정을 따르고 있다.

WTO 회원국에서 생산된 물품들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빠른 처리와 여러 혜택이 고려되며, 특혜관세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원산지를 규정하는 원칙은 수입된 품목이 어느 특정한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 되었는지, 아니면 한 나라 이상에서의 생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 지어지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를 적용함으로써 판단되어 지기도 한다.

- 관세 등급/분류에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
- 자세한 제조 과정
- 첨부된 다른 부가가치의 비율

그 밖의 원산지 규정에 따른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할 수 있다.

- Director Origin Australian Customs Service
- 5 Constitution Ave Canberra ACT 2601 Australia
- Fax : 02-6275-6377
- Home Page: <http://www.customs.gov.au>
 -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좌측 메뉴판에서 'import/export' 를 클릭 후, 'rules of origin' 을 선택하면 됨

다. 관세법 위반시 제재내용

관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케이스 별로 분류/적용되어 처리된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 업자나 업체에서 전체적인 벌금이나, 부분적인 벌금을 물게 된다. 수입된 품목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벌금이 부과되지만,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서류상의 오류를 인정하여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벌금은 서류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하며 최소 벌금액은 A\$500이다.

- 호주 세관 정보센터
 - New South Wales 3rd Floor, Tower Sydney Central Building, 477 Pitt St GPO BOX 8 Sydney NSW 2000
 - Tel) 1300-363-260
 - Fax) 02-9213-4043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Customs House
 - 5 Constitution Ave Canberra City ACT 2601
 - Tel) 02-6275-5041
 - Fax) 02-6275-6005

라. 검역제도

호주는 해외로부터 질병 및 병충해 도입을 막기 위하여 엄격한 검역규정을 갖추고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검역은 Quarantine Act 1908에 의거하여 AQIS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가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는 AQIS의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된 경우 실제 검역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샘플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빠른 검역통과를 위해서는 세부 사항의 정확한 라벨링과 편리한 포장상태가 요구된다.

모든 품목들에 대한 일반적인AQIS의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다.

- 물품 반입시 호주 검역청에 제반 선적서류 제시
- 검역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 작성
- 검역관의 검역실시(정밀검사를 요구 할 때에는 검역관이 지정하는 특정 검역장소로 운반)
-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인도
- 검역의 결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의 성질에 따라 소독/폐기/기타 처리 됨
- 검역이 완료된 경우 검역청은 확인서류 발급
- 검역완료 이후 수하인이 7일 이내에 물품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검역청은 해당 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음

검역기준에 따른 식품류의 주요 품목별 수입허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 Canned Meat Product(캔 처리된 고기 식품)
 - 생선류가 아닌 육류를 5%이상 함유한 식품류는 수입 시 사전허가 필요
- AQIS의 승인을 받은 가공공장에서 제조된 상품만 수입가능
- 육류는 열처리 되어야 하며, 공인된 밀폐용기에 담아야 함
- 도살된 가축은 도살 전후에 공인된 수의 공무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함
- 매 선적분마다 공인된 수의사가 발행한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 소고기 성분의 맛이 함유된 라면 등 면류의 제품은 수입시 사전허가 필요
- Poultry(가금류)
 - 조리된 통조림 제품(cooked canned poultry)은 특별한 가공조건을 충족해야 함
 - Cooked uncanned poultry의 제품은 뉴질랜드에서만 수입 가능
 - Dairy Products(유가공 식품)
 - 모든 유가공 및 유함유제품을 10%이상 함유한 식품류는 AQIS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수출국을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음
 - Category1: Foot and Mouth Disease(FMD)가 없는 국가
 - Category2: FMD의 예방접종을 하고, 지난 24개월 동안 FMD의 발병이 없는 국가
 - Category3: 기타국가
- Fish and Fish Products (어류 및 어류 식품)
 - 연어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산물에 별다른 큰 문제 없음
- Eggs and Egg Product(달걀 및 달걀 제품)
 - 계란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으며, 계란 함유량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AQIS의 허가 하에 수입이 가능
- Fresh Fruits and Vegetable(신선한 과일 및 채소): 수입 시 사전허가 필요
- Frozen Fruit and Vegetable(냉동 과일 및 채소): 18' C 상태로 운송된 제품만 수입 가능

마. 수입금지 지역

AQIS는 특별히 수입금지 지역을 정하여 놓지는 않고 있으나, 국가/지역별로 한해 호주의

사람/ 동물/ 식물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을 정하여 놓고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 품목을 재배/ 생산하는데 대한 양 국가간의 특정협약이 이루어 졌을 때에는 수입이 가능하다. 그의 한 예로, 필리핀의 망고는 수입금지 품목 중 하나였으나, 필리핀이 호주의 pest risk협정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수입되고 있다.

바. 수입금지 품목

식물성 생산품 중 모든 과일과 야채는 수입 시 허가가 필요하며 AQIS의 Risk Analysis Management 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품목별로 아래와 같은 규정을 갖고 있다.

- 사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산에 대해 수입금지
- 배: 전 국가(단, 한국산 배는 호주 phytosanitary requirements 충족 시 수입가능)
- 오렌지: 미국 및 오렌지를 제외한 전 국가
- 단감: 미국(캘리포니아산에 한함)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키위: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매실: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전 국가
- 양잠: 전 국가산에 대해 수입금지
- 땅콩: 경작용(종자용)은 수입금지
- 호프: 종자는 수입금지 (가공생산을 위해서만 수입허용)
- 초목류(Plant의 경우)
 - Narcissus Fly, Genud Musa, Xanthomonas Campestris, Fire Blight (고사병), Pear Blight (배고사병), Cabbage Butterfly (배추흰나비), Pieris Rapae, Pseudomonas Syringae, Corynebacterium Flaccumfaciencens, Colletotrichum Lindemuthianum, Mosaic (모자이크병), Narcissus Fly, Downy Mildew (노균병), Wood Wasps(목재 말벌)등의 질병 및 해충의 위험이 있는 식물은 수입금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규제가 따른다.

- 계란의 수입은 금지(계란 함량이 10%이상인 식품류의 경우 AQIS의 허가 여부에 따라 수입이 가능)
- Foot and Mouth Disease(FMD)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유가공 및 유가공 제품은 수입불가
-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는 완전 수입금지
- 돼지 고기류도 사전허가 필요

그 밖에 내용물이 사실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이 불가하다.

사. 검역 관련기관

그 밖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호주 검역청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수입 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은 검역청의 ICON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케이스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웹 사이트로부터도 접근이 가능한데, 호주 검역청의 웹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 Australian Quarantine & Inspection Service
 - <http://www.affa.gov.au/outputs/quarantine.html>
 - Tel) 02-6272-5999
 - Fax) 02-6272-5373

아. 수입쿼터

수입쿼터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17. 관세제도

- 각 품목의 관세율은 호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4273> / <http://www.apectatiff.org>.
- 호-미 FTA, 호-태 FTA 의 체결로 미국 및 태국에서 수입된 품목은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0%이나 유예 품목이 있으므로 위 관세율 표 상의 schedule 5와 6을 참조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모든 품목에는 10%의 부가가치세(GST)가 부과된다.

18. 주요인증제도

호주의 공산품 품질인증제도는 무척 까다롭게 운용되고 있다. 유럽의 EC 나 미국의 UL 등 선진국 인증을 갖고 있어도 호주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그런 사례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품목에서는 까다로운 자국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인증제도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가. 품질인증제도 개요

- QAS 마크 제도(Quality Assurance Services): 호주는 1966 년부터 자국 내 생산제품과 수입제품이 호주 내 관련기관이 정한 기술표준과 호주 표준협회(Standard Australia) 가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 이 제도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엄격한 검사과정을 통하여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본 취지이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수입규제 요인이 되기도 한다.

□ RCM 마크 제도 (Regulatory Compliance Mark)

- QAS 와 같은 취지이나, 특히 전기제품에 한정하여 1998 년에 도입되었으며 형식적으로는 자율성을 띠고 있으나 전기제품 생산/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제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나. 적용 대상 품목

□ QAS 마크

- 품질 보증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품목은 정부 관련기관이 정하고 있으며, 품목 별로 별도 규정이 있음.

□ RCM 제도: 모든 전기제품

□ 주요내용

- QAS(품질마크제도): 제품 품질 및 생산공정이 호주의 기술표준과 Standard Australia 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사하는 제도임.
-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발성을 띤 제도로서 특정품목의 유관기관에서 별도의 표준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별도규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 미 이행 시 수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강제성을 띤다.
 - 예)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제정한 자동차 안전벨트의 표준안전기준, Urban Australian Water Authority 가 정한 하수도/배관 관련 품목 안전기준 등
- 도입(시행)시: 1966 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품질을 보증하는 Standard Mark 로 사용되고 있음.
- 적용대상품목: 호주 QAS 의 품질보증마크 획득을 희망하는 모든 품목

□ 공통검사항목: QAS 는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제품을 검사함.

-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안전성, 환경, 위생, 성능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되었는지 여부
- 제조공정상 품질관리(Quality of Manufacturing):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직접 제조과정 확인
- 사후관리(Ongoing Monitoring): 품질보증마크 획득 이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QAS 마크 부착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랜덤 샘플링 및 공장방문 검사 등)

□ 주관기관: 호주표준협회 (Standards Australia)

- 호주의 표준규격을 제정하는 주관기관은 Standards Australia(민간기관)이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품의 표준규격 및 규율 등을 제정한다. (예, 통신기기 관련 제품규정은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 가 제정)
- 품질보증 마크의 등록/검사 및 승인 등 실무업무는 Standards Australia 의 계열사인 SAI-Global 사가 대행하고 있는데, 동 사는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 Standards Australia 연락처

- 주소: 286 Sussex St. Sydney NSW 2000 (GPO BOX 5420, Sydney, NSW 2001, Australia)
- 전화: (국내) 1800 623 503, (해외에서 걸 때) (61-2) 8206 6060
- 팩스: (61-2) 9746 4765
- 웹사이트: <http://www.standards.org.au>
- 이메일: researchsydney@standards.org.au
- 설립년도: 1922 년
- SAI-Global 사의 연락처도 위와 동일 함.

다. 건강식품 및 의약품 관련 인증

-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이 의약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수입되기 위해서는 호주 식약청(TGA)의 인증이 필요하나 실제 한국기업이 이 인증을 획득한 사례는 거의 없다.
- 제품심사와 공정심사로 이루어지는 동 인증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어 한국 제품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 지적재산권

호주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무척 엄격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의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너무 심한 규제를 다소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참고로 한국기업이 호주 내에서 지재권을 침해 받은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특허권(Patent)

특허란 새롭게 개발/개선된 상품이나 특정방법으로 창의력과 유용함이 내재되어 있는 제품에 주어지는 권리이다. 이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데, 장기적인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이디어나 신기술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허권의 신청자는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인들과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 예술작품이나 수리학적 모델, 계획(Scheme)을 포함한 정신적 사고에 의한 것은 특허로 인정될 수 없다. 호주의 특허관련 업무는 The Patent Office of IP Australia 에서 맡고 있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20 년이다. 그러나 5 년째 되는 해부터 매년 유지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나. 상표권(trade mark)

상표권은 단어나 기호, 그림, 음악, 향기, 로고 등을 포함하거나 이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 집합체로서 다른 상품과 구분되어 질 수 있는 그 상품만의 특성을 가진 제품에 주어지는 것이다.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은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며, 호주 내에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지역이름이나 특정 성(Surname), 혹은 일반인들에게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상표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 호주에서 상표권의 등록은 의무는

아니나, 공정거래 위원회에(Department of Fair trading and Practice) 의하여 등록이 권고되고 있다.

최초 상표권 등록의 효력은 10 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종료 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10 년씩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상표권 등록업무는 Trade Mark office of IP Australia 가 관할한다.

다. 디자인

디자인이란 완제품의 패턴이나 모양,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디자인의 등록은 제품의 패턴이나 모양이 상업적인 용도이며, 이에 따른 보호를 원할 때 등록이 가능하며 예술 작품의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다.

등록된 디자인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2 개월간 보호되며 총 16 년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등록 및 관리업무는 Design Office of IP Australia 가 관장한다.

라. 저작권

저작권은 문학, 미술, 음악, 필름, 방송, 멀티미디어와 컴퓨터 등에 적용되는데, 이는 원본을 무료로 무단 복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 받게 하는 법적 조치이다. 원본 자료는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에 의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Copyright Act 1968 에 의하여 저작권의 라이선스와 권리를 인정 받게 되는데, 원본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나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Fair dealing Provision 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저작권의 명확한 표기 (copyright notice) 가 의무는 아니나 필름이나 방송, 멀티미디어 관련 품목에는 저작권 표기가 권고되고 있다.

작품의 성격 및 출판여부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제한이 있다. 예술 및 문학작품은 대개 작가의 사망 혹은 최초 출판된 해로부터 50 년간 지속된다. 영화 및 음향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 및 방송된 때로부터 50 년간 지속된다.

2003 년 초부터 음반업체들이 대학생들의 CD 무단복제 및 배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은 이들 학생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참고로, 호주관세청의 웹사이트에서도 지적재산권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지적재산권 문제가 수출입상품의 통관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http://www.customs.gov.au> 를 방문하여, 좌측 메뉴 바에서 import/export 를 선택하면 intellectual property 를 찾을 수 있다.)

20. 소비자보호제도

가. 소비자 보호

- 호주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Trade Practice Act” 내의 Consumer Protection 및 Product Liability 규정 등을 근간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 소비자 보호 단체로는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및 Australian Consumer's Association (ACA)가 있다. ACA 는 월간지 “CHOICE” 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동향과 각종 제품테스트 및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은 물론 저렴한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 호주의 소비자들은 소비자협회의 품질평가 테스트 결과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어, 동 품질테스트에서 호평 받은 상품은 매출 증가로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참고로, 소비자 협회의 정기 간행물인 Choice 잡지에서는 2002 년과 2003 년 현지유통 타이어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산 금호타이어 제품이 품질수준 1 위, 가격조건 1 위 라는 평가를 내린바 있어 금호타이어는 가격인상 및 매출증가를 실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4 년에는 한국산 냉장고를 가장 좋은 냉장고로 선정 발표한 바 있다.
- Australian Consumer's Association 의 웹사이트: <http://www.choice.com.au/>

나. 공산품 품질인증제도

- 호주는 1966 년부터 자국 내 생산제품과 수입제품이 호주 내 관련기관이 정한 기술 표준과 호주표준협회(Standard Australia)가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 Standard Australia 의 웹사이트: <http://www.standards.org.au/>
- 이 제도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엄격한 검사과정을 통하여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본취지이며, 결과적으로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의 보호도 겸하고 있다.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 Departments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and Resources
-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 Australian Trade Commission(AUSTRADE, 수출진흥기구)
- Export Finance and Insurance Corporation(EFIC, 수출보험공사)
- Australian Customs(호주 관세청)
-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 국립검역소)

22. 시장특성

가. 시장 규모

호주는 768 만 KM2 의 광대한 국토에 인구는 2 천만 명에 불과한 적은 규모의 시장이다. 따라서, 다품종 소량소액주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민 증가율(0.3%)을 포함해도 연간 인구 증가율이 1.2%에 불과하다.

호주의 총 인구 중 약 60%가 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베인, 아델라이드, 퍼스 등 거점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상권도 이들 5 개 도시에 분산, 광역화되어 있다.

주 별 인구분포와 GDP 현황을 볼 때, 시드니와 멜버른이 소재하고 있는 남부의 New South Wales 와 Victoria 주가 호주 전체인구의 60%, GDP 60%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의

Queensland 주와 South Australia 주를 합치면 인구와 GDP 에 있어서 각각 85%에 육박할 정도로 동남부 해안가에 인구와 경제력이 밀집 되어 있는 셈이다.

더욱이 수입물품의 75%가 시드니와 멜버른을 통과함에 따라 호주 동남부지역은 호주시장 진출의 관문이다.

2005 년 3 월 기준 호주의 공산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통계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단지, 1999 년도 자료를 보면, A\$ 1,390 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5 년도 전체 공산품 시장규모는 A\$ 1,500 억(약 US\$1,200 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산품은 수입제품이 국내 총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004 년도 총 수입은 US\$ 1,035 억으로 크게 늘었으며, 기계, 차량, 전기제품이 40% 이상을 점유 했다.

나. 시장 특성

호주에서는 주요 도시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유통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속적인 수입시장 개방과 최근 호주달러화의 강세로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세계경제의 중심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국민경제의 주요 부분을 1 차 상품의 수출 및 공산품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무역 의존도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예를 들어 호주동부의 시드니에서 서부의 퍼스까지의 거리는 3,400 Km로서 이는 서울에서 홍콩까지의 거리보다 먼 거리이다. 시드니에서 퀸스랜드 주 북부에 있는 슈퍼 체인점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2,000Km 이상을 운송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견고한 외 포장과 적절한 내 포장 등 이중포장이 중요한 요구 조건이 되고 있으며 호주에 제품에 판매하려고 하는 해외 공급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US\$3 만 달러 전후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무척 검소하여 내구재가 아닌 소비재 경우에는 저가의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다.

유통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절대 소비량이 적음으로 인해 수입품의 소매가격은 턱없이 높게 형성되는데, 일반적인 제품은 수입원가의 400% 선에서 소매가격이 형성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다. 유통 구조

호주의 유통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특히 최종 소매업자들도 직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량주문이 빈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 유통구조는 수입상 -> Wholesaler / Distributor -> 소매상의 단순한 경로를 가지고 있으나, 대형 유통체인은 Buying Agent 를 통한 구매방식도 취하고 있다.

유통마진율은 단계별로 상이하지만 높은 인건비, 운송비, 임대료 등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가격의 3-4 배 이상으로 소매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금결제방식에 있어서 대형수입상은 DA/DP 조건, 소형 수입상은 L/C 개설보다 T/T 송금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연중 구매시즌은 업종 및 품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0-11 월 및 4-5 월이 가장 활발하다.

유통단계별 마진율은 시장에서의 상품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경쟁이 충분한 경우의 마진율은 아래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경쟁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300% 이상의 마진을 붙이기도 한다.

유통단계	마진율
Buying Agent	FOB 가격의 5-10%
수입업자/도매업자	인도가격(Landed Duty Paid Price)의 35-40%
상설할인판매점	판매가격의 35- 40%
일반백화점	판매가격의 40- 75%
슈퍼체인점	판매가격의 15- 35%
일반소매점	판매가격의 50-100%

바. 백화점, 소매점

현지 소매산업은 호주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98/99 회계 년도 소매산업 매출액은 A\$142,781 백만으로 같은 해 호주 총 GDP A\$ 556,978 백만의 25.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고용측면에서도 소매산업은 매우 중요한데 98/99 년 호주 총 고용인구 868 만 명중 15.0%인 130 만 명이 소매업에 종사하였다.

호주의 소매시장에서는 약 84,000 여 개의 크고 작은 소매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순 영업이익률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호주에서는 상품 가격이 소규모 소매점 보다 대형 백화점이나 슈퍼 체인점이 싸다.

이는 이익이 적더라도 판매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얻고자 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쟁적인 가격에서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한 분야에 특화 하거나(예를 들면 "JUST JEANS" 의류 체인점)24 시간 편의점처럼 영업 시간을 대형 유통업체들 보다 더 늘리고 있다.

인건비가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에 달하는 호주 소매시장에서는 고객이 직접 물건을 골라 계산대에서 돈을 지불하는 SERVICE 방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특정 소비층을 겨냥해서 특화하는 경영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지 대형 유통체인 중 하나인 DAVID JONES 는 부유층을 겨냥하여 고급화 전략을 추진 하고 있고, 호주 최대 유통업체인 COLES MYER 그룹의 계열 유통체인인 K-MART 와 TARGET 는 일반 서민층을 겨냥하여 모든 생필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대형 하이퍼 마켓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호주 소매업계는 영업규모에 따라 대형 백화점 및 슈퍼체인점, 중형 백화점 및 전문 체인점 그리고 소규모 소매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대형 백화점 및 슈퍼체인점

현지 최대 유통업체인 COLES MYER 그룹은 COLES SUPERMARKET LTD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MYERS STORES(백화점), K-MART(할인 백화점), TARGET AUSTRALIA(할인 백화점), GRACE BROS

(백화점), KATIES (의류전문 체인점), DYNAMITE(의류전문 체인점), EZYWALKIN(신발전문 체인점), FAYS (의류전문 체인점), BOANS(백화점), RED ROOSTER (패스트푸드체인점) 등의 계열 유통체인점들을 가지고 있다.

COLES MYER 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유통업체인 WOOLWORTHS 도 Big W(할인백화점), WOOLWORTHS(슈퍼마켓 체인), ROCKMANS(전기, 전자용품 전문 판매체인점), DICK SMITH(전기, 전자용품 전문 판매체인점), CHANDLERS(가정용품 전문 판매체인)등의 계열 유통 체인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수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점은 상기의 소매업체들이 그룹에 속해 있지만 제각기 독립된 구매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각 계열사의 구매 책임자를 별도로 접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중형 백화점 및 전문 체인점

중형 백화점으로 DAVID JONES, C.P.FITZGERALDS, AHERNS, JOHN MARTIN RETAILERS, McDONNELL & EAST 등이 있는데, 이러한 중형 백화점들은 주로 의류, 가정용품, 가구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가구, 하드웨어, 신발, 의류 등 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40 여 개의 전문 유통체인점들이 있다. 이들은 COLES MYER 나 WOOLWORTHS 와 같은 대형유통 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라 특정 품목만을 취급하는 개별 전문 유통업체들이다.

3) 소규모 소매점

호주에 거의 모든 동네에는 과일, 채소, 담배 등 일반 잡화를 파는 소규모 잡화점들이 한 두 개씩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구멍가게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매점에서의 상품 가격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보다 비싼 편이다. 호주 일반인들은 대개 주말을 이용,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체인에서 일주일 분을 한꺼번에 쇼핑하며 이러한 소규모 소매점은 쇼핑센터가 문을 닫은 늦은 시간이나 급히 물건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소매점들이 해외로부터 직접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수입업자나 도매상들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

라. 호주 소매업체들의 일반적 영업방식

대 호주 소비재 신규수출 희망업체는 현지 수입상 및 도매상뿐만 아니라 호주 대형 유통 업체들을 접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지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존 거래선을 매우 중시하는 편이며 여간 해서 거래선을 바꾸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외 공급업자들이 이러한 호주 대형 유통업체들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영업방식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유통마진은 품목 및 업종에 따라 크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에 민감한 식료품 분야는 13-15% 정도이고, 할인백화점에서 의류 및 일반잡화의 유통마진은 30-40% 정도이나, 고급 백화점에서는 100% 이상이다. 의류 전문 소매체인점들은 30-50% 정도의 유통마진을 보고 있다. 판매량이 적은 소형 소매점들은 최소한 80% 이상의 유통 마진을 보고 있으나, 야채와 과일은 40% 이하 수준이다. 대형 도매업자들의 경우 대량 주문에는 15%, 소량주문에는 30-40% 정도의 유통마진을 보고 있다.

1) 유통마진 결정시 고려요인

☐ 인건비

호주에서 인건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총비용 중 30-50%를 차지하고 있다.

☐ 임대료

임대료 역시 매우 높은 편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 기타경비

전기 및 수도료, 장비임차료, 보험료 등 기타 제 경비

☐ 바겐세일

대부분의 대형 유통체인점들은 시즌이 끝날 무렵이나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 연휴 때 정례적으로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때를 기다렸다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호주 유통업체들은 마진율을 결정할 때 이러한 정기 바겐세일을 고려하고 있다.

☐ 광고·선전비

대형 및 중형 유통 체인점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업체 카타로그나 브러슈어를 제작, 소비자들에게 직접 혹은 신문에 끼어 수시로 배포하고 있으며 신문, 잡지,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자주 광고활동을 벌이고 있어 선전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컬러 브로슈어를 제작, 한 주(State)에 배포할 경우 A\$ 10 만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며 골드타임에 30 초짜리 TV 광고를 하려면 회당 A\$ 4,000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광고, 선전비의 지출이 과도하게 들기 때문에 호주 유통업체들은 물품을 구입해 주는 조건으로 공급업체들에게 광고선전비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2) 구매 결정 방식

호주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공급업체에게는 호주 대형 유통 체인점 들이 어떻게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자국산 선호

80 년대 말부터 시작된 불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내적으로 전개한 국산품 애용 운동의 영향도 없지 않으나, 호주 대형 유통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수입보다는 우선적으로 국내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

- 유행이나 소비자 기호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아니라 재고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언어장벽이 없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없음.

- 광고 선전비의 일부를 부담시키기에는 국내 공급업체들이 해외 공급업체들 보다 용이하며 L/C 개설, 통관 등 번거로운 절차가 없음.

일반적으로 호주 대형 유통업체들은 운송료, 보험료, 관세 등 수입에 따르는 제 비용을 포함 한 가격이 국내 제품 가격보다 최소한 10-15% 정도는 저렴해야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가 없어 수입을 할 경우,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수입상이나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 있는 자신의 BUYING AGENT 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고 있으나 주문량이 소량이거나 마무리 공정이 수입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상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 수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소매업체들은 대부분 수입상이나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있으나 최근 직접 수입하는 소규모 소매상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구매절차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호주의 대형 유통체인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매절차를 거치고 있다. 즉, 자사 또는 그룹 상품위원회 (MERCHANDISE COMMITTEE) 에서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각 구매부서별 연간 예산을 책정한다. 그러면 각 구매부서들은 상품위원회에 의해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 납품업자를 선정하고 물품을 조달한다. 하지만 각 구매부서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각 구매 부서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물품을 특정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부(QUALITY CONTROL DEPARTMENT)의 엄격한 품질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품질관리부는 각 구매부서에서 구매기로 결정한 제품의 품질이 회사기준에 부합되는 지를 실험하고 포장, 라벨링 및 안전도 등에 관한 정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정밀 심사한다. 만일 품질관리부가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철저한 소비자 보호제도 및 관행이 정립되어 있는 호주에서는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도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어 제품을 바꾸겠다고 하면 물건을 바꿔 주어야만 한다.

□ 해외 BUYING AGENT 의 역할과 구매 책임자들의 해외 출장

거의 모든 대형 유통업체 들은 주요 공급 국에 자체 BUYING AGENT 를 확보하고 있으며 수입상이나 디스트리뷰터를 통하지 않고 이들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직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BUYING AGENT 는 새로운 공급업체 물색에서부터 샘플 수집 및 송부, 가격협상, 품질검사, 선박 수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 유통업체들에게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공급업체들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BUYING AGENT 를 접촉해야만 할 것이다. 이외에 호주 대형 유통업체의 구매 책임자들은 구매 시즌에 앞서 시장조사, 새로운 공급선 발굴, 접수된 유망 오퍼의 실제적인 평가 등을 위해 정례적으로 해외 출장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구매 결정은 구매 책임자들이 귀국하여 다시 면밀한 검토 이후에나 이루어진다.

마. 소매 업체들의 상 관행

호주 시장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현지 소매상들의 상 관행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절이 북반구와 정반대이다. 대부분의 소매 업체들은 물품 주문 시 자신의 판매 계획을 감안하여 물품인도 날짜를 지정하고 있다. 만일 해외공급업체가 이들의 지정한 인도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그것으로 거래가 중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공급업체들은 인도 날짜에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1) 소량수입 주문

시장의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 미국이나 EU 와 비교할 때 1 회 주문량 자체가 소량일 경우가 많다. 심지어 TARGET, K-MART 및 BIG W, WOOLWORTHS 와 같은 호주 대형 유통 체인점들의 주문량도 해외 공급업자들이 납품할 수 있는 최소 주문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남성용 와이셔츠에 대한 호주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문량은 3-4 가지 색상에 300 다즌 정도이며 DAVID JONES 와 같은 중형 백화점은 2-3 가지 색상에 150 다즌 정도이다.

그러나 호주는 1 인당 국민소득이 2 만 불에 달하는 OECD 국가 중 하나로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대중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어 주문회수가 비교적 많고 일단 거래 및 신뢰가 형성 되면 주문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호주에 물품을 출하고자 하는 해외 공급 업체들은 호주의 이러한 시장특성을 이해하고 소량주문이라도 적극 수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 미국 달러화로 FOB 기준의 견적 요구

관세는 FOB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유통업체들은 FOB 가격기준의 미국 달러화로 견적을 내줄 것을 요구한다.

3) 표준 팔레트 크기의 견고한 포장 요구

호주에서 쓰이는 팔레트는 우리나라를 위시한 대부분의 국가의 팔레트와 규격이 다를 뿐 아니라 호주 유통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출 포장은 여 타국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호주 표준 팔레트(PALLET)인 1,165MM X 1,165MM 크기의 카톤 포장에 외 포장된 상태에서 카톤 당 총 중량이 20KG 을 넘지 않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 타국과 다른 점은 다중포장(MULTIPLE PACKS)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광대한 국토에 거점시장이 분산되어 있는 호주에서는 시드니나 멜버른 등 주요도시에 있는 중앙 창고에 수입물품이 도착되면 겹포장은 뜯어내고 내포장물만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체인점들로 운송하는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주 유통업체들은 장거리 운송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내 포장을 요구 하고 있으며, 또한 각 내 포장에도 참조 번호, 상품 명세, 수량들이 인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호주 표준 라벨링 규정 준수

호주연방 및 각 주정부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해외 공급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이러한 규정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수입품들에는 원산지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함
- 모든 제품에는 성분 표시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예를 들면 신발은 SOLE 과 UPPERS 가 가죽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야만 하며, 식료품은 모든 성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모든 중량 및 크기는 미터법으로 표시되어야 함.
- 몇몇 제품들은 특정 규격에서만 판매가 가능함. (예: 중량단위 75G, 100G, 125G, 150G 등)
- 모든 섬유제품에는 취급 시 주의사항, 원산지 등이 영어로 상세히 설명된 TAG 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한국산 의류 중 계절 이월상품 재고 처분 시 영문 라벨링이 없는 제품이 수입 되곤 하는데, 통관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
- 모든 식료품에는 제조일과 유통기한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잠옷의 경우 FLAMMABILITY 에 관한 경고문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5) 표준 규격 및 소비자 보호

호주 표준협회는 매우 광범위한 표준 규격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지 않은 상품은 원칙적으로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호주 소매업체는 물론 해외 공급 업체들도 판매 하고자 하는 물품이 호주 표준규격에 부합되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공정거래법(TRADE PRACTICES ACT)을 통해 철저히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이 법은 기만적인 상 관행 및 불량품 판매금지, 애프터 서비스 및 보증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기타 유의 사항

호주의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다품종 소량소액주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다가 제품의 규격이 한국과는 다르고 계절마저 상이하다 보니, 대부분의 우리기업들은 호주 시장을 재고처리 시장으로 인식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호주가 미국이나 EU 와 같은 선진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나, 국민 소비성향이 매우 높은 편이고 일단 거래가 시작되어 파트너와의 신뢰가 쌓이면 좀처럼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량, 소액 주문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후발개도국과의 가격 경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품질 고급화 노력이 요구 된다.

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납기 지연, 가격인상요인 발생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업체의 양해를 구함으로써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외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며 클레임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신속히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입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금결제 방식에서도 L/C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D/A, D/P 조건 등 다양한 결제조건을 수용하는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물건을 잘 만들어 놓고도 저가 포장재 사용 및 포장 불량으로 물건 자체에 대한 QUALITY 조차 저가품으로 인식 받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압축포장 및 고가 포장재 사용을 통해 고급품 이미지 구축 노력이 요구 된다.

호주 현지진출 우리기업들의 지사가 시드니에만 집중되어 있어 멜버른과 같은 여타 지방상권에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케팅 방법에 있어서는 다품종 소량 주문형 시장이라는 특성을 감안, 재고 판매 전략도 채택해 볼만한 것으로 보인다.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업체 디렉토리 (KOTRA 무역자료실에서 이용가능)

- Yellow Pages Sydney 2006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 White pages Sydney 2006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 Kompas Australia 2006 / APN Business Publishing Pty Ltd Group
- The Business Who's Who Products and Trade names Guide 2006 / Dun & Bradstreet (Australia) Pty Ltd.
- 상기 디렉토리 중 실제로 가장 유용한 자료는 옐로우 페이지로서 이는 업데이트가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며 내용도 매우 풍부한 편이다. www.yellowpages.com.au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나. 주요 협회 리스트

- Advertising Federation of Australia Limited (AFA)
- Aerosol Association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AIA)
-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AREMA)
- Association of Liquid-paperboard Carton Manufacturers Inc (ALC)
- Australasian Bottled Water Institute Incorporated
- Australasian Soft Drink Association Ltd (ASDA)
- Australian Automobile Association (AAA)
- Australian Automotive Aftermarket Association Ltd
- 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
- Australian Canegrowers Council (CANEGROWERS)
- Australian Council of Wool Exporters
- Australian Direct Marketing Association
- Australia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nufacturers' Association Ltd
- Australian Federation of Travel Agents (AFTA)
- 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 (AFGC)
- Australian Foodservice Manufacturers' Association
- Australian Fruit Juice Association
- Australian Industry Group
- Australian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AIIA)
- Australian Market Research Society (MRSA)
- Australian Publishers' Association Ltd
- Australian Record Industry Association Ltd (ARIA)
- Australian Society of Perfumers and Flavourists
- Australian Toy Association Ltd (ATA)
-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 of Australia Inc (CTFAA)
- Council of Textile and Fashion Industries of Australia Ltd
- Direct Selling Association of Australia Inc
- Federation of Automotive Products Manufacturers
- Food and Beverages Importers' Association

- Grains Council of Australia
- Hairdressing & Beauty Industry Association
- Medicines Australia
- Motor Trades Association of Australia (MTAA)
- National Association of Forest Industries
- National Farmers' Federation (NFF)
- Packaging Council of Australia (PCA)
- Pharmaceutical Society of Australia
- Proprietary Medicines Association of Australia Inc
- Refrigerated Warehouse and Transport Association
- Restaurant and Catering Association of Australia
-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Union of Australia (TCFUA)
- Wool Producers

다. 전시회 정보

- 2006-2007 년에 개최되는 호주 내 주요 전시 정보는 KOTRA 시드니 무역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http://www.exportal.or.kr/digitalkotra/exbt_list.jsp)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호주는 공급자(바이어) 중심 시장으로 공급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들의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며, 온라인 정보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당한 수준의 유력기업도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지극히 단순한 형태로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 정보는 어디까지나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호주 옐로우 페이지: <http://www.yellowpages.com.au/>
- 호주 화이트 페이지: <http://www.whitepages.com.au/>
- 제조업체 검색: <http://www.ausmanufacturers.com.au/>
- 기업검색: <http://www.industrysearch.com.au/>
- <http://www.tradepoint.com.au/>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시 유의사항

상관습은 매우 보수적이며 인과이어리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지 못하지만, 단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고 거래를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적은 인구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작고 대부분의 거래가 소액소량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장기 안정적인 거래선으로 확보하려는 자세가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관건이다. 호주는 제품 안전규정 및 소비자 보호규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특히,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정착돼 있어 사후 클레임의 소지가 큰 시장임을 숙지하여, 수출 시 관련 안전 규정과 소비자보호규정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 유통마진

품목 및 업종에 따라 크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에 민감한 식료품 분야는 13-15% 정도이고, 할인백화점에서 의류 및 일반잡화의 유통마진은 30-40% 정도이나, 고급 백화점에서는 100% 이상이다. 의류전문 소매 체인점들은 30-50% 정도의 유통 마진을 보고 있다. 판매량이 적은 소형 소매점들은 최소한 80% 이상의 유통마진을 보고 있으나, 야채와 과일은 40% 이하 수준이다. 대형 도매업자들의 경우 대량주문에는 15%, 소량주문에는 30-40% 정도의 유통마진을 보고 있다.

□ 국산품 선호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불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내적으로 전개한 국산품 애용 운동의 영향도 없지 않으나, 호주 대형 유통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수입보다는 우선적으로 국내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짧은 납기 때문에 유행이나 소비자 기호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언어장벽이 없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없고 광고, 선전비의 일부를 부담시키기가 국내 공급업체들이 해외공급업체들보다 용이하며 L/C 개설, 통관 등 번거로운 절차가 없다는 장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호주 대형 유통업체들은 운송료, 보험료, 관세 등 수입에 따르는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국내 제품 가격보다 최소한 10-15% 정도는 저렴해야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가 없어 수입을 할 경우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수입상이나 디스트리뷰터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있는 자신의 BUYING AGENT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고 있으나 주문량이 소량이거나 마무리 공정이 수입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상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 수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소매업체들은 대부분 수입상이나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있으나 최근 직접 수입하는 소규모 소매상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절이 북반구와 정반대이다.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은 물품 주문 시 자신의 판매 계획을 감안하여 물품인도날짜를 지정하고 있다. 만일 해외공급업체가 이들의 지정한 인도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그것으로 거래가 중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공급업체들은 인도 날짜에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호주는 개인주의 사회이다.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개인주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진다. 모든 업무는 근무시간에 이뤄지며 오후 5시가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김없이 퇴근한다. 누구도 타인의 자유시간을 침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끝난 후 밖에서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각 직장 또는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맥주나 와인을 한잔씩 들고 담소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끝난 후 술집에서 거래처를 따로 접대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일도 거의 없다. 이렇듯 호주인들은 타인의 개인생활을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생활을 보호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 생각한다.

면담이나 협상은 반드시 사전약속(최소 2 주 이상)을 통해 하되 주중 저녁시간, 주말(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오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적인 업무처리는 근무시간 중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호주인들은 무척 가정적이다. 그래서 퇴근하면 대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금요일 밤을 제외하고 오후 8 시 정도가 되면 지하철과 도로는 썰렁하다. 이미 퇴근시간대의 러시아워가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26.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가. 소량 주문

시장의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 미국이나 EU 와 비교할 때 1 회 주문량 자체가 소량일 경우가 많다. 심지어 Target, K-Mart 및 Big W, Woolworths 와 같은 호주 대형 유통체인점들의 주문량도 해외공급업자들이 납품할 수 있는 최저 주문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남성용 와이셔츠에 대한 호주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문량은 3-4 가지 색상에 300 다즌 정도이며 David Jones 와 같은 중형 백화점은 2-3 가지 색상에 150 다즌 정도이다. 그러나 호주는 1 인당 국민소득이 1 만 6 천불에 달하는 OECD 국가 중 하나로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대중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어 주문 회수가 비교적 많고 일단 거래 및 신뢰가 형성되면 주문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호주에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공급업체들은 호주의 이러한 시장특성을 이해하고 소량주문이라도 적극 수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나. 호주시계는 한국시계보다 느리다

또 한가지 미리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호주 사람들은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다. 느리고 또한 매우 보수적이어서 인과이어리, 주문 등에 대한 반응도 신속하지 못하나 단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다고 거래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호주사람들은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릴 때, 절대로 서두르거나 담당자의 일처리가 늦다고 불평하는 법이 없다. 옆 차선이 비어 있어도 좀처럼 차선을 바꾸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호주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어 당연할 일로 생각한다. 호주사람들의 일처리는 비록 느리지만 대충대충 넘어가는 법은 없고 꼼꼼하고 철저하다.

다. LC 의 고집은 금물

금융 비용이 비싼 국가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량의 주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LC 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로, 일정 선금과 제품인도 후 잔금 지불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27. 통관절차

가. 수입통관 절차

- 수입된 물품들의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서류수속을 밟아야 하며, 수입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추후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수입절차 이행 후에라도 수입된 날짜로부터 5 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

- 수입신고는 전 과정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검역에 관련이 없는 물품들의 98%가 Green Line 으로 분류되며, 그 밖의 검사과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Red Line 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검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 구체적인 검사내용은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 소재하고 있는 호주 관세청에서 폭 넓게 연결된 최신 컴퓨터 데이터망(Compile-System)을 통하여 검사의 체계적인 아웃라인이 잡히게 되며, 이 컴퓨터 시스템은 수입된 품목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관련서류 신고 시 Electronic Entry 에 A\$30 불, Manual Entry 에 A\$50 불 가량이 소요된다.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 A\$2000(약 180 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관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제출서류와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제출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ding)원본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Country of Origin)

□ 기본적인 절차

- ① 선적 및 선적서류 송부
 - ② 도착통보(Arrival Notice)
 - Shipping Company: 선박도착 일시
 - Bank: B/L 원본 및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도착 통보
 - ③ 통관서류 제출(Fax /Courier)-Customs Agency
 - ④ 품목별 상품분류(Hs Code)-Tariff Classification
 - ⑤ 제세 산출
 - 관세(Duty): FOB x Duty Rate
 - Goods & Service Tax(GST, 일종의 부가가치세) : 관세 부과후의 금액 x 10%
 - ⑥ Customs Entry(세관신고-Customs Computer Terminal Compile 시스템)
 - ⑦ Nature 10: Wharf 에서 통관
 - Nature 20: Wharf->Bond
 - Nature 30: Bond->통관
- (참고 1)Nature10,20,30 는 세관신고 서류의 양식으로서, 일반적으로 Nature10,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화물인도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Nature20, Nature30 선택

- (참고 2)식품류의 경우 Nature 10 에 의하여 부두에서 조건부 통관한 후 지정된 검역 장소로 이동하여 검역과정을 밟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나. 세관검사(Computer Clearance)

- Green-Line 으로 분류된 품목들은(98%) 검사가 생략되며, Red-Line 으로 분류된 품목들은 세부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 세관 직원에 의한 검사(Custom-Inspection)시 착안사항
 - 수량(Quantity)
 - 가격(Value)
 - 원산지(Country of Origin)
 - 라벨(Label)
 - 상업용 마크(Commercial Mark)
 - 유사 상품(Trade Mark)
 - Community Protection

다. 검역(Quarantine Inspection)

- 컴퓨터에 의한 검사와 검역직원에 의한 검사로 나뉜다.
- 제품 및 컨테이너와 팔레트에 대한 훈증 처리 여부를 주로 체크한다.

라. 제세 납부

- 통관수속과 동시에 지불해야 하는 제세
 - Duty
 - Goods & Service Tax(GST)
 - Overseas/Air Freight
 - B.S.R.A. & D/O/ITF & IDF
 - Custom Computer Terminal 사용료
 - Owner Code Application Fee
 - Supplier Code Application Fee
-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Service Charge 는 1주일 내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Customs Agent' s Fee/Professional Attendance Fee
 - Cartage to Warehouse Fee(필요한 경우)
 - Unpacking Fee(필요한 경우)
 - Cartage

마. 그 밖의 사항

- 모든 서류들은 알아보기 쉽게 명시/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친 이후 수입된 물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물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소 15시간이(공휴일 제외) 걸리게 된다.

- 통관문제를 위하여 세관의 브로커를 이용할 경우, 일 처리가 보다 신속히 진행되는데, 세관 브로커를 알선해주는 브로커 카운슬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Tel) 61-2-9314-1711, Fax) 61-2-9314-2484
- 세관의 전산화 시스템으로 인하여 대략 98%의 통관수속이 별다른 방해 없이 진행되나 수입업자나 업체에서 개별적인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최소 24 시간 이상의 시간 소모가 예상된다.

바. 관련기관

- 일반적인 자료들은 세관의 웹 사이트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케이스 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할 경우 세관 정보센터의 이메일로 연락하면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Australian Customs House
 - 5 Constitution Ave Canberra City ACT 2601
 - Tel) 02-6275-5041/1300-363-263
 - Fax) 02-6275-6005
 - <http://www.customs.gov.au>
 - Information@customs.gov.au
- AQIS Policy and International Division
 - Tel) 02-6272-5584
 - Fax) 02-6272-3307
- Import Risk Analysis Secretariat
 - Tel) 02-6272-6337
 - Fax) 02-6272-3307

사. 호주의 한국인 관세사

- Rohde & Liesenfeld P/L (윤광홍 공동대표)
 - 4A Lord Street (PO Box 362) Botany NSW 2019 Australia
 - Tel) 61-2-9666-1322
 - Fax) 61-2-9666-9466
 - E-Mail: bobyoon@rlaus.com.au

28. 운송

- 호주전체 교역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금액기준)은 74%(수입 38%, 수출 36%)이며 항공 운송의 비중은 26%이다.
- 호주에는 크고 작은 35 개의 항구가 있으며, 이중 시드니와 멜버른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 2 개 항구는 호주시장 진출의 관문이다. 이들 외의 주요 컨테이너 항으로는 브리스베인, 프리맨털, 아델레이드 항이 있다.

- 항구별 물동량 관련 통계자료는 입수가 극히 어려운 실정인데, 지난 2002년 5월 호주 운송 물류산업 진흥위원회가 작성한 주요 항구 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예측자료를 보면 모든 항구에서의 물동량은 증가하나, 멜버른보다 시드니항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주요 항구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전망

(단위: 천 TEU)

주요 항구	2000년	2005년	2010년
브리스베인	449	639	797
시드니	1027	1606	2252
멜버른	1327	1580	2165
아델레이드	127	170	206
프리멘틀(퍼스)	342	345	427
합계	3273	4340	5847

자료원: Freight Logistics In Australia

- 한편, 멜버른 항구는 최근 수심이 낮음으로 인해 대형선박의 접안능력이 떨어지면서 항만준설 등 개보수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
- 2005년 3월 기준, 퀸스랜드주에 소재한 호주 최대의 석탄 수출항(Dalrymple Port)은 선적시설 병목현상으로 50 여척의 대형 벌크선이 외항에 대기중에 있어 조만간 대규모의 설비확장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박운임

(2005.7월 기준, 부산항 출발, US\$)

도착항	20'(TEU)	40'(TEU)	R/T(CBM)
시드니	1,900	3,700	80
멜버른	1,750	3,400	80
브리스번	1,750	3,400	100
퍼멘털	1,750	3,400	100
아델레이드	1,750	3,400	100

자료원: 동 자료는 무역협회의 시장 모니터링 자료임

29. 분쟁해결 절차

가. 분쟁해결 절차

통상의 무역분쟁의 경우와 같이 호주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양 당사자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중재(arbitration)또는 소송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ACICA, 대한상사 중재원에 해당)은 아래와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relating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ICA Arbitration Rules. The seat of arbitration shall be Sydney, Australia [or choose another city].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English [or choose another language].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or three, or delete this sentence and rely on Article 8 of the ACICA Arbitration Rules].”

나. 호주의 중재기관

□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ACICA)

- Level 10, 22, William Street, Melbourne 3000, Victoria, Australia
- Tel: +61 (0)3 9629 6799 / * Fax : +61 (0)3 9620 5250
- Contact: Prof. Michael Pryles(President)
- <http://WWW.acica.com.au>

□ Australian Commercial Dispute Centre(ACDC)

- Level 4, 50 Park Street, Sydney 2000, Australia
- Tel: +61 (0)2 267 1000 / * Fax : +61 (0)2 267 3125
- Contact: Carol Dance(Chief Executive Officer)
- <http://WWW.austlii.edu.au>

□ The Institute of Arbitrators and Mediators of Australia

- Level 1, 22, William Street, Melbourne 3000, Victoria, Australia
- Tel : +61 (0)3 9629 6799 / * Fax : +61 (0)3 9620 5250
- Contact : Prof. Michael Pryles(President)
- <http://WWW.instarb.com.au>
- 205 William Street, Melbourne 3000, Victoria, Australia
- Tel : +61 (0)3 9608 7111 / * Fax : +61 (0)3 9670 2959

다. 법원에 의한 소송절차

한국의 수출업체가 호주 법원을 통하여 호주 바이어에게 제기하는 소는 대금 미 결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소가 접수되면 법원은 바이어 측에 STATEMENT OF LIQUIDATED CLAIM라는 통지를 하게 된다.

수입자는 수령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입자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판결에 의한 채무의무(judgement debt)가 발생하는 바 이후 법원에 의한 강제징수 등이 가능하다.

수입자가 28일 이내에 항변(defence)을 제출할 경우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양측에서 변호사를 내세워 다투게 된다. 패소한 측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및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VI. 투자

30.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낮은 진입 장벽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자본의 조달은 호주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이전의 노동당 정부와 현재의 보수 연정(1996 년 이후 집권) 모두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해왔으며, 여기에는 방송, 항공, 통신 등 전통적으로 민감한 분야까지 포함된다. 외투 기업은 자본 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으며 외환규제가 거의 없다는 점도 투자유치에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2005 년 300 대 외투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100%에 못 미치는 기업은 23 개에 불과하며 50% 미만인 기업은 1 개뿐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전통적으로 2 차 산업보다는 유통업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3 차 산업이 FDI 수요를 주도해 왔으며 최근 수년간은 전 세계적 자원 붐으로 인해 광업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호주화의 강세도 투자동인으로 작용해왔으나 호주화가 최근 지속적으로 절하되어 투자유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도별 투자유치 총괄

(단위: AUD 백만)

연도	2001	2002	2003	2004
순투자(당해년도)	8,956	28,773	10,724	57,917
순투자(누계)	211,345	238,076	249,230	325,572

자료원: UNCTAD

* 2005 년 직접투자 유치액(순 투자)은 -A\$44,654 백만불 임(호주 통계청)

2003 년 말 순 투자 누계 기준으로 2 차 산업이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통계발표를 담당하는 통계청은 2 차 산업의 경우 더 이상의 세부 업종별 실적은 발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주요 제조업 외투기업 리스트는 자동차 및 식품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는 광업이 전체 누계액의 19%, 유통업이 16%, 금융업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투자유치 동향

(단위 : AUD 백만)

업종	2001	2002	2003
전체	8,956	28,773	10,865
1 차산업	3,594	6,519	4,225
농림수산업	-25	27	-10
광업	3619	6492	4235
2 차산업	970	5,971	5,659
3 차산업	3,046	15,730	2,403
전기/가스/수도	-377	2,273	-1,412

건설업	78	445	279
유통업	-7,079	4,974	1,012
숙박요식업	-197	5	-216
운수창고업	-104	41	-227
통신	8,383	555	1,562
금융업	2,667	6,668	1,520
비즈니스서비스	-325	769	-115
기타	1,346	553	-1,422

자료원: UNCTAD, 호주통계청 2006 년 현재 최신자료

업종별 투자유치 동향(2003 년 말 누계)

(단위: AUD 백만, %)

업종	금액	비중
전체	249,858	100
1 차산업	48,029	19
농림수산업	1,352	1
광업	46,677	19
2 차산업	64,308	26
3 차산업	133,126	53
전기, 가스, 수도	8,989	4
건설업	4,814	2
유통업	39,197	16
숙박요식업	4,096	2
운수창고업	4,699	2
통신	16,949	7
금융업	34,056	14
비즈니스서비스	20,326	8
기타	4,395	2

자료원: UNCTAD, 호주통계청 2006 년 현재 최신자료

투자국별로는 미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양국을 제외하면 일본과 EU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호주의 유력경제주간지 BRW 가 발표한 2005 년 300 대 외투기업 리스트를 투자국별로 분석한 결과 미국 기업이 100 개, 영국이 37 개, 일본 35 개, 독일 20 개, 프랑스 18 개, 네덜란드 16 개, 스위스 11 개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 투자유치 동향

(단위: AUD 백만)

국명	2001	2002	2003
전체	8,956	28,773	10,865
미국	2,980	8,344	5,684
일본	944	2,703	2,016
캐나다	1,134	2,951	1,959
벨기에/룩셈부르크	1,710	273	1,419
이탈리아	-41		1,280
네덜란드	397	2,056	767
뉴질랜드	-1,020	1,657	723
프랑스	195	501	635
독일	476	784	574
스위스	1,425	1,110	400
싱가포르	13,358		369
남아공	339		268
말레이시아	668		-108
홍콩	-661	826	-308
기타국가	-12,948	7,568	- 4,813

주: 상기 국가 리스트는 2003 년 투자액 순에 의한 것임

자료원: UNCTAD, 호주 통계청 2006 년 현재 최신자료

국가별 투자유치 동향 (2003 년 말 누계)

(단위 : AUD 백만, %)

국명	금액	비중
전체	249,858	100.0
미국	71,850	28.8
영국	50,576	20.2
일본	18,404	7.4
네덜란드	12,031	4.8
스위스	8,867	3.5
캐나다	7,803	3.1
독일	7,732	3.1
뉴질랜드	7,069	2.8
프랑스	5,902	2.4
벨기에/룩셈부르크	5,247	2.1
말레이시아	3,250	1.3
이탈리아	2,930	1.2
싱가포르	2,863	1.1
홍콩	2,473	1.0
남아공	2,002	0.8
기타	40,859	16.4

자료원: UNCTAD, 호주통계청 2006 년 현재 최신자료

한편 지역 별 유치동향을 보면 어느 특정 지역(주)에 보다는 두 개 이상의 주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금융업, 유통업과 같이 여러 지역에 다수의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광업과 같이 광구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업종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 투자 유치 동향

(단위 : AUD 억)

지역(주)	2002/03	2003/04	2004/2005
New South Wales	96	114	79
Victoria	99	86	105
Queensland	113	142	99
Western Australia	79	138	83
South Australia	na	30	3
Tasmania	na	2	1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a	4	1
Northern Territory	na	2	6
2 개 주 이상투자	396	490	809
기타	75	14	9
합계	858	1,022	1,195

주: 금액은 투자 신고 총액 기준임

자료원: FIRB(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 2006 년 현재 최신자료

호주의 10 대 외투기업 (2005 년 기준)

(단위: AUD 백만)

순위	기업명	연매출	총자산	외국 지분율(%)	투자국
1	Shell Australia	11,887	3,512	100	네덜란드
2	Exxon Mobil	10,071	10,186	100	미국
3	BP Regional Australasia Holdings	8,317	10,939	100	영국
4	Metcash	7,624	1,489	61	남아공
5	Toyota Motor Corporation	7,524	1,956	100	일본
6	Shell Energy Holdings	6,852	9,817	100	네덜란드
7	Singtel Optus	6,503	8,815	100	싱가포르
8	Holden	6,399	3,327	100	미국
9	Xstrata Queensland	5,740	4,929	100	영국
10	Axa Asia Pacific	4,945	29,152	46.7	프랑스
106	LG Electronics	722	334	100	한국
134	Hyundai Motor Company Australia	605	162	100	한국

자료원: BRW

31. 우리기업 투자동향

□ 자원 개발 분야에 투자 집중, 최근 도소매업 투자비중 증가

우리나라의 대 호주 투자는 광산개발 등 자원 개발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밖에 종합상사의 현지 법인설립이나 골프장 매입 등 레저산업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 이민자들의 투자는 소액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5 년 대 호주 투자는 신고기준 44 건 US\$ 1 억 3 천만으로 2000 년 이후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신고 기준 투자금액(누계)의 약 75%를 광업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나 2001 년 이후 도소매업(종합상사의 현지 법인 설립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호 투자 동향

(단위 : US\$ 백만, 건)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0	26	123	23	58
2001	18	12	18	11
2002	17	55	14	63
2003	18	187	17	51
2004	23	80	23	54
2005	44	132	42	104
누계('80-' 05)	341	2,854	306	830
2006. 1~6	19	99	20	6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업종별 투자동향을 보면 도소매업과 광업을 제외한 여타 업종의 투자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누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도소매업과 광업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0 년 이후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호 업종별 투자 동향 (실제 투자건수 및 금액기준)

(단위: US\$ 백만, 건)

연도	도소매업		광업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요식업		서비스업		건설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4	18	1	16	1	10	4	5	6	1	6	4	1	4
2001	3	4				1	5	3	4		3	1		1
2002	3	42		10		8	2	1	3		4	1		
2003	7	33	2	7		6	4	2	3	1	1	3		
2004	6	30		8	2	8	8	4			6	2		
누계('80~ '04)	84	290	24	267	10	58	66	56	31	23	31	14	4	11
2005	11	49	3	33			7	3	8	2	8	3	5	7

자료원: 한국 수출입 은행

한국의 대 호주 광업프로젝트 추진현황 (2004 년 기준)

광종	프로젝트	소재지 (state)	개발업체	지분(%)	액(US\$ 천)	생산규모 (천톤)
유연탄	마운트쏘리	NSW	포스코	20.0	51,211	3,610
	드레이톤	NSW	대성	5.0	36,913	3,978
	클라렌스	NSW	SK	15.0	23,195	1,763
	샤본	NSW	SK	5.0	4,182	928
	스프링베일	NSW	광진공 등	100	123,308	2,461
	엔삼	QLD	LG	5.0	12,976	8,088
	다트부룩	NSW	쌍용	7.0	68,972	3,825
	와이웅*	NSW	광진공 등	95.0	12,129	-
	토가라노스*	QLD	광진공	33.3	5,985	-
	카유가*	NSW	쌍용	7.0	468	-
아연/연	마운트가넷	QLD	고려아연	7.5	12,000	100 (정광)
	타운스빌	QLD	고려아연	100	491,056	190 (금속)
철광	포스맥	WA	포스코	20	9,848	12,462
계	13 개				852,243**	

주 1: * : 탐사프로젝트, ** : 중단사업 투자액 제외

주 2: NSW : New South Wales 주 / QLD : Queensland 주 / WA : Western Australia

자료원: 대한 광업 진흥 공사

주 3: 2006 년 현재 입수가능 최신 자료

한국의 대 호주 10 대 투자기업

상호	현지 법인 명	업종	주력품목
고려아연	KOREA ZINC AUSTRALIA	도소매업	아연, 연, 광산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AUSTRALIA .	도소매업	전자, 전기제품
한솔홈테코	HANSOL AUSTRALIA .	농림어업	우드칩
포항종합제철	POHANG STEEL AUSTRALIA .	광업	광산개발·무역
에스케이	SK AUSTRALIA	광업	유연탄개발
쌍용	SSANGYONG RESOURCES .	광업	석탄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COMPANY AUSTRALIA	도소매업	자동차
현대종합상사	HYUNDAI AUSTRALIA .	도소매업	철강제품
대우	DAEWOO AUSTRALIA	도소매업	종합무역
대한광업진흥공사	KORES AUSTRALIA	광업	유연탄

자료원: 재경부 투자 인포넷

32. 투자환경

가. 대 호주 직접투자의 동기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투자 동기는 신시장 개척, 기술, 노동력 그리고 천연자원 확보 등 4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호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동기는 천연자원 확보 측면이 강하다. 1991년이래 광업이 단일산업으로는 외국인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이다. '91년부터 '96년 사이 광업(mining)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연평균 6% 성장하였으며 총 자본유입의 10%를 점하였다. 이러한 FDI 투자의 대부분은 내수용 보다는 수출용 생산이 목적이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대 호주 투자의 두 번째 중요한 동기는 팽창하는 로칼시장이다. 2005년 호주는 인구 2천만에 일인당 GNP가 US\$3만에 육박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 규모 다.

1970년대까지의 고관세 및 엄격한 쿼터제 등 보호무역, 높은 운송비용 그리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딜리버리 등 때문에 수입상품의 경쟁력은 그만큼 낮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로칼 시장을 겨냥하여 호주 제조업에 투자를 하였다. 미쓰비시 자동차가 그 한 예이다.

미쓰비시 자동차가 1964년에 남호주 아델라이드에 자동차 제조공장을 설립한 이래 이 공장에서 로칼시장에 자동차를 공급해 왔다. '2005년 3월 기준 호주 내 자동차 생산 공장은 미쓰비시를 포함해 Toyota, GM Holden, Ford등 4개사로 늘었다. (그러나, 미쓰비시 자동차 호주 조립공장은 일본의 모기업 경영난으로 오는 2010년까지 호주에서 조립생산라인을 운영하고, 공장운동을 중단할 예정임)

로칼시장을 겨냥한 투자의 예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들 수 있다. 호주는 아름다운 경관, 온화한 기후, 독특한 야생동물 등으로 전세계 특히 인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투자자들이 '80년대 이후 호주 관광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좋은 생활환경, 영어 사용 등으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호주에 자사의 아시아 지역본부와 연구센터를 두고 있는데, 최근 2년 사이 호주달러화가 급속히 평가절상 되면서 물가는 상승, 외국기업 투자진출 유인 요인에서 제외되고 있다.

2003년 초 기준 시드니에만 300여 개의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RHQs; Regional headquarters)가 있으며, 이중 40% 정도가 정보통신(IT&T) 업체이다. IBM, Microsoft, Oracle, Sun Microsystems, Alcatel, CISCO Systems, Compaq, Philips, Lucent Technologies, EDS, Nortel, Novell, SAP 및 America Online 등이 시드니에 소재하고 있다. 통신업체로는 AT&T, BT, MCI Worldcom, Cable and Wireless, AATP, Worldxchange 및 Vodafone 이 있다. 또한 EDS 와 Motorola 의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남호주 아델라이드), Cathay Pacific 의 지역 IT 운영센터 (시드니) 등이 모두 이러한 이점 때문에 투자한 경우이다.

나. 호주 투자 시 불리한 점

호주의 법인세(corporate tax) 는 인근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30% 이다.

호주의 법인세는 2000 .7.1일부 조세개혁을 통하여 36%에서 34%로 인하되고 2001. 7.1일부로 다시 30%로 낮춘 바 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호주의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시장도 거대한 로칼 시장을 지향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단점이다.

다.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1) 투자정책 일반

호주정부는 경제활동 및 고용기회의 증가, 신기술, 경영기술 및 해외시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호주정부는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the Act)에 의거, 국익(national Interest)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진출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99.8월과 9월 정부는 외국인 투자정책과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에 일부 수정을 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업신고 의무를 줄이고 외국인 투자 관련 행정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규모가 작은 프로포잘(투자계획)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규모가 큰 프로포잘도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승인된다.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FIRB)는 관련 당사자(relevant parties)와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규모가 크거나 혹은 좀 더 민감한 외국인 투자 프로포잘이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의(screening) 한다.

정부는 호주 내 다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에 반하는(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의 의미를 결정한다. 다수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여 미디어와 이미 개발된 주거용 부동산(media and developed residential real estate)과 같은 좀 더 민감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특정한 제한(specific restrictions)을 받는다.

현재까지 건수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외국인투자 프로포잘은 부동산 구입이었다. 정부는 주거용 택지 또는 신축중인 주택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도 신규주택 공급을 늘리는 주택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미 개발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 좀 더 많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기존주택에 대한 과다한 수요집중을 방지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규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주택가격 및 주택공급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2) 사전 승인 (Prior Approval)

□ 사전승인을 득하여 정부에 사전 신고 되어 하는 프로포잘

- ① A\$50백만 이상인 기존 호주기업의 지분 인수(acquisitions of substantial interests in existing Australian businesses with total assets over \$50 million or where the proposal values the business at over \$50 million)

* substantial interests: 외국인 1인이 15%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다수 외국인의 지분합계가 4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함.

- ② A\$10백만 이상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proposals to establish new businesses involving a total investment of \$10 million or more)
- ③ 미디어에 5% 이상 포트폴리오 투자하거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비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s in the media of 5 per cent or more and all non-portfolio investments irrespective of size)
- ④ A\$50백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해외 호주기업의 인수 혹은 50% 이상의 주식취득(takeovers of offshore companies whose Australian subsidiaries or assets are valued at \$50 million or more, or account for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target company's global assets)
- ⑤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 정부 혹은 정부기관에 의한 직접투자 (direct investments by foreign governments or their agencies irrespective of size)
- ⑥ 도시지역 토지취득(acquisitions of interests in urban land(including interests that arise via leases, financing and profit sharing arrangements and the acquisition of interests in urban land corporations and trusts)
- ⑦ 기타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은 프로포잘(proposals where any doubt exists as to whether they are notifiable)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미국, 싱가포르, 태국 등)에 대해서는 FTA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면 되도록 사전승인 대상이 대폭 완화되었다.

3) 부문별 투자유치정책 (Examination by sector)

□ 도시토지 (Urban Land)

해외거주 호주시민이 자기 이름 혹은 호주기업 혹은 신탁회사 명의로 혹은 외국인이 호주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영주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특별한 범주의 비자(special category visa)를 보유한 외국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혹은 호주회사, 신탁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 취득 프로포잘에 심사가 면제된다.

이미 개발된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외국인 투자 프로포잘은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는다.

이미 개발된 비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외국인 투자 프로포잘은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승인된다.

□ 은행(Banking)

the Banking Act 1959, the Financial Sector (Shareholdings) Act 1998 및 은행 정책에 따라서 호주은행 인수 혹은 합병을 위한 외국인 프로포잘은 건 별로 검토된다.

□ 민간항공(Civil Aviation)

① 국내선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외국 항공사를 포함)도 일반적으로 호주 국내항공사 지분의 100%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 국제선

외국 항공사는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Qantas를 제외한 호주 국적 항공사의 지분을 단독으로는 25%까지, 복수가 연합해서는 35%까지 취득할 수 있다. Qantas에 대한 총 외국인 지분소유는 49%로 제한되어 있으며 개인의 경우 25%, 외국 항공사들에 의한 총 소유지분은 35%로 제한되어 있다.

□ 공항 (Airports): 건 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 해운업(Shipping)

The Shipping Registration Act 1981에 의하면 선박이 호주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박의 다수지분 소유자가 호주인이어야 한다.

□ 미디어(Media)

규모와 관계없이 미디어 부문에 대한 모든 외국인 직접투자(비 포트폴리오)프로포절은 사전 승인 대상이다.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도 5%를 넘는 프로포절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 통신(Telecommunications)

호주 최대의 통신회사이자, 정부가 대주주인 Telstra Corporation Ltd. (Telstra) 는 1997. 10월 이래로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단행하여 49.9%의 지분을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들에게 매각하였다. Telstra 지분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 한도는 민영화된 부분의 35%이며 외국인 개인투자자는 민영화된 지분의 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통신부분에 신규 진입 하거나 기존 통신부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 상한금액 (A\$50백만)을 넘는 프로포절은 건 별로 심사되며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승인된다.

4) 신청 (Applications)

모든 신청서는 아래주소로 제출해야 한다.

- The Executive Member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 C/- The Treasury CANBERRA ACT 2600 Australia
- 관련사이트로 바로 가기: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라. 투자 절차

다음과 같은 허가대상 투자는 Invest Australia를 통해 투자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에 제출, 투자허가를 받아야 한다.

- A\$5천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존 호주기업의 인수

- A\$5천만 이상의 신규 투자
- 외국정부 또는 기관에 의한 직접 투자
- 기존 호주기업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져올 주식 취득 또는 발행

제조, 서비스, 자원가공, 석유 및 가스, 광물 (우라늄 제외), 비은행 금융 중개, 주식 중개, 관광, 부동산(도시권 제외), 농림수산 부문에서의 A\$5천만 이하의 외국인 투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다음과 같은 투자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FIRB에 신고해야 한다.

- A\$5백만 이상인 기존 호주기업의 인수
- A\$5백만 이상의 비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취득 (농장은 A\$3백만 이상)
- A\$1천만 이상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

마. 법인 설립 절차

법인의 명칭을 정하고 나면 이의 보전을 위해 기업등록소(Register of Companies) 또는 각 주의 Corporate Affairs Commission 에 법인 명칭을 등록해야 한다. 이때 등록 희망 법인 명칭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이 요구됨.

명칭을 등록시킨 후에 다음 서류를 법인관리청(The Australian Securities Commission)에 제출하면 법인으로 설립된다.

- 정관: 법인 명칭, 설립목적, 사업범위, 설립자 성명 및 주소, 주식소유관계, 주식 및 보증인의 책임한계, 주식자본금 규모, 주식가격 등 법인의 사업 및 권한을 규정
- 부정관: 이사의 임면 및 권한, 회의개최 및 투표, 주식양도 및 이익배당금 처리 등 법인의 경영 및 통제를 규정
- 법인 중역진 명단
- 등록사무실 공고

기업은 공개 또는 비공개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비공개 법인은 정관이나 부정관에 주식 이전권의 제한, 주주의 50인 이내 제한 (고용인 주주 제외) 및 저당 설정 또는 주식 공매 금지조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회사 형태에 관계없이 외국인이 호주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투자승인은 물론 현지 근무예정자의 이민(비자) 문제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바, 가급적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요구된다.

실제로 회사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지 않으며, 현지 근무 예정자의 이민(비자)문제 처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바. 회사 형태

-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상품거래에 대한 정보만 제공, 영업활동 불가
- 지점(Branch): 외국기업으로 취급하며 조세 등에 있어서는 호주기업과 동일한 취급
- 회사(Company): 호주기업(외국기업의 자회사는 현지법인으로 등록해서 호주기업으로 취급)
- 파트너쉽(Partnership): 비법인 조직으로 둘 이상의 사람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자금 출자 및 이익금 분배 등에 합의 함으로서 성립
- 합작투자(Joint Venture): 파트너쉽과 유사하나 대개 기한부의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

33. 투자인센티브

가. 외국인 투자 현황

- 호주는 자원 및 경제 개발과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강력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임금수준이 높으며, 까다로운 노동법규 등 제조업에 관한 한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외국인 투자 분야가 자원 개발 및 부동산 구입, 서비스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호주정부는 2001년부터 “Invest Australia”라는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신청에서부터 공장설립까지를 One Stop 서비스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정부의 주요 업종별 투자 유치 정책

- 광산업: 석탄, 우라늄 등의 광산물 탐사를 위한 투자 시 기존의 호주 탐사업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심사가 면제되나 독자적인 탐사권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취득해야 한다. 현재 호주 연방정부는 호주의 대륙붕(유전 및 가스전)개발확대를 위해 해저 광구 개발권에 대한 권리를 국내외 업체에 매각하는 입찰을 발주하고 있다.
- 우라늄: 탐사 시는 호주기업의 참여 없이도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나, 광산개발은 외국인 투자법과는 관계없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한다.
- 언론 및 방송: 라디오 및 TV 방송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선 TV는 35%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신문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는 규제가 많으며, 외국 언론사의 신문사에 대한 주식 투자는 25%로 제한하고 있다.
- 항공: 현재 호주에 취항하고 있는 외국인 항공사의 경우 국내 항공사 주식의 25%까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국 항공사의 주식 한도는 총 40% 이내임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 금융업: 1992년 2월부터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신규 은행업을 허가하고 있다.
- 부동산: 금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 부동산 보유 기업의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투자우대 조치

- R & D Incentives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125%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즉 지출액보다 많은 세금환급 혜택을 줌), R & D 활동의 기초가 될 기존의 첨단기술 취득에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100% 세금이 감면된다. 단,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에 등록해야 한다.
- 해외시장개척기금 지원: 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s(EMDG): 2005년 3월 현재 A\$ 25만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동 자금은 최초 지원신청 시부터 8년간에 걸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전액을 사용하거나, 일부 미 사용 시라도 8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에서 졸업하게 된다. 최근 동 지원정책과

관련 지원 대상을 소기업 위주로 전환(연간 매출액이 A\$3 천만 미만 기업으로)하고, 지원 금액도 축소하여 더 많은 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 자금을 지원하는 주체는 호주의 무역진흥기관인 AUSTRADE 가 전담하고 있는데, 지난 매년 3,800 여 개 호주기업에 총 A\$1.5 억을 지원하여,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은 A\$4 만 약 3,200 만원)에 이르렀다.

- 자본재도입 보조금제도: Plant & Equipment Allowance: A\$5 천만 이상의 자본지출을 수반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본 시설재에 대해서는 10%의 개발 보조금이 지원된다.

라. 투자유치 법규 및 기관

- 법규: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 외국인 투자전담기관: Invest Australia(원스톱 서비스 국영기관)
- 허가 및 감독기관
 -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 외국인 투자 정책에 대한 대정부 자문 및 외국인 투자안내
 - Invest Australia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
 - 주소: National investment Response Center, Sydney, NSW 2001, Australia
 - 전화: 61-2-9397-1600
 - 팩스: 61-2-9397-1666
 - 이메일: nirc@industry.gov.au
 - 홈페이지: www.investaustralia.gov.au
 -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 투자정책 수립 및 결정
 - 주소: The Executive Member, Foreign Investment Review Branch, Department of Treasury, Canberra ACT 2600
 - 전화: 02-6263-3795
 - 팩스: 02-6263-2940

34. 타당성조사

가. 경쟁동향 및 시장규모

호주에서는 이미 주요 부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는 상태인 반면 시장규모는 인구 2천만으로 그리 크지 않은 편이어서 로컬 시장을 공략할 경우 자사 제품의 시장규모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원가

임금, 지대 등을 고려할 때 수출기지로서 호주의 투자여건은 열악한 편이다. 다만 발달된 기술 및 인력수준, 영어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산업부문에 따라 R&D 센터 등의 건립은 고려할 수 있다.

다. 투자절차

기존기업의 인수의 경우 사전허가제에 묶여있고 직접적인 투자허가 절차 외에도 기타 공장 설립 등에 있어 호주 관청들은 매우 신중하고 느린 편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5.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가. 투자진출형태

호주의 경우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제외한다면, 법인과 지점의 구분보다는 호주 증권투자 위원회(ASIC)에 foreign company 로 등록하는지 local company로 등록하는지의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호주 해외 투자승인 위원회(FIRB)에서 행하는 투자승인 등의 단계에서는 현지법인과 지점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FIRB의 가이드에서는 "branch"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으로 등록하느냐 호주기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른 차이점은 외국기업의 경우 경영공시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경영공시 대신 ASIC에 본사의 경영장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기타 법인세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양자가 차이가 없으나 개념적으로 외국기업의 경우 본사의 수익 중 호주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 호주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올린 수익을 포함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이중과세 협정이 없다고 가정할 때)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문제는 단순히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이므로 호주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회계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 등을 통해 구체적 상담을 받으셔야 할 사항이다.

경영공시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일견 장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은행과의 거래 등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에 대한 신뢰가 높은 호주사회 전반적 풍토를 생각할 때 거래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나. 투자방식

신규설립의 경우 단독 및 합작투자, 기존기업 인수의 경우 단독 및 공동인수 등이 모두 가능하다. 구체적 절차 및 구비서류는 “투자허가”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36. 입지선정

가. 개황

호주의 산업공단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것이 없고, 주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성되었으며 일부는 민간 개발업체에 의하여 조성되어 있다. 각 주정부 및 지방정부들은 지역개발을 위하여 산업공단을 조성하고 있으나 국토에 비하여 인구규모가 적고 분산되어 있는 호주의 특성상 대부분의 공단들은 시드니 등 대도시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에 19개의 산업공단이 있으며 이중 테크놀로지 파크가 8개, 일반단지가 11개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공단은 전문적인 제조업 위주의 산업공단이라기 보다는 일반 사무용 건물과 공장이 혼재해 있는 지역개발 목적상의 산업지구의 성격이 강하다.

호주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공단의 형태는 테크놀로지 파크로 일반적으로 산학 협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구내 또는 주변에 위치하며, 대부분 주정부와 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다.

공단 입주 업체들에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세제 등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다.

호주 내에는 우리나라나 일부 국가에서와 같은 전문화된 대규모 생산 단지와 같은 개념의 산업 공단은 없는데 이는 호주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호주의 산업 공단은 비즈니스 지역 또는 연구 단지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산업 공단에 진출할 경우 정보 통신, 생명공학 등 호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 과학분야의 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소 등의 형태로 테크놀로지 파크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IT 산업단지

1) 개요

호주에는 특정산업의 집중유치를 공단을 조성하거나, 입주 내외국인 기업들에게 세제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산업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IT 산업을 포함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등 초기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가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큐베이터 시설은 크게 두개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이중 하나는 4개 주요 대학(NSW대학, Sydney대학, UTS대학, ANU대학)의 공동스폰서 체제로 운영하는 ATP (Australian Technology Park)이며, 다른 하나는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CITA) 산하에서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10여 개의 인큐베이터 시설을 들 수 있다.

ATP의 경우, 현재 40여 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외국업체 입주자는 없으나 외국업체에 대한 입주제한은 없다. 그러나, CITA 산하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5개 주 10여 군데에 분포되어 있는 BI의 경우 호주 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호주 내 사업자 등록은 비교적 소액의 경비로 쉽게 등록이 가능함.)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입주 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는 호주 내 비즈니스 관련 조언 제공 및 비서/리셉션 서비스, 사무용 필수품(팩스/인터넷/복사기 등)의 공동 사용 등이 있다.

다. 주요 인큐베이터 현황

1) Australian Technology Park

- 연락처
 - 주소: Suite 145 National Innovation Centre ATP, Eleigh, NSW 1430, Australia
 - 전화: (61-2) 9209 4124
 - 홈페이지: <http://www.atp.com.au>
- 입주 조건
 - 평가 기준 통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윤 창출 가능성과 지적 재산의 가치 등을 심사하며, 사업 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3개월간 Pre-incubator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음.
 - 재정 능력: 2년간 임차료 이외에 A\$10,000 (US\$6,000정도)의 경비가 소요됨.
 - 입주 시 비용
 - 임차료: 평방미터당 연간 A\$520- (약 32만원)
 - 면적: 초기 단계시 3.5 평방미터, 중기 60 평방미터, 말기 125 평방미터
- 입주 시 장점
 - 일반 인큐베이터 시설에 입주하는 것 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Austrade(국영 무역진흥기관)와 AusIndustry(호주 연방공업청)에서 제공하는 기술연구 개발비를 지원 받기가 용이해짐.
 - 최고 2년 동안 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대학의 주요 연구 분야 내에 들면 연구 보조 (인력 및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주요 연구 분야
 - IT, 멀티 미디어, 생명공학, 식품공학 등

2) Australian Distributed Incubator Pty Ltd

- 주요분야: IT
- 연방정부 지원금: A\$7백만
- 홈페이지: <http://www.adinc.com.au>
- 담당자: Mr. Michael Paul, Program Co-ordinator
- 주소: Level 2, 455 Bourke St Melbourne VIC 3000 Australia
- 전화: (61-3) 9605 2550
- 팩스: (61-3) 9605 2511
- 이메일: michellep@adinc.com.au

3) Blue Fire Group

- 주요분야: IT
- 연방정부 지원금: A\$6백만
- 홈페이지: <http://www.bluefire.com>

- 담당자: Mr. Kamal Sarma
- 주소: 2-6 Waltham St Artarmon NSW 2064 Sydney Australia
- 전화: (61-2) 9439 4394
- 팩스: (61-2) 9437 3879
- 이메일: ksarma@bluefire.com.au

4) Epicorp Ltd

- 연방정부 지원금: A\$1천만
- 담당자: Mr. Roslyn Hughes
- 주소: P0 BOX 2166 Canberra ACT 2501 Australia
- 전화: (61-2) 6242 1984
- 팩스: (61-2) 6241 5284
- 이메일: roslyn.hughes@epicorp.com.au

5) EiR Pty Ltd

- 주요분야: IT&T
- 연방정부 지원금: A\$1천만
- 홈페이지: <http://www.entres.com.au>
- 담당자: Mr. Richard Henning
- 주소: 1 Sarich Way Technology Park Bentley WA 6012 Australia
- 전화: (61-8) 9451 0893
- 팩스: (61-8) 9361 4077
- 이메일: richard@entres.com.au

6) ePARK

- 주요분야: IT/무선통신분야
- 연방정부 지원금: A\$5백만
- 홈페이지: <http://www.epark.com.au>
- 담당자: Ms Lucie Hedman
- 주소
 - Sydney Office : Level 2, 18 Bulletin Place Sydney NSW 2000 Australia
 - Melbourne Office (담당자: Mr. Nick Batchelor): 125 Victoria St Fitzroy VIC 3065
- 전화: (61-2) 9251 0106(시드니) / (61-3) 412 031 313(멜버른)
- 팩스: (61-2) 9252 6487(시드니)
- 이메일: lucie@epark.com.au / nick@epark.com.au

7) Information City Victoria

- 연방정부 지원금: A\$8백만 불
- 홈페이지: <http://www/informationcity.com.au>

- 담당자: Mr. Robert Crompton, Executive Director
- 주소: PO BOX 80, Flinders Lane Post Office Melbourne VIC 8009
- 전화: (61-3) 9369 8299
- 팩스: (61-3) 9369 8225
- 이메일: robertc@jtp.com.au

8) inQbator

- 연방정부 지원금: A\$9.5백만
- 담당자: Dr Laurie Hammond
- 전화: (61-7) 5578 9500
- 팩스: (61-7) 5578 9522
- 이메일: laurie.hammond@inqbator.com.au

9) ITeM3 Pty Ltd

- 연방정부 지원금: A\$7.34백만
- 홈페이지: <http://www.item3.com.au>
- 담당자: Dr Rob Forage
- 주소: Level 1, 40 Chandos St St Leonards Sydney NSW 2065 Australia
- 전화: (61-2) 9431 1901
- 팩스: (61-2) 9966 9774
- 이메일: rforage@item3.com.au

10) IT & C Incubator of the Northern Territory

- 연방정부 지원금: A\$5백만
- 홈페이지: <http://www.itcint.com.au>
- 담당자: Mr. Norman Evans
- 주소: Level 1, Harry Chan Arcade 60 Smith St Northern Territory, Australia(GPO BOX 1369 Darwin NT 0801)
- 전화: (61-8) 8982 9800
- 팩스: (61-8) 8982 9801
- 이메일: info@itcint.com.au

11) SA BITs (Playford Centre)

- 연방정부 지원금: A\$1천만
- 홈페이지: <http://www.palyford.com.au>
- 담당자: Mr. Geoff Thomas
- 주소: PO BOX 8121, Station Arcade SA 5000 Australia
- 전화: (61-8) 8468 9888
- 팩스: (61-8) 8212 3809
- 이메일: gthomas@palyford.com.au

라. 자유무역지대

1) 호주의 자유무역지대 개황

호주는 아래의 다윈 자유무역지대 외의 어떠한 자유무역지대도 조성하지 않고 있다.

2) 다윈 자유무역지대

- 설치 목적
 - 저개발 지역인 Northern Territory 주의 개발 촉진
 -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주도 산업 육성
- 설립시기 및 규모
 - 설립시기: 1986. 12월
 - 규 모: 약 200ha (60만평)
 - 소 재 지: Northern Territory 주의 Darwin

마. 수출지원제도

1) 관세면제

가공 및 변형 후 재수출할 경우, 수입 후 12개월 이내에 재수출 할 경우

2) 관세 및 GST(부가세) 환급 (Single Export Shipment Claims)

수입물품 전량이 가공 및 재수출될 경우 환급.

3) 신용환급 (Approved Exporter Claims)

기존의 성실한 수출이행 실적으로 세관이 신용을 부여한 경우, 수출이행 검사가 면제되어 월별 수출이행 보고 및 환급요청 만으로도 관세 및 GST(부가세) 환급

바. 인센티브 제도

1) 주정부 인센티브

공장부지 특별분양, 편의시설 활용혜택 부여, Payroll tax 및 인지세 면제

2) 금융지원 및 자문서비스 제공

공장설립 및 확장자금, 철거 및 이전경비, 운송경비 등 지원, 산업디자인 및 마케팅지원, 주택지원, 종업원 채용 및 훈련지원

3) 선납관세의 단기 무이자 지원

4) 연방정부 인센티브

수출시장 개척자금 지원대상 자격부여,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자금 지원대상 자격 부여,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 최고 50년까지 공업용 부지 장기 임대 및 자기소유 건물 신축 허용

5) 참고사항

다윈 지역 거주 인구는 2005년 현재 10만 명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의 소도시임.

그러나, 다윈에서 호주 남부 아델레이드를 잇는 대륙종단 철도공사가 완료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37. 공장설립

가. 공장부지 확보

1) 호주 부동산의 소유형태

호주의 부동산 소유형태는 절대 소유권(Freehold Title)과 임차 소유권 (Leasehold Title) 그리고 분할 소유권(Strata Title)로 구분된다. 절대 소유권은 해당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정부 토지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

임차소유권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가 절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민간인 또는 기업이 개발을 목적으로 99 년간 임차 사용하는 데서 오는 소유권이다. 분할 소유권은 주거용 아파트와 같이 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절대 소유권과 유사한 영구적 권리를 가지면서 건물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소유권이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해당 부지의 용도제한, 고도제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거쳐야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호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는 거의 없다. 개발을 목적으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및 호텔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완공 후 계속 보유 혹은 매각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은 사전에 투자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호주로의 투자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Invest Australia” 가 있다.

3) 부동산 관련 조세

소득세(개인, 법인):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이나 임대 소득은 매각자 또는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소득세(30%)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누증제, 최고 세율은 47% 적용)의 과세대상에 합산된다.

부동산 매각 또는 임대 시 수리비, 보험료, 재산세 및 기타 운영비, 부동산 구입 용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 감가상각의 비용공제: 모든 신축건물은 매년 건축 비용의 2.5%씩을 감가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인지세: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구매자가 매매가격의 2.5 ~ 5% 범위 내에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취득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나. 공장건설 및 사업착수

공장 건설은 우리나라에서의 관행과 거의 유사하다. 부지 매입시 공장 고도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사전에 검토함이 요구된다

38. 투자관련 정부기관

- 투자관련 허가 및 정책 시행등은 FIRB (www.firb.gov.au)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 활동은 Invest Australia(www.investaustralia.gov.au)가 수행하고 있다.
- 이 외에 각 주정부가 투자유치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39.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투자진출 시 한국인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외에 한국의 회계법인과 연계된 회계 법인을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컨택 포인트는 시드니 무역관으로 연락바람.)

- UG 컨설팅 <http://www.ugac.com.au/>
- KPMG <http://www.kpmg.com.au>

40. 노무관리

가. 고용

가장 일반적인 인력채용 방법은 Sydney Morning Herald 와 같은 일간신문의 구인란에 광고를 통하는 방법이다. 간부직 혹은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옐로우 페이지에서 헤드헌팅(채용) 전문기관을 찾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채용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피고용인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분야에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

나. 임금

산업별 단체협약(호주에서는 Award로 표현함)에 의거,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피고용자의 급여가 동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급여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급여는 2주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된다.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주당 38시간이다. 초과근무나 휴일근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 별 Award가 정하는 지급체계에 따라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초과근무 3시간까지 및 토요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 초과근무 3시간 이상 및 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2배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2003년에는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주당 35시간 근무를 선호한다는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2005년에는 광업계에서 시작된 고급 기능인력 부족사태가 여타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유경력 용접공의 연봉이 의사의 수입을 초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다. 휴가제도

년 4주(근무일 기준 20일)의 연례휴가, 병가(Sick leave, 근무 1차 년도에는 년 5일, 그 이후부터는 년 12일),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13주의 장기근속 휴가(Long service leave) 등이 있다.

연례휴가비(Annual leave loading)는 통상임금의 17.5%를 휴가 전에 지급해야 한다. 94. 3. 31부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남자에게도 자녀 출산 시 52주의 무급휴가를(원할 경우)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라. 사회보장제도

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있으며 고용주 및 피고용자가 각각 일정액의 금액을 적립하여 피고용자 퇴직 시 지급된다.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인 급여의 9% 이상 출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Worker's Compensation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마. 노동조합 활동

영국식의 강력한 산업 별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노사분규가 잦고 규모가 큰 것이 특징으로, 호주의 노동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광산, 항만, 철도, 항공은 물론 중, 고교 등 교육자들의 파업도 빈번한 실정이다. 호주의 노동조합은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정권의 향배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노조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 있다. 직장단위 노조는 거의 결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산업별노조의 협상력이 막강한 때문이며, 동일 직장 내의 산업 별 노조 복수 가입도 인정되고 있다. 노조는 대표 기구인 호주 노동조합 평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를 정점으로 45개의 산업 별 노조가 있으며, 직장 별 노조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노사관계 법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노조와의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하워드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안은 노조를 배제한 고용주-노동자간 1:1계약을 거시 목표로 삼고 있다

41. 조세제도

가. 호주의 조세제도

- 2000.7.1일부로 종전 판매세(Sales Tax)가 폐지되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일종인 상품 및 서비스세(GST: Goods & Services Tax)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 개혁이 단행되었다.
- 2006년 현재 호주의 법인소득세는 30%이며, 개인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 누진제가 적용된다.
- 개인소득세는 기존에 A\$ 6,000까지가 면세대상이며, 최고 세율은 47%로서 소득 구간별 누진 적용되는데, 현재의 세율은 2005년 7월부터 소폭 인하 시행되고 있으며 2006년 7월 이후 최고 과세의 적용을 받는 소득기준이 상향조정 되었다.
- 위의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 징수되고 있는데, 동 원천징수 시에 의무적인 의료보험(Medicare)비용 1.5%가 함께 공제된다. 이에 따라 호주의 일반인들은 최고 세율이 48.5%라고 말하기도 한다.
- 한편, 호주의 세제 중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인데, 호주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대신하여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 (양도차익)을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 부과 시 합산과세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GST) 세제 개황

-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일부 기초 생필품을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 등 모든 소비활동에 적용되는 세제로 10%의 단일 세율이며, GST세제 도입으로 연방정부 관할 간접세인 도매 판매세(Wholesale sales tax)와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FID, Debit tax, 인지세(Stamp Duty)등 간접세는 폐지되었다.
- GST는 영세율 대상(GST FREE)과 면세대상(Input Taxed)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소비행위에 부과된다. 그러나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사업자(Enterprise)는 GST를 환급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GST의 부담이 없다.
- GST는 모든 수입활동에도 적용이 되나,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 되어 수출업자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1) 세율

- 10% 단일 세율

2) 부과대상

- 일부의 면세나 영세율 적용 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과 용역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과됨.

3) 적용단계

- 모든 거래의 단계에서 적용됨.
- 생산자는 거래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GST(Input GST)를 판매 시에 징수하는 GST(Output GST) 금액에서 차감하며 동 차액만큼만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납부하면 된다.

4) GST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영세율 대상 (GST Free Supply)

- 영세율 대상 사업자는 판매에 대하여 GST를 징수할 필요가 없고 매입 시에 부담한 GST는 환급 받을 수 있어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는 전혀 GST가 없게 된다.

*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 수출품, 진료, 의약품, 개인 의료보험 등 건강관련 품목, 교육, 종교, 자선 사업, 물, 어린이 보호용품 등

□ 면세 대상 (Input Taxed Supply)

- 면세대상 사업자는 판매에 대하여는 GST를 부과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 사업자와 달리 매입 시에 부담한 GST를 환급 받을 수는 없다.

* 면세 대상 품목: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일반적이 금융 서비스 활동, 주거용 집세

5) GST사업자 등록

- 개인, 기업 또는 기타 단체로 GST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GST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일년 간 매출액이 일정한도(A\$50,000, 비영리 단체의 경우 A\$10,000)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반 소비자와 같이 매입에 관련된 GST를 부담하여야 하나, 판매에 대하여는 GST를 징수할 수는 없다.

6) 신고서 작성

- 연간 매출이 A\$ 2천만 불 이상인 사업자는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연간 매출이 A\$ 2천만 불 이상인 사업자는 신고서와 세액을 컴퓨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와 납부는 매월 말 또는 분기말 다음달 21일 까지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 기타의 사업자는 분기별 또는 매월 별로 신고할 수 있다.
- 환급의 경우 호주 국세청은 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환급을 해주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환급 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환급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호주 국세청에 납부할 다른 종류의 세금(법인세, FBT 등)과 상쇄할 수 있다.

7) 세금 계산서

- 공급가격이 A\$50 이하인 경우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세금 계산서에는 호주 사업자 등록 번호와 공급가격 등의 사항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8) 세제

□ 주정부 관할 폐지 세제

- 호텔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BED TAX"
- FID(금융 기관세), DEBIT TAX(은행 이용세)
- 사업용 재산의 양도계약, 저당권 설정, 수표를 포함한 유가증권, 리스계약 등에 관련된 인지세

□ 주정부 관할 존속 세제

- 급여세(Payroll Tax)
- 토지세(Land Tax)
- 주거용 주택 취득세

다. 개인 소득세율(2006.7월부터 적용)

연간소득기준 Tax rates 2006-07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 - \$6,000	Nil
\$6,001 - \$25,000	15c for each \$1 over \$6,000
\$25,001 - \$75,000	\$2,850 plus 30c for each \$1 over \$25,000
\$75,001 - \$150,000	\$17,850 plus 40c for each \$1 over \$75,000
Over \$150,000	\$47,850 plus 45c for each \$1 over \$150,000

42. 외환관리

가. 외환관리 기구 및 제도

- 호주의 외환관리 기구는 중앙은행인 준비은행(The Reserve Bank of Australia)으로 중앙은행이 통화발행 및 금융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외환정책도 수립, 집행하고 있다.
- 1959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외환관리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경제성장 및 금융시스템의 발달로 금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면서 1959년 연방 준비은행법(The Reserve Bank Act 1959)을 제정하여 준비은행이 외환도 관리하게 되었다.
- 호주는 '83.12월부터 외환관리를 종전 통제 위주에서 점차 완화하여 환율 문제뿐 만 아니라 신용장 개설, 해외투자 및 송금 등 전분야에 걸쳐 외환관리를 대폭 자유화했으며, 현재는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과 외국은행의 대호투자와 호주통화의 해외반출 및 세무목적 이외에는 외환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나. 세무 목적상 보고해야 할 외환 현금거래 대상

- 관련 법규: 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1988
- 보고 기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 and Analysis Centre (AUSTRAC)
- 보고 대상: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거래업체 및 귀금속 취급업체가 A\$1만 이상의 현금거래 및 A\$5천 이상의 외환을 송금하거나 및 수취할 때

다. 환율 제도

-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1983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 정부가 환율결정 및 외환수급 조절 등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했었으나, '83.12월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환율이 시장수급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되고 있는데, 호주 중앙은행이 지난 20년간 환율시장에 개입한 사례는 총 6회에 그치고 있다.

라. 무역대금 결제

- L/C 방식의 대금 결제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대형 수입상은 D/A 또는 D/P, 소형 수입상은 T/T 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품인도 후 입금도 매우 흔하다.

43.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 호주에서 집을 구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예산 이외에도 자녀가 취학할 학교의 위치, 전철(City rail)역과의 거리,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라면 아동을 위한 학교를 미리 고려한 다음, 학교 인근지의 주택을 물색해야 한다.

- 주택물색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나 일요판 신문에 실리는 임대광고를 통하여 얻는 경우도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지역마다 체인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복덕방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 구역내의 매물을 가격대, 평형태, 주택 형태별로 매물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의가 있을 경우 집을 보여주고(inspect) 상담을 해준다

- 주요 웹사이트: <http://www.domain.com.au>

-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 마음에 드는 주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가지 형태의 집들을 많이 보는 것이 선불리 쉽게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것은 사전에 부동산 업자들과 매물이 있는지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고, 적당한 매물이 있는 경우 만날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작정 복덕방을 찾아가서 바로 집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 거의 실패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여러 복덕방을 접촉하여 매물의 조건 등을 확인한 다음 주택내부를 살펴 볼(Inspect) 집 리스트를 작성하여 중개업자와 시간 약속을 하고 집을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행정절차

- 호주의 집세는 1주 단위로 계산된다. 즉 주당 A\$400 혹은 A\$700 하는 식이다. 마음에 드는 집을 정했으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는 서류상 집주인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 작성, 관련 비용 접수 등 모든 일을 대행한다.
-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증금(Bond/4주분의 월세)과 월세(rent/1개월분 임차료)가 전부이다. 보증금은 계약 시 지불하고 계약 종료시 돌려받게 되나, 퇴거 시 집의 상태에 따라서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일부는 돌려 받지 못한다. 이를 위해 최초 계약 시 집의 상태에 대한 인스펙션 폼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 동 Inspection 작성시 임차인은 추후를 대비하여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나중에 bond 를 돌려 받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은행 계좌개설

- 호주 국민은행(National Australia Bank), Westpack 등 다수 지점을 가진 은행에 여권을 가지고 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집세 납부는 본인 은행계좌로부터 자동 이체하는 방법도 있으며 부동산에서 발행한 deposit book을 매월 작성 현금 혹은 수표로 해당은행에 직접 내거나 혹은 최초 소개 받은 부동산에 가서 현금 혹은 수표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라. 전화신청

- 호주 국영 통신회사(민영화 진행중)인 텔스트라에 전화 한 통화로 간단하게 새로운 전화 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신청시에는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주택임차 계약서를 통해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에는 한국인 통역을 바꿔 달라고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시드니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통신서비스 회사가 2개 있는 바, 이들의 도움을 얻어 전화신청은 물론 인터넷 연결(ADSL)까지 해결할 수 있다.

마. 가스, 전기, 수도

- 가스는 The Natural Gas Company(전화: 131 606)를 통하여 연결을 요청하고, 구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들을 접촉할 경우 집주소, 집 전화번호 및 인적사항 등을 물어오므로 주택 임차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 물론, 가스, 전기, 수도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주택이라 할 지라도, 세입자가 바뀌면 새로운 세입자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동 사항은 아래의 전기, 수도 연결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전기는 Energy Australia (전화 131 535)를 통하여 연결하고 구좌를 개설하면 된다.
- 수도의 경우, UNIT(연립주택), 아파트는 집주인이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 후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련 수도국에 연락하여 신규 입주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바. 비품 구입

- 호주는 TV 및 비디오가 한국과 달리 PAL 방식이어서 Multi 기능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던 제품은 사용할 수가 없다. 또한 전압이 240 볼트로서 한국의 220V 보다 높고 싸이클도 달라(50 Hz: 한국 60 Hz) 전압 및 싸이클에 민감한 제품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험자들에 의하면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승압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2008년부터 호주의 TV방송은 모두 HDTV방송으로 송출될 예정임.
- 필요한 전자제품은 호주에서 모두 구입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가격보다 50% 이상 비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 생활정보 수집방법

- 호주에 도착하여 가장 빨리 정착하는 방법은 한국 교포들이 발행하는 주간 정보지를 입수해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어로 제작되는 주간 정보지는 시드니에서만도 10여 종이 발간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에 발간된다.
- 매주 금요일에 한국 식품점이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는데, 주간 정보지에는 한국인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주요 기관은 물론 동문화 연락처와 병원, 중고품 판매광고, 비디오 대여점 등 한국인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시드니무역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좌측 중 하단부에 있는 “호주 교민의 통신 마당”에서 교민업체를 검색할 수 있음.
- 아무런 연고도 없이 호주에 도착한 경우라면, 택시를 이용해서 “캠시” 또는 “이스트우드”, “스트라스필드” 전철역에 가자고 하면 한국인이 모여 사는 지역에 당도하게 된다. 한국간판이 걸린 근처의 아무 가게에 들어가도 주간지를 얻을 수 있다.